

南北會談 推進經過 (I)

(南北高位級會談 및 分科委員會 會議)

1993. 10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目 次

1. 南北高位級會談3
2. 南北政治分科委員會89
3. 南北軍事分科委員會141
4.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191

1. 南北高位級會談

가. 南北高位級會談 本會談

나. 유엔加入問題관련 實務代表接觸

다. 核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

라. 分科委員會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

마.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

南北高位級會談 本會談

-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1990. 9. 4 - 9. 7, 서울)
- 제2차 南北高位級會談(1990. 10. 16 - 10. 19, 平壤)
- 제3차 南北高位級會談(1990. 12. 11 - 12. 14, 서울)
- 제4차 南北高位級會談(1991. 10. 22 - 10. 25, 平壤)
-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1991. 12. 10 - 12. 13, 서울)
- 제6차 南北高位級會談(1992. 2. 18 - 2. 21, 平壤)
- 제7차 南北高位級會談(1992. 5. 5 - 5. 8, 서울)
- 제8차 南北高位級會談(1992. 9. 15 - 9. 18, 平壤)

《 第1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0. 9. 4 - 9. 7,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民族共同體를 회복·발전시키고 통일된 民族 民主國家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 관계를 改善하고 和解·協力시대를 열도록 노력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責任과 權限을 갖고 있는 쌍방 政府 當局이 앞장서야 할 것을 闡明</p> <p>○ 이러한 見地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남북 쌍방이 相互 體制認定과 尊重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그 基礎위에서 통일을 향한 共存共榮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통의 合意基盤이 필요함을 力說하고 8개항의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案)을 제시</p> <p>〈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案) 〉</p> <p>① 統一以前까지 상대방의 體制 認定·尊重</p> <p>② 상호 誹謗·中傷中止 및 상대</p>	<p>○ 會談全過程에서 遵守해야 할 3개 원칙을 提示</p> <p>① 7.4 南北共同聲明에서 闡明된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3대원칙 再確認 및 遵守</p> <p>② 일방의 利益보다 民族共同의 이익을 우선</p> <p>③ 會談雰圍氣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進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p> <p>○ 政治軍事的 大결상태 해소문제에 본질적 重要性을 부여하면서 다음 3개項의 緊急問題를 제1차 會談에서 協議·解決하자고 주장</p> <p>① 유엔加入 문제</p> <p>② 팀스피리트訓練 문제 * 2-3년 만이라도 중지요구</p> <p>③ 訪北拘束者 釋放 문제</p> <p>○ 남북이 相互不信하는 가운데 政治軍事的으로 對決하는 상태에서 對話·交流한다는 것은 不信만 깊어지고 또 하나의 大결이 될 뿐이라</p>

우 리 側	北 側
<p>방 內政에 대한 不干涉</p> <p>③ 상호 意見對立과 紛爭은 當局間 對話와 協商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p> <p>④ 相對方에 대한 破壞·顛覆行爲 中止</p> <p>⑤ 自由往來와 多角的인 交流協力を 실현하고 社會開放과 民族的 유대를 회복</p> <p>⑥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備減縮 실현</p> <p>⑦ 국제무대에서 서로 協力하며 민족의 利益과 自尊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p> <p>⑧ 現 休戰體制를 平和體制로 전환</p> <p>○ 南北高位級會談의 議題로 합의한 남북간의 政治軍事的 대결상태 해소와 多角的인 交流協力實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方案을 제시</p> <p>〈多角的인 交流·協力實施 方案〉</p> <p>① 離散家族의 自由訪問과 再結合을 조속히 실현하고 60세이상 이산가족의 故鄉訪問 즉각</p>	<p>고 주장하면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方案을 제시</p> <p>〈政治的 對決狀態 解消方案〉</p> <p>① 상호 誹謗 및 對決鼓吹 政治行事的 中止</p> <p>② 통일에 방해되는 法律的·制度的 裝置 제거</p> <p>③ 상대방을 紹介하는 出版·思想의 자유보장</p> <p>④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物理的 裝置 제거</p> <p>⑤ 각 政黨·團體 및 各界各層 사람들의 自由往來·接觸實現</p> <p>⑥ 國際政治舞臺에 남북 共同進出·協力</p> <p>〈軍事的 대결상태 解消 方案〉</p> <p>(1) 南北信賴造成</p> <p>① 軍事訓練과 演習의 제한</p> <p>②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p> <p>③ 우발적 衝突防止 위한 安全措置 강구</p> <p>(2) 南北武力減縮</p> <p>④ 武力의 段階的 減縮</p>

우 리 側	北 側
<p>實現</p> <p>② 民族名節과 紀念日 전후 民族 大交流 실현 및 文化行事 교환 개최</p> <p>③ 각 분야별 南北同胞間의 교류 협력 방안 合意·實現</p> <p>④ 交易門戶 개방 및 物資交流</p> <p>⑤ 資源共同開發 및 合作投資, 經濟分野에서의 공동 對外進出 및 對外協力事業 추진</p> <p>⑥ 觀光資源 共同開發 및 觀光事業 공동추진</p> <p>⑦ 남북간 鐵道·道路 복원 및 海路·空路 개설</p> <p>⑧ 郵便物 교환 및 通信·電話 개통</p> <p>⑨ 通行·通信·通商에 관한 合意書 채택</p> <p>⑩ 副總理級 경제협력공동기구 설치</p> <p>〈政治·軍事的 신뢰구축 方案〉</p> <p>① 相互 體制認定 및 尊重의 바탕위에서 상대방 指名攻擊 誹謗·中傷 등의 중지</p> <p>② 新聞·放送 및 出版物 相互 開放</p>	<p>⑤ 軍事裝備의 質的更新 중지</p> <p>⑥ 군축정형의 相互通報 및 檢證 실시</p> <p>(3) 外國武力의 撤収</p> <p>⑦ 조선반도의 非核地帶化</p> <p>⑧ 조선반도에서 外國軍撤収 위해 공동노력</p> <p>(4) 軍縮과 그 이후의 平和保障</p> <p>⑨ 軍縮과 그 이후의 平和保障措置 강구 (쌍방 軍總參謀長級으로 南北軍事共同委員會 구성)</p> <p>* 군사적 對決狀態 해소방안 討議와 함께 南北不可侵宣言이 채택되고 美·北韓間 平和協定이 締結되어야 함을 강조</p> <p>○ 政治軍事的 對決狀態가 해소되면 각 分野에서의 폭넓은 協力과 交流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p> <p>- 經濟·文化 등 교류는 副次的·非本質的인 것</p>

우 리 側	北 側
<p>③ 서울·平壤에 常駐連絡代表部 設置</p> <p>④ 軍人士 相互訪問 및 交流實施</p> <p>⑤ 軍事情報 相互公開 및 交換</p> <p>⑥ 軍部隊 移動 및 機動訓練의 事前通報와 相對方 參觀 招請</p> <p>⑦ 韓國의 國防部長官과 北韓의 人民武力部長間의 直通電話 設置·運營</p> <p>⑧ 非武裝地帶의 非武裝化 實現 및 平和的 利用</p> <p>○ 以上の 방안들을 통해 政治軍事 的 信賴構築을 이룩하며 不可侵 宣言을 채택하고 이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軍備減縮 을 실현해 나갈것을 提案</p> <p><南北間의 軍備減縮 推進方向></p> <p>① 攻擊型 戰力構造를 防禦型 戰力構造로 전환</p> <p>② 상호 同數保有 원칙을 적용, 군사력 상호 均衡維持의 바탕 위에서 同數 均衡減縮</p> <p>③ 常備戰力 감축에 상응하여 豫備戰力과 類似 軍組織 함께 감축</p>	

우 리 側	北 側
<p>④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을 위한 現場檢證과 監視 실시</p> <p>⑤ 쌍방 軍事力의 최종 維持水準은 통일국가의 軍事力 所要를 감안, 쌍방 협의하에 결정</p> <p>○ 南北高位級會談이 南北頂上會談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제시하고 北側의 호응을 촉구</p>	

《 第2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0.10.16 - 10.19, 平壤 》

우 리 측	北 측
<p>○ 제1차 會談에서 제시한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 8個項의 근본취지를 再闡明하고 北側이 제1차 會談에서 제기한 3個項의 會談原則을 수용하여 『南北關係 개선을 위한 基本合意書』前文을 修正·提議</p> <p>○ 南北間에 不信을 해소하고 相互 信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多角的인 交流協力을 활성화 해나가면서 동시에 이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위한 조치의 必要性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3通協定 方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通行에 관한 方案(10개項) - 南北通信에 관한 方案(9개項) - 南北經濟交流協力에 관한 方案(13개項) <p>○ 多角的인 交流協力 실시와 政治 軍事的 대결상태 解消方案에 대한 協議를 進展시키기 위하여 부문별 協議會를 構成·運營할 것을 제의</p>	<p>○ 제1차 會談에서 제기된 쌍방간의 基本的 差異点 극복을 위한 見解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問題 해결에서 主體를 確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間 관계발전의 일반적 圖式, 西歐式 信賴構築 방안 및 東西 獨 통일과정 模倣은 非現實的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方案을 모색해야 함. - 統一指向的 자세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의 提案들은 現狀固着的이며 특히 『實體認定』, 『體制認定』, 『現實認定』用語는 分열지향적 자세인 바, 두개조선을 認定·固着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朝鮮을 지향해야 함. - 不信에 대한 같은 認識과 그 해결 方途를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사이의 不信은 人道主義事業이나 交流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으며, 불신의 根源인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는데

우 리 측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交流協力協議會 - 政治軍事協議會 <p>○ 現實認定을 바탕으로하여 思想的·理念的 대결을 終熄시키고 和解와 協力을 도모해 나가며 共存共榮하는 民族共同體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개항의 當面課題를 제시</p> <p>① 祖國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北韓側이 상대방 體制를 부정하고 敵對視하는 對南革命路線을 포기해야 함.</p> <p>② 分斷으로 若起된 민족적 고통을 하루속히 덜어주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離散家族들의 故鄉訪問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협력해야 함.</p> <p>③ 南北同胞들이 다같이 잘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北韓側이 有無相通과 相互補完의 원칙에 따라 經濟交流와 協力を 활성화하는데 적극 호응해야 함.</p>	<p>서 모색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問題 解決의 가장 가깝고도 合理的인 길을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나라 實情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두 制度, 두 地域政府를 그대로두고 하나의 國家, 하나의 民族으로 통일하는 길을 모색해야함. <p>○ 『北南 不可侵에 관한 宣言(草案)』을 採擇·發效할 것을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不可侵에 관한 宣言(초안)〉</p> <p style="text-align: center;">(前 文)</p> <p>○ 7.4 共同聲明의 3原則을 再確認·遵守하고 상대방의 思想·制度를 認定·尊重하며 상대방 内部問題에 불간섭할 것을 확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대방에 대한 武力不使用 및 武力不侵害 ② 意見相異와 紛爭問題들의 對話와 協商을 통한 평화적 해결 ③ 不可侵의 境界線은 1953. 7. 27부

우 리 側	北 側
<p>○ 제2일 會議에서는 『남북간의 和解와 協力を 위한 共同宣言』을 제시</p> <p>〈 南北間의 和解와 協력을 위한 共同宣言(案) 〉</p> <p>(前 文)</p> <p>남과 북은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平和統一의 基盤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사항에 合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7.4 共同聲明의 3原則 재확인, 상대방 體制認定·尊重, 內政 不干涉 ② 經濟交流·協力 촉진과 人的 交流·協力 실시 ③ 武力不使用 및 破壞·전복 행위 금지 ④ 紛爭의 平和的 해결 ⑤ 군사적 信賴構築과 軍備減縮 실현 ⑥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 ⑦ 誹謗·中傷 중지 ⑧ 國際舞臺에서의 競爭·對決中 止 및 相互協力, 民族利益· 	<p>休戰協定에 규정된 軍事分界線으로 설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不可侵 約定을 담보하기 위하여 軍備競爭中 止 및 武力의 단계적 減縮 ⑤ 우발적 武力衝突과 擴大防止를 위해 쌍방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 ⑥ 동 宣言은 쌍방 合意에 의해 修正·補充 가능 ⑦ 동 선언은 發效에 필요한 節次를 거쳐 通告文을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廢棄를 통고하지 않는 한 統一實現時까지 效力유지 <p>○ 제1차 會談時 제기한 『3個項 緊急問題』를 다시 제기하고 이에 대한 北側立場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加入 문제 : 本會談과 代表接觸에서 합의할 때 까지 討議를 계속하고 同 問題 合意前에 어느일 방도 유엔加入을 하지 않아야 함. - 팀스피리트 訓練문제 : 中止不可時 會談進行 기간중 잠정적으로 中止할 用意를 가져야 함.

우 리 側	北 側
<p>自尊 위해 공동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北人士 석방문제 : 高位級代表團이 서울·平壤을 오가고 體育選手와 音樂家들이 판문점을 넘나드는 오늘날 이들을 釋放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임. ○ 基本問題 討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事前協議·解決 문제 제시 - 討議案件을 『政治的 對決狀態 해소를 위한 방안』, 『軍事的 大결 상태 解消를 위한 방안』,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분 - 討議順次는 政治軍事的 大결상태 解消方案과 協力交流 실현방안을 竝行討議 - 合意와 實踐方法은 『一括合意』·『同時執行』의 원칙에 입각, 『북남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고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에 대한 包括的 合意書를 作成·採擇한 후 동시집행

《 第3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0.12.11 - 12.14,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採擇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會談·接觸 과정에서 북측 主張들을 綜合적으로 受容한 合意書 修正案을 제시</p> <p>< 基本合意書 採擇의 필요성 ></p> <p>① 非正常的인 남북관계의 正常化</p> <p>② 高位級會談의 議題인 交流協力실시와 對決狀態 해소를 다 같이 協議·解決하기 위한 土臺로서의 기본『틀』 마련</p> <p>③ 南北關係 기본『틀』을 正립한 기초위에서 상호 信賴할 수 있고 實效性있는 不可侵을 마련</p> <p><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修正案)』 ></p> <p>(前 文)</p> <p>① 7.4 共同聲明의 統一3原則 재확인</p>	<p>○ 그동안 進行된 會談에 대한 見解를 표명하고 남측의 『和解와 協力을 위한 宣言(草案)』과 북측의 『北南不可侵宣言(草案)』을 통합하여 하나의 文件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p> <p>< 會談에 대한 3가지 見解 ></p> <p>① 나라의 平和問題에 대한 새로운 認識轉換 필요</p> <p>②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外勢의 干涉을 허용하거나 의존하는 자세 排擊</p> <p>③ 착실한 會談을 위해서 信義있고 진실한 對話姿勢 필요</p> <p>< 『北南不可侵과 和解協力에 관한 宣言(草案)』 ></p> <p>(前 文)</p> <p>① 7.4 共同聲明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祖國</p>

우 리 側	北 側
<p>② 민족공동의 利益과 民族和解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對話 推進</p> <p>③ 긴장상태 緩和와 交流協力을 통한 信賴構築</p> <p>④ 상호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南北關係改善과 平和統一 성취를 위한 공동노력 傾注</p>	<p>統一 3大原則 재확인</p> <p>②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민족적 和解와 團結을 도모</p>
(基本事項)	(內 容)
<p>① 統一時까지 상대방의 體制尊重, 内部問題 불간섭, 紛爭問題의 평화적 해결, 誹謗·中傷行爲 중지</p> <p>② 新聞, 라디오·TV 및 出版物의 상호 개방과 교류실시</p> <p>③ 經濟·人的 교류협력실시 및 이를 위한 通行, 通信, 經濟 交流와 協力에 관한 합의서 채택</p> <p>④ 離散家族들의 서신거래 및 相逢·訪問實施와 再結合 추진</p> <p>⑤ 軍備競爭止揚, 軍事的 신뢰구축, 단계적 軍備減縮 실현</p> <p>⑥ 不可侵에 관한 合意書 채택</p> <p>⑦ 현 休戰體制의 平和體制 전환</p>	<p>① 상대방의 思想과 制度의 認定·尊重, 내부문제 不干涉, 意見相異와 紛爭의 평화적 해결, 상대방에 대한 誹謗·中傷중지</p> <p>② 武力不使用 및 不可侵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 軍備競爭中止, 군사적 信賴造成과 단계적 軍縮實現</p> <p>③ 不可侵의 境界線은 1953.7.27부의 軍事分界線으로 하며 非武裝地帶의 평화지대화</p> <p>④ 우발적인 武力衝突과 그 擴大防止를 위해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p> <p>⑤ 각계인사·동포들간의 자유로운 來往과 接觸實現</p> <p>⑥ 經濟協力과 物資交流實現, 科學·技術·敎育 등 각 분야에서의 성</p>

우 리 側	北 側
<p>과 국제적 平和保障裝置 마련</p> <p>⑧ 國際舞臺에서의 상호 협력</p> <p>⑨ 合意書 발효후 1개월 이내에 交流協力과 政治軍事分科委 설치</p> <p>⑩ 각기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通告한 날로 부터 效力發生</p> <p>○ 不可侵의 實效性을 보장하기 위한 前提條件과 政治軍事分科委員會에서 協議할 『남북불가침에 관한 方案』제시</p> <p>< 不可侵의 實效性 보장을 위한 前提條件 ></p> <p>① 不可侵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實踐意志의 뒷받침</p> <p>② 상대방 體制를 부정하고 破壞 顛覆시키려는 政策이나 態度 拋棄</p> <p>③ 不可侵의 履行을 보장하는 확고한 保障裝置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情報開放, 군사력의 불균형 是正, 監視와 檢證, 국제적 보장 講究 	<p>과와 경험의 交換 및 협력</p> <p>⑦ 交通·遞信網 연결</p> <p>⑧ 국제무대에서 競爭과 對決中止, 對外的 협력과 공동진출</p> <p>⑨ 동 宣言의 履行과 擔保에 관한 對策討議를 위해 本會談 테두리안에서 分科委員會 설치</p> <p>⑩ 同 宣言은 署名·交換後 效力이 발생하며, 일방이 廢棄를 통고하지 않는 한 통일시까지 效力지속</p> <p>○ 부문별 會談과 관련, 『南北不可侵과 和解協力에 관한 宣言』을 채택한 다음 『政治』·『軍事』·『交流協力』의 3個分科委를 설치·협 의할 것을 제의</p> <p>○ 제1·2차 會談時 제기한 『3개 緊急問題』를 또다시 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加入문제 : 單獨加入 강행하는 것은 統一理念에 배치 - 訪北人士 석방문제 : 汎民族大會 南側推進本部 대표들의 구속은 訪北人士들에 대한 탄압의 연장 - 팀스피리트 訓練 중지문제 : 동 訓練 중지 不措置 및 내년 訓練實施 공표는 遺憾

우 리 側	北 側
<p data-bbox="169 329 655 368">< 『南北不可侵에 관한 方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189 427 609 511">(1) 武力不使用 및 侵略行爲 금지 <li data-bbox="189 521 652 652">(2) 意見對立과 紛爭의 당국간 對話와 協商을 통한 평화적 해결 <li data-bbox="189 662 655 793">(3) 不可侵의 領域은 1953. 7. 27 停戰協定에 따라 管轄해온 領域으로 규정 <li data-bbox="189 803 669 934">(4) 상대방을 破壞·顛覆하려는 政治路線拋棄 및 破壞·攪亂 행위 금지 <li data-bbox="189 944 655 1076">(5) 軍事的 對決 및 軍備競爭狀態의 해소와 不可侵保障을 위한 措置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197 1085 623 1177">① 軍事情報 교환 및 軍人士 상호 訪問·交流 실시 <li data-bbox="197 1187 652 1279">② 軍部隊 機動訓練 및 이동의 사전통보 및 參觀團 교환 <li data-bbox="197 1289 669 1381">③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 운영 <li data-bbox="197 1391 648 1422">④ 남북간 軍事力 不均衡 시정 <li data-bbox="197 1432 652 1564">⑤ 軍事停戰協定 준수, 非武裝地帶의 緩衝지대화·평화적 이용 <li data-bbox="197 1573 617 1666">⑥ 現場檢證團과 常駐監視團 교환·운영 	

우 리 側	北 側
<p>(6) 南北軍事共同委員會 구성 · 운영</p> <p>(7) 不可侵에 관한 국제적 保障 裝置 강구</p> <p>(8) 既 締結한 兩者 및 多者間 條約 · 協定에 무영향</p> <p>○ 쌍방 提案中 의견이 접근되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合意 · 實踐 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方案 提示</p> <p>(1) 1991. 1. 1 0時를 기해 남북간 상호 誹謗 · 中傷中止</p> <p>① 特定人士들에 대한 指名攻擊 행위 중지</p> <p>② 軍事分界線上에서의 擴聲器 및 기타 방법에 의한 誹謗 · 中傷 중지</p> <p>③ 상대방 지역에 대한 傳單 撒布 禁止</p> <p>(2) 南北離散家族問題의 우선적 해결</p> <p>① 1991년 음력설을 기해 제2차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團 교환 실시</p> <p>② 南北赤十字會談 조속 재개</p>	

우 리 側	北 側
<p>(3) 남북 經濟交流·協力 실현</p> <p>① 互惠精神과 相互補完的 境地에서 필요한 物資 直交易</p> <p>② 海外資源 開發事業의 공동 추진 등 經濟協力事業 추진</p> <p>③ 雪嶽山·金剛山을 비롯한 觀光자원 共同開發</p> <p>(4) 軍事的 信賴構築措置 강구</p> <p>① 南北高位軍事當局者間 直通 電話 설치·운영</p> <p>② 一定規模 이상의 軍事訓練 사전통보</p> <p>(5) 南北總理間 直通電話 설치· 운영</p>	

〈 雙方 基本立場 및 意見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折衷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修正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不可侵과 和解·協力에 관한 宣言(案)』 제시
基本立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 『先』채택 ○ 實效性이 보장되는 不可侵合意書 채택 ○ 信賴構築을 위해 共通점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合意·實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 채택반대 (東·西獨方式 반대) ○ 宣言的 성격의 不可侵優先 채택 ○ 『先』軍事問題 해결 (不可侵宣言 채택)
離散家族 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經濟·軍事分野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課題(『基本合意書』에 別途 條項으로 규정, 내년 음력설을 기해 제2차 故鄉訪問團 교환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 문제를 副次的인 문제로 규정 (『不可侵과 和解·協力宣言』내용에서 排除, 2차 故鄉訪問團 교환제의 묵살)

《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1. 10. 22 - 10. 25, 平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平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相互體制의 尊重, 상대방에 대한 敵對政策의 포기, 상호불신 除去 및 信賴構築부터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平和를 制度化해 나가야 함을 강조 - 對南革命路線 포기, 核武器 開發 중단, 모든 核物質과 施設에 대한 國際機構의 查察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 ○ 吸收統一에 대한 북한측의 憂慮를 불식시키기 위해, 統一에 대한 우리의 立場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간의 共存共榮을 통해 民族共同體를 回復·發展시켜 民族統合을 이룩하자는 것임을 천명 ○ 議題問題와 관련, 既存의 3個合意書를 하나로 묶은 包括的인 單一 合意書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 非核地帶化 실현이 平和를 위한 전환적인 對策을 마련하는데서 가장 急先務라고 주장하고 『朝鮮半島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草案)』을 긴급제안으로 제시 〈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草案) 〉 제 1조 核武器의 試驗, 生産, 搬入, 所有, 使用 금지 제 2조 核武器 配備禁止, 핵무기 積載 飛行機, 艦船의 領空·領海 통과·着陸·寄港 금지 제 3조 核武器 展開·貯藏 및 核雨傘 提供協約 체결 금지 제 4조 核武器와 核裝備 동원이나 核戰爭을 가상한 軍事演習 금지 제 5조 미국의 核武器와 미군철수 및 核基地 撤廢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우 리 側	北 側
<p>〈 和解·不可侵과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 〉</p> <p>(前 文)</p>	<p>제 6조 미국 核武器의 완전철수와 核基地 철폐 공동확인, 核 同時査察 의무이행 및 非核地 帶化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 재확 인 ○ 민족공동의 利益과 民族和解 방 향으로 對話推進 ○ 統一時까지 남북관계가 暫定的 特殊關係임을 인정 ○ 平和統一 成就를 위한 공동의 노력 경주 	<p>제 7조 朝鮮반도 非核地帶化를 위한 對외적 조치 강구</p> <p>제 8조 同 宣言의 이행을 위한 共同 機構 설치</p> <p>제 9조 發效節次를 거쳐 文本 交換日 부터 효력 발생</p>
<p>(基本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議題問題와 관련, 不可侵宣言과 軍縮의 우선해결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和解와 協力·交流實現을 위한 제반문제도 함께 協議·解決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설명과 合意 文件의 채택을 위한 원칙과 방법 제시
<p>제 1조 상대방 體制尊重, 誹謗中 傷 中止, 内部問題 불간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제안중 공통적이거나 類似한 것을 合意文件으로 작성
<p>제 2조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및 出版物의 相互開放과 교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공통으로 내놓은 不可侵 문제는 하나의 文件으로 채택하고 내용은 공통적인 條項들로 작성
<p>제 3조 離散家族들의 서신왕래, 相逢, 訪問 실시 및 再結合 추진</p>	
<p>제 4조 상대방에 대한 侵略, 破壞·</p>	

우 리 측	北 側
<p>顛覆活動 금지, 不可侵의 領域은 軍事停戰協定에 따라 각기 管轄地域으로 함.</p> <p>제 5조 상호간의 意見對立과 紛爭의 平和的 解決</p> <p>제 6조 軍備競爭 지양, 군사적 信賴構築, 단계적 軍備減縮 실현</p> <p>① 상호 軍事情報 교환 및 軍人士間의 相互訪問과 교류 실현</p> <p>② 機動訓練 사전통보 및 參觀團 초청 교환</p> <p>③ 軍事當局者間 직통전화 設置·運營</p> <p>④ 非武裝地帶의 緩衝地帶化 및 平和적 利用</p> <p>⑤ 軍事力의 不均衡 시정 및 軍備縮小 협의</p> <p>⑥ 現場檢證과 상호 監視體制 교환운영</p> <p>⑦ 본 合意書 발효후 6개월내에 南北軍事共同委員會 구성·운영</p>	<p>- 또 하나의 독자적인 文件으로 『北南和解와 協力交流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p> <p>○ 『北南 不可侵과 和解 및 協力交流에 관한 宣言』草案을 제시</p> <p>< 不可侵과 和解 및 協力交流에 관한 宣言(草案) ></p> <p>1. 北南 不可侵</p> <p>제 1조 상대방에 대한 武力使用 및 侵略 금지</p> <p>제 2조 意見相異와 紛爭問題의 平和적 해결</p> <p>제 3조 불가침 境界線은 1953.7.27 軍事停戰協定 규정에 따름</p> <p>제 4조 軍備競爭 중지 및 軍縮實現</p> <p>제 5조 쌍방 軍事當局者間 직통전화 設置·運營</p> <p>제 6조 동 선언 發效後 2개월 내에 北南軍事共同委員會 구성·</p>

우 리 측	北 側
<p>제 7조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전환노력 및 평화체제 마련 시까지 現 停戰協定 준수</p>	<p>운영</p> <p>제 7조 不可侵의 尊重을 위한 대외적 조치 강구</p>
<p>제 8조 經濟, 交通, 체신, 學術, 敎育, 文化, 藝術, 報道, 體育, 保健, 技術, 宗教, 환경보전 등 여러분야에서 의 교류협력 실시</p>	<p>2. 北南 和解</p> <p>제 8조 상대방의 思想·制度 認定· 尊重</p>
<p>제 9조 자유로운 通行, 通信, 通商 및 경제협력 支援·保障</p> <p>① 陸路·海路·航路 개설 및 통과지점 지정, 장단과 板門 店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京 義線 철도와 문산·개성간 의 道路 연결</p> <p>② 상대측 지역 방문 住民은 상대측의 秩序와 案内에 따름</p> <p>③ 자기측 지역 訪問 주민에 대한 身邊安全과 無事歸還 보장</p> <p>④ 판문점에 郵便交換所 설치 및 電氣通信交流 連結·발 전</p> <p>⑤ 郵便·電氣通信에 대한</p>	<p>제 9조 상대방의 내부분제 不干涉</p> <p>제10조 상대방에 대한 誹謗中傷 중지</p> <p>제11조 상대방에 대한 破壞顛覆行爲 금지</p> <p>제12조 각계 人士·同胞들의 자유로 운 來往·接觸실현</p> <p>제13조 동 宣言 發效後 2개월 내에 北南政治分科委를 구성· 운영</p> <p>3. 北南 協力·交流</p> <p>제14조 民族經濟의 발전과 민족전체 의 福利向上을 위한 經濟協力</p>

우 리 側	北 側
<p>비밀보장 및 軍事的 목적 이용 금지</p> <p>⑥ 郵便·電氣通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적 協約에 따라 해결</p> <p>⑦ 物資交易과 경제협력은 품 목별, 사업별로 자기측 當 局的 승인을 얻은 者 간의 合意에 의해 시행</p> <p>⑧ 상호간의 물자교역에 대한 關稅免除 및 清算計定 結제 원칙 적용</p> <p>⑨ 資本의 이동보장 및 자기측 에 投資된 資本保護措置 강구</p> <p>⑩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내 에 南北通行委員會, 南北通 信委員會, 南北通商 및 經濟 協力委員會 구성·운영</p> <p>제10조 國際舞臺에서의 상호협력 및 민족의 利益과 自尊을 위해 공동노력</p> <p>제11조 서울과 平壤에 常駐連絡代 表部 설치</p> <p>제12조 『政治軍事分科委員會』와</p>	<p>交流 실현</p> <p>제15조 科學, 技術, 敎育, 保健, 體育 報道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 와 경험 交換·協力</p> <p>제16조 끊어진 鐵道·道路 연결, 海 路·航路 개설 및 체신망 연결</p> <p>제17조 人道的 分野에서의 상호 協力· 交流 실현 및 離散家族·親戚 들의 苦痛解消 대책 강구</p> <p>제18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協力 및 對外 공동진출</p> <p>제19조 동 宣言 발효후 2개월내에 北南協力交流分科委員會 구성·운영</p> <p>4. 修正 및 效力</p> <p>제20조 쌍방합의에 의해 修正·補充 가능</p> <p>제21조 發效節次를 거쳐 文本 교환일 부터 효력발생</p>

우 리 側	北 側
<p>『交流協力分科委員會』설치</p> <p>제13조 본 合意書는 兩者·多者間의 조약에 무영향</p> <p>제14조 쌍방 合意에 의해 修正 가능</p> <p>제15조 發效節次를 거쳐 文本交換日부터 효력발생</p> <p>○ 南北間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當面課題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 再開 및 70세이상 高齡 離散家族의 조속한 故鄉訪問을 실시할 것 - 남북간 間接交易을 直接交易으로 전환하고 雪嶽山·金剛山을 비롯한 觀光資源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것 	

< 共同發表文 >

- ① 單一文件으로 된 합의서 채택
- ② 合意書 名稱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③ 合意書 內容 構成 :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 ④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合意書의 內容과 文案 調整을 위한 代表接觸 개최
- ⑤ 12월 10일 - 13일 서울에서 5차 會談 開催

《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1.12.10-12.13,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남북간의 合意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4차 會談과 代表接觸 과정에서 제시된 북한측의 의견을 고려하고 既存의 우리측 合意書 내용을 일부조정하여 새로운 合意書(案)을 제시</p> <p>〈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 〉</p>	<p>○ 기제시한 合意書(案)을 일부조정한 修正案 제시</p> <p>〈 북남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交流에 관한 合意書(案) 〉</p>
<p>- 序 文 -</p>	<p>- 序 文 -</p>
<p>○ 7.4共同聲明의 統一3原則 재확인</p> <p>○ 정치군사적 對決狀態 해소, 民族 和解 이룩</p> <p>○ 武力에 의한 侵略·衝突 막고, 緊張緩和와 平和보장</p> <p>○ 多角的인 交流·協力 실현, 民族 共同 이익과 번영 圖謀</p> <p>○ 쌍방간의 관계가 統一指向 過程에서 暫定的으로 형성되는 特殊關係라는 점 인정</p>	<p>○ 7.4共同聲明의 統一3原則 재확인</p> <p>○ 政治軍事的 대결상태 해소, 민족적 和解·團合 이룩</p> <p>○ 무력에 의한 侵害·衝突 막고, 緊張緩和와 평화보장</p> <p>○ 多方面的인 協力, 交流 실현, 民族 共同 이익과 번영 도모</p> <p>○ 쌍방간의 關係가 통일지향 過程에서 暫定的으로 형성되는 特殊關係라는 점 인정</p>

우 리 側	北 側
<p>○ 平和統一 성취위한 공동노력 傾注</p>	<p>○ 평화통일 성취위한 共同努力 경주</p>
<p>- 南北和解 -</p>	<p>- 北南和解 -</p>
<p>제 1조 남과 북은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존중</p>	<p>제 1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존 재하는 制度를 認定하고 존중</p>
<p>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内部 問題에 간섭하지 아니함.</p>	<p>제 2조 북과 남은 相對方의 내부문제 에 干涉하지 아니함.</p>
<p>제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함.</p>	<p>제 3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誹 謗·中傷을 하지 아니함.</p>
<p>제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破壞· 顛覆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p>	<p>제 4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破壞· 顛覆하려는 일체의 行爲를 하지 아니함.</p>
<p>제 5조 남과 북은 現 停戰狀態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平和狀態 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定着될 때까지 現 軍事停戰協定을 준수</p>	<p>제14조 북과 남은 停戰을 공고한 평 화어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공 동으로 努力 (불가침 분야로 분류)</p>
<p>제 6조 남과 북은 國際舞臺에서의 對決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 하며 민족의 利益과 自尊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p>	<p>제 5조 북과 남은 國際舞臺에서 대결 과 競爭을 중지하고 서로 協 力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위하여 共同으로 노력</p>
<p>제 7조 남과 북은 상호 緊密한 협 의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本 合意書 발효후 2개월 이</p>	<p>제 6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連 絡과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本 合意書 발효후 6개월안에</p>

우 리 側	北 側
<p>내에 板門店에 常設連絡 事務所를 설치하며, 앞으로 서울과 平壤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講究해 나감.</p> <p>제 8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 南北政治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南北和解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對策을 협의</p>	<p>板門店에 連絡事務所를 설치·운영</p> <p>제 7조 북과 남은 이 合意書 발효 후 1개월안에 本會談 테두리안에서 北南政治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北南和解에 관한 합의의 履行을 위한 대책을 협의</p>
<p>- 南北不可侵 -</p>	<p>- 北南不可侵 -</p>
<p>제 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武力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侵略하지 아니함.</p>	<p>제 8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武力을 사용하지 않으며 相對方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아니함.</p>
<p>제10조 남과 북은 상호간에 若起되는 意見對立과 분쟁을 國際聯合憲章에 따라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p>	<p>제 9조 북과 남은 意見相異와 紛爭 문제들을 대화와 協商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p>
<p>제11조 남북간 不可侵 境界線은 1953년 7월 27일자 軍事停戰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軍事分界線으로 하며, 海上에서의 不可侵 區域은 군사</p>	<p>제10조 북과 남의 不可侵 境界線은 1953년 7월 27일부 朝鮮軍事停戰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軍事分界線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지역으로 함.</p>

우 리 側	北 側
<p>정전협정 발효 이후 쌍방이 각기 管轄해 온 구역으로 함.</p> <p>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軍備減縮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主要 軍事訓練과 부대 이동의 사전통보, 훈련참관단의 교환, 非武裝地帶의 평화적 이용 등 軍事的 信賴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함.</p> <p>제13조 남과 북은 武力侵略을 상호 억제하기 위하여 大量殺傷 武器와 기습공격능력을 우선 제거하고 쌍방 軍事力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軍備縮小를 추진</p> <p>제14조 남과 북은 군사적 信賴構築과 軍備減縮의 이행을 위하여 軍事情報를 교환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常駐監視體制를 교환·운영</p> <p>제15조 남과 북은 偶發的인 무력충돌과 같은 軍事的 긴급사태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軍事當局者間에 直通電話를 설치·운영</p>	<p>제11조 북과 남은 不可侵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軍備競爭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동시에 군축을 실현</p> <p>제13조 북과 남은 不可侵에 관한 合意의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안에 北南 軍事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p> <p>제12조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武力衝突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軍事當局者사이에 直通電話를 설치·운영</p>

우 리 側	北 側
<p>제16조 남과 북은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 적 이행을 위하여 本 合意書 발효후 6개월 이내에 南北 軍事委員會를 구성·운영</p> <p>제17조 남과 북은 本 合意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本會談 테 두리 안에 南北軍事分科委 員會를 설치하여 남북불가 침에 관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구체적 대책 과 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반 군사문제를 협의</p>	<p>제15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本會談 테두리안에 서 北南軍事分科委員會를 구 성하여 不可侵에 관한 합의의 履行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解 消하기 위한 구체적 對策을 협의</p>
<p>- 南北交流協力 -</p>	<p>- 北南交流協力 -</p>
<p>제23조 남과 북은 民族經濟의 균형 발전과 민족전체의 福利向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족 내부 交易으로서의 물자교 역과 자원의 공동개발, 合作 投資, 공동 대외진출 등 상 호 경제교류와 協力을 실시</p>	<p>제16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統一的 발전과 民族全體의 복리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資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민족내 부교류로서의 物資交流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p>
<p>제18조 남과 북은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및 出版物의 상호 개방과 교류를 비롯하여 教 育, 文化·藝術, 宗教, 保</p>	<p>제17조 북과 남은 科學, 技術, 教育, 文學藝術, 保健, 體育과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및 出版物 을 비롯한 出版, 報道 등 여</p>

우 리 側	北 側
<p>健·環境, 體育, 科學·技術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실시</p>	<p>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p>
<p>제20조 남과 북은 쌍방 住民의 자유로운 往來와 接觸을 보장</p>	<p>제18조 북과 남은 각계 人士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來往과 接觸을 실현</p>
<p>제19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書信去來와 相逢 및 訪問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再結合을 추진하며,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p>	<p>제19조 북과 남은 人道的 분야에서 호상 협력과 交流를 실현하며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상봉, 서신 거래, 自由意思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p>
<p>제21조 남과 북은 陸路·海路·空路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하며, 우선 京義線 철도와 汶山·開城間의 道路를 연결</p>	<p>제20조 북과 남은 끊어진 鐵道와 道路를 련결하고 海路, 航路를 개설</p>
<p>제22조 남과 북은 郵便과 電氣通信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設置·連結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秘密을 보장</p>	<p>제21조 북과 남은 郵便과 電氣通信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련결하며 郵便, 電氣通信 교류의 비밀을 보장</p>
	<p>제22조 북과 남은 國際舞臺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對外에 공동으로 진출</p>

우 리 側	北 側
<p>제24조 남과 북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具體的 이행을 위하여 본 合意書 發효후 6개월 이내에 南北通行委員會, 南北通信委員會, 남북경제교류·협력 위원회를 구성·운영</p> <p>제25조 남과 북은 본 合意書 發효 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合意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對策을 협의</p>	<p>제23조 북과 남은 經濟와 文化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實現할 데 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본 合意書 發효후 6개월 안에 北南經濟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부문별 共同委員會들을 구성</p> <p>제24조 북과 남은 이 合意書 發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北南協力交流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북남協力, 交流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對策을 협의</p>
<p>- 修正 및 發效 -</p>	<p>- 修正 및 發效 -</p>
<p>제26조 본 合意書는 쌍방이 이미 각기 締結하여 發效중인 兩者 또는 多者間의 條約이나 協定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p>	
<p>제27조 본 合意書는 쌍방의 合意에 의해 修正할 수 있음.</p>	<p>제25조 이 合意書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修正 補充할 수 있음.</p>
<p>제28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署名한 이후 각기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文本을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p>	<p>제26조 이 合意書는 북과 남이 각기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文本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p>

우 리 側	北 側
<p>○ 북한의 核査察 수용과 核武器開發 중지를 촉구하고 『韓半島의 非核化 등에 관한 共同宣言(案)』을 緊急提案으로 제시</p> <p>〈 韓半島의 非核化 등에 관한 共同宣言(案) 〉</p> <p>남과 북은</p> <p>韓半島의 非核化를 실현하고 이 땅에서 化學·生物武器를 제거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시아와 世界平和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核武器의 擴散防止에 관한 條約』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核安全措置協定』을 체결하여 각기 자기측 지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核關聯 施設과 物質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을 것을 수락하면서</p> <p>기존 國際條約上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추가하여</p> <p>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p>○ 팀스피리트 訓練 중지문제를 合意書 타결후 구성될 北南軍事共同委員會에서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當面問題 해결 요구</p> <p>- 92년 한해만이라도 팀스피리트 訓練을 중지할 것</p> <p>- 訪北 拘束者들을 금년말 이전에 석방시킬 것</p>

우 리 側	北 側
<p>① 남과 북은 核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核 武器를 製造, 保有, 貯藏, 備비, 使用하지 아니한다.</p> <p>② 남과 북은 核再處理 시설과 濃縮施設을 보유하지 아니한다.</p> <p>③ 남과 북은 化學·生物武器의 전면적 除去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合意를 遵守한다</p> <p>④ 남과 북은 쌍방이 保有하는 核施設과 物質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査察과는 별도로 上記 條項들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모든 軍事施設과 民間施設 그리고 物質과 場所에 대하여 쌍방이 合意하는 방법으로 査察을 실시하며 사찰의 대상은 상대측에서 선정한다.</p> <p>⑤ 남과 북은 ④항의 履行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쌍방이 合意하는 별도의 機構</p>	

우 리 側	北 側
<p>에서 協議·決定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를 위한 하나의 示範措置로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軍事 및 民間施設에 대한 同時查察 실시 제의 - 對象은 북측의 순천飛行場과 寧邊의 核施設, 우리측의 군산飛行場이나 그밖의 軍事施設과 民間核施設 - 示範查察, 1992. 1. 31 이전에 실시 - 查察의 內容과 方法은 빠른시일 안에 쌍방의 專門家들간에 협의 결정 	
<p>* 남북 雙方은 제5차 會談 기간중 두차례의 代表接觸을 통해 合意書(案)의 內容조정과 文안정리를 마치고 序文과 25個 條項으로 된 『남북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를 타결, 채택·署名하였음.</p>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남북 當事者간에 협의·해결 ○ 南北間 平和가 정착될 때 까지 現 停戰協定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 問題는 停戰協定 체결 당사자인 美國과 해결할 문제
常設連絡事務所 設置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板門店에 설치, 向後 서울·平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개조선을 상징하는 기구를 상대방 行政 中心 地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
不可侵 履行 保障措置 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的 信賴構築 조치들을 합의서에 明記, 명기하지 않고 軍事分科委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북측의 實踐 意志를 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合意書의 信賴構築 條項은 신뢰구축 우선시 하고 軍縮은 뒤로 미루고 있음. ○ 內容上으로도 不可侵 實 質的으로 담보할 수 없음.
新聞·라디오·TV 및 出版物의 相互開放 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言論매체의 상호개방은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民族同質性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本主義 사회의 文化的 汚染으로부터 북한사회를 保護하기 위해 반대
他條約과의 關係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까지의 經過措置로서 이條項을 반드시 포함하여 合意書가 남북 각기 대외 적으로 유지하여 온 법적 關係에 영향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主體性의 상실이며 대결관념의 발로 ○ 本 合意書를 他條約보다 우위에 놓아야 함.

〈 共同發表文 〉

1. 남과 북은 1991.12.13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에 署名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각기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韓半島에 核武器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核問題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안에 板門店에서 代表接觸을 갖기로 하였음.
3. 남과 북은 제6차 南北高位級會談을 1992.2.18 平壤에서 開催하기로 합의하였음.

《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2.2.18 - 2.21, 平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合意書의 역사적 意義와 性格 규정 - 『南北基本合意書』와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은 앞으로 새로운 南北關係를 이끌어 갈 기본적인 틀로서 다음과 같은 歷史的 意義와 性格을 갖고 있다고 규정 · 當事者 解決原則에 입각한 남북간의 自主的인 노력에 의해 분단 이후 책임있는 쌍방 政府 當局間에 채택된 최초의 文書 임. · 남북간의 敵對와 對決에 종지부를 찍고 和解와 協力の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임. · 남북간에 緊張狀態를 解消하고 이 땅에 平和를 定着시켜 나가자는 것임. · 經濟를 비롯하여 각 分野에 걸쳐 交流와 協力を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合意書의 意義 평가 - 北南合意書는 그 意義에 있어 역사적인 7.4 共同聲明에 맞먹으며 그 내용에서 나라의 平和를 보장하고 平和統一에 유리한 前提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諸般問題들을 담은 包括的이며 실천적인 것으로 이는 통일의 밝은 曙光을 안아온 획기적인 事變이며 커다란 민족적 盛事임. ○ 北南合意書의 履行과 相關한 立場 表明 - 合意文의 해석과 실천방법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尺度는 7.4 共同聲明에서 천명된 자주, 平和통일, 민족대단결의 祖國統一 3原則이라고 주장 · 自主: 美軍撤収, 美軍과의 合同 軍事演習 전면중지, 反外勢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인민들에 대한 彈壓중지

우 리 側	北 側
<p>해 나감으로써 共存共榮을 통해 民族共同體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임.</p> <p>○ 南北合意書의 實踐問題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合意書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原則的이고 方向的인 내용만을 담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 實效性을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에 성의있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 - 쌍방이 南北合意書의 實踐意志를 象徵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離散家族 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이는 南北和解와 南北關係 改善의 징표로서 시급히 풀어야 할 人道主義的 문제임을 강조 · 分科委員會의 構成·運營 이 전이라도 南北合意書 발효와 함께 70세 이상 高齡者의 故鄉訪問만이라도 우선 실현 <p>○ 향후 南北高位級會談의 方向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統一: 軍備擴張 중지, 조속한 軍縮措置 실현, 조선반도의 非核地帶化 · 民族大團結: 민족적 和合과 團結의 실현에 저촉되는 政治的, 法律的 장애 제거, 訪北人士의 석방 <p>○ 高位級會談의 향후 基本事業에 대한 見解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회담은 合意書 條文의 解釋과 執行方途에서 제기되는 論爭問題에 대한 解答과 調節, 분과위원회들 상호간의 橫的 連繫保障 및 協議事項 조절, 그리고 合意事項에 대한 최종 檢討·確認·批准 - 高位級會談은 共同委員會 사업의 了解掌握 및 쌍방 合意事項의 執行 촉진, 共同委 운영과 합의사항의 執行過程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解決對策 강구 - 合意와 實踐의 일반적 節次는 『一括合意, 同時實踐』의 原則이 합의서의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고위급회담이 수행해야 할 任務와 機能은 남북합의서의 성실한 履行과 遵守를 보장하고, 각 分科委와 共同委의 활동을 지도하고 그 協議結果를 審議·確定·發效 - 각 分科委와 共同委에서의 의견 대립 事案을 調整·處理하고 새로운 委任事項을 협의·결정하며, 그밖에 새로 제기되는 남북간의 懸案問題들을 協議·解決 - 南北高位級會談의 運營과 관련하여 代表團 구성과 회담장소는 豫備會談에서의 合意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도록 하되, 會議週期는 년 4회의 定期會談과 필요에 따른 臨時會談으로 구분하여 개최 <p>○ 核問題 解決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短時日안에 전면적인 國際核査察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日程을 제시할 것 - 核統制共同委를 構成·運營하여 	<p>가장 合理的인 방도 단, 쌍방이 先次性을 부여하고 合意와 實踐에 독립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件別合意, 件別實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位級會談은 合意書의 테두리 안에서 제기되는 緊急한 해결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分科委를 거침이 없이 직접 協議·解決 <p>○ 對日 共同決議案 채택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挺身隊 問題와 일본의 核開發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이 시급히 共同對應策을 협의하고 쌍방 當局이 빠른 시일 안에 代表接觸을 갖고 共同決議案을 채택할 것

우 리 側	北 側
<p>査察의 구체적인 節次와 方法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南北相互査察이 실시되기 전이라도 非核化 共同宣言의 이행의지를 보이기 위해 示範査察을 실시할 것</p> <p>- 非核化 共同宣言에 규정된대로 核統制共同委員會가 앞으로 1개월 안에 본격적인 稼動에 들어가기 위해 조속히 그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채택할 것</p>	

《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2.5.5 - 5.8,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그동안 진행되어 온 分科委員會 會議過程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우리측 立場 表明</p> <p>- 履行機構의 發足問題: 『南北基本合意書』에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履行機構는 정해진 期限안에 발족시켜야 함.</p> <p>- 附屬合意書 채택문제: 쌍방이 각기 제시한 附屬合意書 案을 토대로 협의하여 합의되는 사항들은 合意文件으로 작성하고, 합의되지 못한 사항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는 입장에서 附屬合意書를 順次的·逐次的으로 채택하며, 附屬合意書의 내용은 구체적 節次와 方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p> <p>○ 7.4 共同聲明의 통일 3原則에 대한 우리측 입장 설명</p> <p>- 自主의 原則: 민족문제를 民族 自決의 정신에 따라 당사자</p>	<p>○ 제6차 會談 이후의 쌍방 協議過程을 평가</p> <p>- 附屬合意書 문제: 부속합의서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共同委員會가 구성된다 하여도 그것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附屬合意書를 작성하는 것이 分科委員會의 기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機能이며, 『一括合意, 同時實踐』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야 함.</p> <p>- 核문제: 남측이 核査察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分科委員會의 사업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南北合意書의 이행을 보류시키려 하고 있음.</p> <p>○ 남측이 南北合意書의 정신과는 어긋나게 일련의 本質的인 문제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回避하는데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측의 見解 피력</p> <p>- 첫째, 남측이 먼저 철저한 민족</p>

우 리 側	北 側
<p>인 남북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서 自主의 原則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호 法秩序를 존중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의 原則: 민족문제를 武力使用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배제한 對話와 協商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서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이 충실히 이행되면 남북간의 停戰狀態는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것임. - 民族大團結의 原則: 민족적 화해를 바탕으로 團合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民族構成員 個個人의 尊嚴가 존중되고 複數意見이 허용되는 가운데 基本人權과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p>○ 高位級會談, 分科委, 共同委의 機能과 運營方向 제시</p>	<p>自主的 입장에 서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駐韓美軍을 철수시키는 勇斷을 내려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相對方法秩序』 존중이라는 명목 밑에 國家保安法을 그대로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민족적 和解의 정신과 상대방을 尊重할데 대한 合意事項에 충실하게 이를 폐지하여야 함. - 셋째, 統一問題는 當局이 관장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문제이며, 『窓口一元化』 논리를 正當化하려 하지 말고 各黨·各派·各界各層의 광범한 정치세력과 인민들에게 統一聖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 <p>○ 附屬合意書 및 履行機構 발족에 대한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數: 條項別로 따로 따로 만들어 여러단계로 共同委員會에 넘겨줄 경우 공동위원회가 해당분야의 이행사업을 효율적으로 밀고 나가는 데서 制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분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位級會談은 각 分科委員會와 共同委員會의 활동지도 및 의견 對立事案의 調整·處理, 각 分科委員會 협의결과의 審議·確定·發效 및 分科委員會에 위임해야 할 사항의 協議·決定 그 밖에 제기되는 남북간의 懸案問題를 협의·해결해 나가야 함. - 分科委員會는 共同委員會가 발족된 이후에도 『南北基本合意書』 해당부문의 구체적 이행 대책중 未合意事項과 새롭게 제기되는 사항 및 高位級會談의 위임사항 협의, 附屬合意書의 수정·보충 등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함. - 共同委員會는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의 實踐機構로서 쌍방 수석대표의 指導·調整·委任下에 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의 실천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앞으로 쌍방의 合意에 따라 필요한 共同委를 구성·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南北基本合意書』내용의 合意 	<p style="text-align: center;">야별 單一合意書로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內容: 공동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細部合意書 같은 것이 토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共同委員會의 所管에 속하는 기술실무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시킬 수는 없음. - 履行機構 발족문제: 共同委員會를 필요이상 많이 내오는 것은 합의서 이행에서 혼란과 복잡성이 조성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서도 부담이 크므로 和解分野의 경우 政治共同委員會 한개를 내오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다만 名稱에 있어서 和解共同委員會로 할 수도 있음. ○ 구체적 實踐段階에 들어선 高位級會談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겨레에게 南北合意事項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特例的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 - 이인모 送還問題 해결

우 리 側	北 側
<p>方式과 實踐方法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各 條項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과 이의 실천문제를 『一括合意, 同時實踐』의 原則에 따라 包括的·劃一的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件別合意, 卽時實踐』의 원칙하에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履行·實踐해야 할 것임. <p>○ 南北相互核査察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 非核化의 관건은 南北相互査察 실현에 있으며 남북상호 사찰은 6월 초순경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p>○ 『8.15 慶祝訪問團』교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時期·期間: 금년 8.15를 전후 하여 10일 정도 - 規模: 離散家族을 비롯하여 政治人·經濟人·文化藝術人·體育人·教授, 學生 등 各계인사와 取材記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8.15 이전에 訪北拘束者 석방 - 8.15 光復節을 계기로 『老父母 訪問團과 예술단』교환 문제를 쌍방 赤十字 團體에 권고하여 실시 · 訪問團의 규모는 老父母 100명, 예술단 70명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實務問題는 쌍방 赤十字 團體들 사이에 협의·해결

우 리 側	北 側
<p>를 포함한 300여명 정도</p> <p>- 内容: 相對側에서 개최되는 8.15 紀念式, 文化行事, 學術 討論會, 體育競技大會 등 敬축행사 참석 및 이산가족 相逢의 자리를 마련할 것</p>	

〈 共同發表文 〉

1. 『 南北基本合意書 』 和解分野의 履行機構 構成 합의
 - ① 『 南北和解共同委員會 』 구성 · 운영
 - ② 和解共同委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數의 實務協議會 설치
 - ③ 제8차 高位級會談 이전에 和解分野의 附屬合意書 작성 및 和解共同委 발족

2. 1992년 5월 18일 軍事, 經濟交流 · 協力, 社會文化交流 · 協力 등 3개 共同委 구성 및 구성원 名單 상호 통보

3. 1992년 5월 18일 南北連絡事務所 구성원 名單 상호 통보 및 운영 개시

4. 『不可侵』, 『交流·協力』 附屬合意書 작성시한 합의

- 不可侵分野 附屬合意書 : 92. 9. 1 까지
- 交流·協力分野 附屬合意書 : 92. 9. 5 까지

5. 금년 8.15를 계기로 老父母 100명, 藝術人 70명 記者·支援人員 70명
으로 구성되는 離散家族 老父母 訪問團 및 藝術團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 실시를 赤十字團體에 위임

6. 각 分科委와 核統制共同委 次期 회의날짜 합의

- ① 제4차 核統制共同委 : 92. 5. 12(화)
- ② 제4차 政治分科委 : 92. 5. 19(화)
- ③ 제4차 軍事分科委 : 92. 5. 25(월)
- ④ 제4차 交流·協力分科委 : 92. 5. 30(토)

7. 제8차 高位級會談 개최 : 92. 9. 15-18, 平壤

《 第8次 南北高位級會談 : 1992.9.15 - 9.18, 平壤 》

우 리 측	北 側
<p>○ 基調演說을 통해 우리측 立場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는 具體的·實踐的 내용을 담아야 하며 상대방이 수락할 수 없는 내용을 강요한 다거나 南北基本合意書의 정신과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새롭게 제기해서는 안됨. - 老父母 訪問團 交換事業은 아무런 前提條件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새로이 訪問團 交換日字를 정하여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南北相互核査察 실시를 북측이 조속히 받아들여 核開發 疑惑과 不信을 解消한다면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시키고 南北關係 發展을 가속화시켜 나갈 굳건한 土臺를 마련하게 될 것임. - 南北基本合意書가 發效된 지금 	<p>○ 基本發言을 통해 北側立場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位級會談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會談場 밖에도 있음. · 남측이 벌이고 있는 核騷動 · 『포커스텐즈』등 도발적인 合同 軍事訓練 · 남측 當局의 汎民族大會 탄압 - 非核化 共同宣言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남측이 주장하는 『相互對稱 同數原則』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으며, 일반 軍事基地에 대한 査察問題는 軍縮問題로서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임. - 남측이 『核査察』문제를 北南關係改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老父母 訪問團 및 예술단 교환사업까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은 矛盾的인 政策表明을 철회해야 하며 이인모 노인의 송환문제에 대해 肯定的 조치가 있어야 함.

우 리 側	北 側
<p>까지도 對決時代의 남북관계에 서나 볼 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며, 특히 최근에 있었던 사건(김낙중 간첩단 사건)은 南北關係의 장래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p>	<p>○ 이번 會談에서 對日 共同對處問題를 토의하고 관련 合意書를 채택할 것을 제기하면서 日本의 過去清算과 核武裝化, 海外派兵에 공동으로 대처할데 대한 合意書(草案)을 제시</p>
<p>* 쌍방은 本會談 이외에도 代表接觸 2회, 政治分科委員長 接觸 3회, 軍事分科委員長 接觸 2회, 交流·協力分科委員長 接觸 1회, 核統制共同委員長 接觸 1회 등 9차례의 接觸을 개최하여 附屬合意書 未解決 條項들을 계속 협의하였음.</p>	

< 合意事項 >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1장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2장 南北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3장 南北交流·協力』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 南北和解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유엔加入問題 關聯 實務代表接觸

0 제1차 實務代表接觸 (1990. 9.1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0 제2차 實務代表接觸 (1990.10. 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0 제3차 實務代表接觸 (1990.11. 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유엔加入問題 관련 第1次 實務代表接觸 : 1990. 9. 1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 北韓側이 9.14 電話通知文을 통해 『유엔加入問題 協議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 우리側이 이에 同意함으로써, 9.18 第1次 實務代表接觸 개최

우 리 側	北 側
○ 북한측의 『單一議席下 유엔가입』방안이 實現可能性이 희박한 것임을 指摘하고, 유엔同時加入의 現實性和 合理性 설명	○ 『하나의 朝鮮政策』을 앞세운 單一議席下의 南北韓 유엔共同加入 방안 提示

《 유엔加入問題 관련 第2次 實務代表接觸 : 1990.10. 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 1次接觸時 北側이 제시한 『금년 중 單一議席下에 유엔共同加入』방안이 유엔憲章 제4조의 加入要件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南北韓이 유엔에 함께 加入할 것을 促求	○ 유엔同時加入 또는 單獨加入을 『두개의 朝鮮政策』, 『分裂政策』이라고 되풀이 비난하면서 單一議席下에 유엔 共同加入을 계속 고집

《 유엔加入問題 관련 第3次 實務代表接觸 : 1990.11. 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議席下의 유엔가입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더이상의 實務代表接觸이 불필요함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議席下 유엔가입안을 유엔에 共同으로 신청하여 表決에 부쳐보자고 주장

核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

0 제1차 代表接觸 (1991.12.26, 板門店 『統一閣』)

0 제2차 代表接觸 (1991.12.28, 板門店 『平和의 집』)

0 제3차 代表接觸 (1991.12.31, 板門店 『統一閣』)

《 核問題 協議를 위한 第1次 代表接觸 : 1991. 12. 26,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p>○ 韓半島 核問題 해결의 緊要性和 時急性을 강조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늦어도 92.1.15까지 核安全措施 協定에 署名하고 추진·발효시킬 것 - 우리측의 『非核化共同宣言』案을 수락하여 核再處理施設과 우리늄 濃縮施設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意思를 表明할 것 - 92.1.31 까지 示範查察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그 구체적 施行方法에 대한 合意를 이룰 것을 촉구 	<p>○ 우리측 主張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安全措施 協定 체결과 核查察은 북한측이 自主的으로 해결할 문제이나 그 해결에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 核再處理 施設과 우리늄 濃縮施設 不保有등 우리측안을 적극 수용하여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草案)』을 새로 提示하였음.

《 核問題 協議를 위한 第2次 代表接觸 : 1991. 12. 28,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p>○ 名稱, 序文 및 內容一部에서 북측안을 수용한 共同宣言 修正案을 새로 제시</p>	<p>○ 實踐이 隋伴되는 사항을 최대한 遲延시키면서 원칙적 宣言만을 우선 채택하려는 立場을 견지</p>

《 核問題 協議를 위한 第3次 代表接觸: 1991. 12. 31, 板門店 『統一閣』 》

- 南北雙方은 同時 相互核査察, 북측의 國際核査察 受容, 發效時期 및 核攻撃 假想 軍事訓練 금지 등 未解決 사항에 대해 重點協議한 결과
 -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文案에 합의하고 假署名 하였으며
 - 동 『共同宣言』의 發效節次 및 時期를 규정한 共同發表文을 채택하였음.

〈 共同發表文 〉

核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代表接觸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板門店에서 세차례 진행되었음.

雙方代表들은 韓半島의 非核化를 통하여 核戰爭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環境을 마련하려는 공동의 使命感으로부터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草案에 대한 진지한 討議와 協議를 거쳐 文案整理를 끝내고 이에 假署名하였음.

1. 남과 북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각기 發效에 필요한 節次를 밝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發效되도록 함.

2. 남과 북은 이를 위한 事前措置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雙方 總理가 署名한 共同宣言文을 板門店에서 交換함.
3. 남과 북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쌍방의 合意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다는데 合意하였음.

分科委員會 構成・運營 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

0 제1차 代表接觸(1992. 1. 23, 板門店 『平和의 집』)

0 제2차 代表接觸(1992. 1. 29, 板門店 『統一閣』)

0 제3차 代表接觸(1992. 2. 7, 板門店 『平和의 집』)

《 分科委員會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1次 代表接觸 :
1992. 1. 23,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측	北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政治, 軍事, 交流·協力등 3개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 ○ 한반도의 非核化를 조속히 구현하기 위해 남북 쌍방이 合意한대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를 『非核化共同宣言』發效後 1개월 만에 발족시켜 6차 高位級會談 직후 활동이 本格化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을 북측에 전달 - 『3개分科委員會』와 『核統制共同委員會』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문제도 병행 討議하여야 함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政治, 軍事, 交流·協力分科委員會 構成·運營問題에 대해 3개 分科委員會를 구분하지 않은 하나의 合意書(案)을 제시 ○ 『核統制共同委員會』는 6차 高位級會談시 共同宣言 發效後 대표접촉을 통해 1개월 내에 構成이 가능하며, 連絡事務所 設置·運營 문제는 政治分科委員會에서 토의할 事案으로 政治分科委員會가 構成되면 타 共同委員會와 같이 3개월 이내에 構成 가능하다고 언급

< 3개 分科委 構成·運營 관련 雙方提案 比較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合意書 文件 數	○ 分科委別 합의서(3개)	○ 統合된 합의서(1개)
構 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長 1, 委員 6명 (고위급회담 대표 1명 포함) ○ 交流·協力分科委는 제1분과(非經濟), 2분과(經濟)로 區分(각 위원장 1, 위원 6명, 총 14명) ○ 細部事項 협의를 위한 『實務協議會』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長 1, 委員 4명 - 고위급회담 代表가 委員長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사람도 可能 - 委員은 고위급회담 대표 또는 該當 관계자
機 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에 명시된 기능 ○ 共同委 구성·운영문제 ○ 기타 高位級會談에서 위임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이행을 위한 구체적 對策 協議 및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 마련 ○ 共同委 구성·운영합의서 작성

區 分	우 리 側	北 側
運 營	<p><時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分科委員會 會議을 월 1회 이상 개최 (필요시 수시) <p><場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平壤 또는 板門店 (합의시 다른장소) <p><會議運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委員長이 공동진행 (쌍방 합의제) - 必要인원 배석가능 <p><公開與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公開를 원칙 (필요시 合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科委員會別 구분없이 20일에 1회정도 개최 <p>○ 『統一閣』, 『平和의집』 輪番 개최(합의시 다른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長만 발언 원칙 (필요시 위원 발언) - 隨員 5-6명 <p>○ 非公開를 원칙 (필요시 합의 公開)</p>
修正·補充	○ 쌍방 合意로 수정·보충	○ 쌍방 합의로 修正·補充
分科委 合意 事項 效力 發生	○ 쌍방 總理 署名으로 발효	○ 高位級會談에서 최종 합의, 總理 署名으로 발효
分科委 構成· 運營 合意書 發效	○ 쌍방 總理 署名으로 발효	○ 쌍방 총리 署名·交換으로 발효

《 分科委員會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2次 代表接觸 :
1992. 1. 29,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p>○ 分科委 構成·運營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折衷(案)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書 形式 : 單一合意書 -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交流·協力分科委』를 제1분과, 2분과 구분없이 다른 分科委와 동일하게 7명으로 구성토록 調整 · 委員長은 高位級會談 代表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함. · 『實務協議會』는 『小委員會』로 名稱을 변경 · 隨行員 조항을 新設, 6명으로 하되 필요시 人員調整 가능 - 機能 : 각 分科委의 機能은 3개 분과위를 包括, 4개 기능을 수행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履行·遵守를 위한 구체적 대책 협의 · 이행에 따른 附屬合意書 작성 · 共同委員會 構成·運營합의서 작성(남북연락사무소 설치· 	<p>○ 제1차 代表接觸時 제시했던 合意書(案)을 일부 修正하여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科委 委員長과 委員交替時 5일 전 통보 - 會議은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 수시 개최 가능 - 分科委 운영은 쌍방 委員長이 공동으로 진행

우 리 側	北 側
<p>운영 합의서는 政治分科委에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委任한 사항 협의 <p>- 運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催時期 : 각 分科委 회의는 월1회 개최, 合意에 따라 수시 개최 · 場所 : 板門店 또는 合意하는 장소 <p>- 本會談과의 관계 : 分科委에서의 協議結果는 高位級會談에 보고</p> <p>- 效力發生 : 分科委 합의사항은 高位級會談에서 總理署名으로 발효하되 합의에 따라 署名·交換하는 방법도 가능</p> <p>○ 『核統制共同委』構成·運營問題와 관련하여 『核統制共同委』도 分科委와 마찬가지로 1992. 3. 19 이전에 構成·運營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p> <p>- 内容合意, 發效節次, 내부적 人</p>	<p>○ 금번 代表接觸이 『分科委』構成·運營問題를 토의하도록 總理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만큼 『核統制共同委』문제를 論議하는 것은 적합치 않으며</p> <p>- 『核統制共同委』문제는 『非核化</p>

우 리 側	北 側
<p>員構成問題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차 代表接觸에서 『核統制共同委』 구성·운영 문제도 協議하여야 함을 강조하고</p> <p>- 『核統制共同委』구성 이전에 核問題에 관한 의혹과 오해를 풀고 조기에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示範查察을 수용할 것을 촉구</p>	<p>共同宣言』發效後에 협의해도 1개월내에 構成·運營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p> <p>- 示範查察문제는 全面查察이든 시범사찰이든 『核統制共同委』가 구성되어 協議·解決할 문제라고 주장</p>

《 分科委員會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3次 代表接觸 : 1992. 2. 7, 板門店 『平和의 집』 》

○ 금일 接觸에서 남북 쌍방은 『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내용에 合意하고 假署名 하였으며, 제6차 南北高位級會談 제1일 會議에서 이를 署名·發效시키기로 合意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 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

- 제1차 代表接觸 (1992. 2. 19, 平壤)
- 제2차 代表接觸 (1992. 2. 27, 板門店 『統一閣』)
- 제3차 代表接觸 (1992. 3. 3, 板門店 『平和의 집』)
- 제4차 代表接觸 (1992. 3. 4, 板門店 『統一閣』)
- 제5차 代表接觸 (1992. 3. 6, 板門店 『平和의 집』)
- 제6차 代表接觸 (1992. 3. 10, 板門店 『統一閣』)
- 제7차 代表接觸 (1992. 3. 14, 板門店 『平和의 집』)

《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1次 代表接觸 :
1992. 2. 19, 平壤 》

우 리 側	北 側
<p>○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하고 우선 討議할 것을 주장</p> <p>〈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p> <p>1. 核統制共同委는 다음과 같이 構成</p> <p>가. 쌍방 각기 委員長 1명과 副委員長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委員長은 차관 급으로 함.</p> <p>나. 쌍방은 核統制共同委의 구성원을 交替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p> <p>다. 핵통제공동위가 委任하는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해 實務委員會를 둠.</p> <p>2. 核統制共同委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協議·推進</p> <p>가. 쌍방의 核施設과 核物質에</p>	<p>○ 合意書(案) 제시도 없이 소극적인 姿勢로 일관</p>

우 리 側	北 側
<p>대한 情報交換에 관한 사항</p> <p>나. 韓半島의 非核化를 검증하기 위한 査察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쌍방의 核施設과 核物質에 대한 査察對象의 선정 및 査察節次·方法에 관한 사항</p> <p>라. 査察에 사용될 수 있는 査察裝備에 관한 사항</p> <p>마. 쌍방의 核施設과 核物質에 대한 査察結果에 따른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p> <p>바. 사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紛爭의 해결에 관한 사항</p> <p>사.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아. 기타 韓半島의 非核化를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항</p> <p>3. 核統制共同委는 다음과 같이 運營</p> <p>가. 核統制共同委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구분,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會議期間은 5일 이내, 임시회의는 어느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隨時로</p>	

우 리 側	北 側
<p>개최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함.</p> <p>나. 核統制共同委의 會議는 板門店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合意하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음.</p> <p>다. 核統制共同委의 會議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非公開를 원칙으로 함.</p> <p>라. 核統制共同委의 會議에서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p> <p>마. 核統制共同委의 會議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往來하는 인원들에 대한 身邊安全保障, 便宜提供과 회의기록등 實務節次는 관례대로 함.</p> <p>바. 기타 核統制共同委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쌍방 合意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p> <p>4. 查察對象의 선정 및 查察節次, 方法등에 관한 규정은 核統制共同委 제1차 정기회의후</p>	

우 리 側	北 側
<p>1개월이내에 정하여야 함.</p> <p>5. 核統制共同委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總理가 合意文件에 署名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p> <p>6. 쌍방은 이 合意書 發效後 1개월 이내에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2개의 施設과 場所에 대해 相互示範查察 실시</p> <p>7. 이 合意書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修正·補充</p> <p>8. 이 合意書는 쌍방이 署名한 날부터 효력 발생</p>	

《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2次 代表接觸 :
1992. 2. 27,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p>○ 북측 合意書(案)의 내용을 檢討한 후, 북측 합의서(안)내용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合意書』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査察의 前提條件이 될 수 없으며 - 査察規程 마련의 時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p>○ 쌍방 合意書(案)의 主要 差異點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定期會議 1개월이내에 査察 規程을 마련하고, 합의서 發效後 1개월 이내에 상호 示範 査察을 실시할 것을 촉구 - 實務委員會 설치, 전문가 배석, 臨時會議 소집 등이 합의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p>○ 『北南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草案)』을 제시</p> <p>〈 北南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草案)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核統制委員會 構成은 다음과 같이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북과 남에서 각각 委員長 1명과 副委員長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構成, 그중 2명은 현역 장령, 군관으로 함. 공동위원회 委員長은 副部長(차관)급으로 함. ② 쌍방은 核統制委員會 成員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相對側에 통보 ③ 핵통제위원회 隨員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合意하여 조절 2. 核統制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協議, 推進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朝鮮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리행을 위한 합의서 採擇과 관련된 사항 ② 쌍방의 核施設과 核物質, 核武器와 核基地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③ 朝鮮반도의 非核化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構成·運營에 관한 사항 ④ 쌍방의 核施設과 核物質, 核武器와 核基地에 대한 사찰대상 의 選定 및 사찰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⑤ 査察에 수용될 수 있는 査察 裝備에 관한 사항 ⑥ 核査察結果에 따른 是正措置에 관한 사항 ⑦ 『朝鮮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리행에서와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紛爭問題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⑧ 朝鮮반도에 대한 外部의 核威脅을 공동으로 저지시키며 朝鮮반도의 非核化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擔保를 받기 위한 대책과 相关的 事項

우 리 側	北 側
	<p>3. 核統制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핵통제위원회 會議는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 쌍방이 合意하여 날짜를 조절할 수도 있음. ② 核統制委員會 會議는 판문점 『統一閣』과 『平和의 집』에서 번갈아하는 것을 원칙, 쌍방이 合意하는 다른 場所에서 할 수도 있음. ③ 핵통제위원회 會議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運營하며 非公開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核統制委員會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來往하는 인원들에 대한 身邊安全擔保, 便宜提供과 회의기록 등 실무적 절차는 慣例대로 함. ⑤ 핵통제위원회 運營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위원회에서 合意하여 따로 정함. <p>4. 쌍방은 『朝鮮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리행을 위한 合意서와 査察對象의 선정 및 査察절차, 방법 등에 관한 規程이</p>

우 리 側	北 側
	<p>채택된 다음 20일안에 査察을 시작</p> <p>5. 核統制委員會의 合意事項은 쌍방 總理가 합의문건에 署名한 날 부터 효력 발생 주요합의문건은 쌍방總理가 서 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p> <p>6. 이 合意書는 쌍방의 합의에 따 라 修正, 補充</p> <p>7. 이 합의서는 쌍방이 署名하여 교환한 날부터 效力 발생</p> <p>○ 제1차 接觸時 우리측이 제시한 『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韓美軍의 核武器 및 核基地를 査察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核問題 해결에 있어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 『非核化共同宣言』의 이행에 따 른 전반적 문제보다는 査察問題만

우 리 側	北 側
	<p>을 강조하고 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의 非核化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核威脅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와 非核化에 대한 주변 핵무기 保有國들의 국제적 담보 문제가 排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實務委員會』, 『臨時會議』, 『示範查察』, 『發效問題』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

〈 雙方 合意書(案) 主要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 構 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명 ○ 實務委員會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명 * 2명은 현역 장령(장군), 군관(장교) 포함 (수원 6명 배석)
〈 機 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核施設, 核物質에 대한 情報交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核施設, 物質, 武器, 基地에 대한 정보교환

區 分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共同宣言』이행 합의서 ○ 외부의 核威脅 공동저지, 非核化에 대한 국제적 擔保
〈 運 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定期會議 : 3개월간격 (5일 이내) ○ 臨時會議 : 수시 ○ 專門家意見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定期會議 : 2개월간격
〈査察規程 明文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定期會議 후 1개월 이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 共同宣言 履行 合意書』와 査察規程 채택 후 20일 이내 사찰 실시
〈 示 範 査 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書發效 1개월 이내 2개 施設, 場所 	
〈合意事項 發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總理가 合意文件에 署名한 날부터 효력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總理가 署名한 날부터 하되, 主要文件은 서명후 발효에 필요한 節次를 거쳐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
〈合意書 發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署名한 날부터 효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署名한 合意書 交換한 날부터 효력발생

《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3次 代表接觸 :
1992. 3. 3,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p>○ 제2차 代表接觸時 제시한 北側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쌍방의 주요 差異點에 대한 우리측 立場 표명</p> <p>- 非核化共同宣言 履行合意書가 필요하고 查察規程 채택후 查察을 실시하자고 한데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合意하는 查察規程에 따라 상호사찰이 실시되면 非核化共同宣言의 1, 2, 3항이 잘 지켜지는지 檢證이 될수 있으며 별도의 合意書는 불필요함. · 비핵화공동선언 履行合意書의 채택을 相互查察의 전제조건화 한다면 이는 북측이 核武器를 몰래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非難을 면키 어려울 것임. <p>- 외부 核威脅에 대한 共同沮止 및 주변 核武器 보유국가들의</p>	<p>○ 우리측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反駁하고 이에 대한 북측 見解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잘 이행하려려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合意書를 協議·採擇해야 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合意書를 채택하는 것은 共同宣言을 원만히 잘 이행하기 위한 必須的인 요구임. 남측이 제의한 示範查察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사찰의 對象, 節次, 方法 등은 核統制共同委에서 討議해결할 문제이지 代表接觸에서 협의·결정할 性格의 문제가 아님.

우 리 側	北 側
<p>국제보장 운운한데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共同宣言은 남과 북이 自主的 立場에서 非核化를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한 것이 지 周邊 核 保有國들의 핵위협에 대한 共同對處 또는 이들 국가의 한반도 非核化를 보장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임. - 相互主義에 입각한 査察을 반대한다는데 대해 · 核査察은 強制性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同等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며, 同數査察 원칙이 지켜져야 함. · 北側은 우리측의 모든대상을 査察하고 우리측은 북측의 일부만을 사찰할 수 있다는 주장은 相互主義와 衡平의 원칙에 배치됨. ○ 北側案을 일부 수용한 우리측 修正案을 제시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構成部分에서 實務委員會를 든다는 條項 삭제, 북측안 隨行員 관련조항 수용 - 2조 機能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構成·運營에 관한 사항 삭제 - 3조 核統制共同委 會議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條項削除, 정기회의 會議週期를 2개월로 조정, 회의기간 명시 삭제 - 4조에 『사찰규정이 採擇된 후 20일안에 사찰시작』부분추가 	

《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4次 代表接觸 :
1992. 3. 4,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p>○ 쌍방이 현격한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는 제2조(기능)중 『非核化共同宣言 履行을 위한 合意書』 문제와 제4조 (사찰규정 마련시한)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共同宣言』 1, 2, 3항은 履行 義務條項으로서 4항에 따른 査察規程을 통해 그 이행을 檢證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合意書는 불필요함을 지적 - 査察規程 마련에 시한을 두지 않을 경우 査察이 遲延되어 북측에 대한 내외의 의혹이 증폭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査察規程 마련 시한을 明記하지 않은 北側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표명 	<p>○ 『非核化共同宣言』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 채택이 核統制共同委의 기능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核統制共同委가 일할 수 있는 자(기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 - 査察規程 마련 시한문제와 관련, 査察規程은 核統制共同委가 구성되어 協議·解決할 문제라고 주장

《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5次 代表接觸 :
1992.3.6,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p>○ 제4조(査察規程 마련시한)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査察規程 마련에 時限을 두지 않을 경우 核統制共同委가 공전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한을 명기하지 않은 北側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 北側이 時限을 명시한 修正案을 제시할 것과 만약 북측이 시한을 명시할 수 없다면 『한달 내 示範査察 실시』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 	<p>○ 제4조와 관련, 査察規程 마련은 核統制共同委의 기능이며 따라서 그 시한도 代表接觸에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두가지 方案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未合意 事項인 제3조(운영)와 제5조(합의사항 발효절차)를 妥結하여 제4조와 제6조를 제외한 쌍방 合意事項만으로 合意書를 채택·가서명을 하고 未合意事項은 핵통제공동위로 委任하는 방안 - 合意與否에 관계없이 核統制共同委 제1차 회의일자와 委員名單 通보일자를 합의하는 방안

《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6次 代表接觸 :
1992. 3. 10,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代表의 會談에 임하는 자세 문제에 대하여 是正을 촉구하고 우리측 見解 제시 - 査察規程 마련에 時限을 두는 문제 : 査察時限 문제는 단순한 明示, 不明示의 문제가 아니며 북측이 核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意志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됨. - 未妥結 문제를 제외하고 쌍방 합의사항만으로 合意書 採擇 또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核統制共同委 제1차 회의 날짜를 정할 것을 주장한데 대한 문제 : 가장 核心的인 사항인 사찰개시의 시한문제를 빼놓고 合意書만을 채택하려는 북측의 意圖가 의심스러움. 합의된 것만으로 合意書를 만들자는 주장은 집을 짓는데 지붕모양에 의견이 다르다고 지붕이 없는 집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內容을 조정한 合意書 修正(案)을 제시 - 제4조(비핵화공동선언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 채택후 20일 이내 사찰실시)조항을 삭제 - 北側4조와 南側4조 (사찰규정은 1차 정기회의후 1개월 이내 마련)를 核統制共同委에서 討議

《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第7次 代表接觸 :
1992.3.14, 板門店 『平和의 집』 》

- 남북 雙方은 爭點事項인 『査察規程 마련시한』 명시문제를 『核統制 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 조항에서 削除하는 대신 『共同發表文』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討議를 진행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文案에 합의하고 假署名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共同發表文』을 採擇·發表

〈 共同發表文 〉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에 따라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 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代表接觸이 1992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7차례 進行되었음.

쌍방 代表들은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에 대한 眞지한 討議와 協議를 거쳐 文案整理를 끝내고 이에 假署名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에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1992년 3월 17일과 3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總理가 署名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板門店에서 교환함.
2. 남과 북은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員 名單을 1992년 3월 18일에 상호 통보함.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會議를 1992년 3월 19일 板門店 북측지역 『統一閣』에서 개최함.
4. 남과 북은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1차 會議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非核化를 檢證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文件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査察을 시작하기로 諒解하였음.

2. 南北政治分科委員會

南北政治分科委員會

○ 제1차會議(1992. 3. 9, 板門店 『平和의 집』)

○ 제2차會議(1992. 3. 27, 板門店 『統一閣』)

○ 제3차會議(1992. 4. 23, 板門店 『平和의 집』)

△ 제3차會議 委員接觸(1992. 4. 2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4차會議(1992. 5. 19, 板門店 『統一閣』)

○ 제5차會議(1992. 6. 9, 板門店 『平和의 집』)

○ 제6차會議(1992. 7. 2, 板門店 『統一閣』)

△ 제6차會議 委員長接觸(1992. 7. 10, 板門店 『平和의 집』)

△ 제6차會議 제1차 委員接觸(1992. 7. 1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6차會議 제2차 委員接觸(1992. 7. 3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6차會議 제3차 委員接觸(1992. 8. 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6차會議 제4차 委員接觸(1992. 8. 1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7차會議(1992. 8. 28, 板門店 『平和의 집』)

△ 제7차會議 제1차 委員長接觸(1992. 9. 4, 板門店 『統一閣』)

△ 제7차會議 제2차 委員長接觸(1992. 9. 8, 板門店 『平和의 집』)

《 第1次會議：1992. 3. 9,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調發言을 통해 南北基本合意書의 意義를 강조하고, 특히 序文에서 재확인하고 있는 7.4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에 대한 우리측 立場을 표명 - 自主의 原則：統一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당사자인 南北 쌍방간에 해결 - 平和原則：基本合意書 제5조에서 남북간 平和狀態로의 轉換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統一은 平和的 方法에 의해 성취 - 民族大團結：민주주의와 기본적인 人權이 보장된 基礎위에서만 가능하며 이것이 共有되지 못하는 狀況에서는 운위 불가능 ○ 政治分科委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과제인 『南北和解』를 이룩하기 위하여 遵守해야 할 세가지 원칙을 提示 - 첫째, 서로 상대방의 體制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和解는 不可侵과 함께 『南北基本合意書』의 기본핵인 만큼 政治分科委員會에서 토의하게 되는 문제들은 『南北基本合意書』의 前途를 좌우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關鍵的인 문제들이라고 主張 ○ 南北基本合意書 제1장(남북화해)의 이행과 관련하여 政治分科委員會가 해결해야 할 課題로 - 『南北基本合意書』 제1장(남북화해)의 履行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案) 제시 - 不可侵이나 交流·協力部門과 마찬가지로 和解部門에서도 履行機構인 南北政治共同委員會를 내오는 것이 順理라고 주장하면서 『南北政治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 · 委員長은 部長(長官)級으로 하고 副委員長制를 둠 · 정치공동위원회 會議 運營은 년 3회 정도로 定例化

우 리 側	北 側
<p>질서 尊重의 원칙을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남북당사자 解決原則을 지켜야 하는 바, 統一問題는 민족자결 원칙에 따라 책임있는 當局間에 해결 - 셋째, 南北和解의 원칙에 입각, 상대방의 利益과 尊嚴을 일방적으로 損傷시키는 대결적 자세 포기 필요 <p>○ 政治分科委에서 협의·해결할 南北和解分野의 각 條項들에 대해 그 구체적 對策에 관한 우리측 見解와 立場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제1조(상호 체제존중), 제2조(내부문제 불간섭), 제3조(비방·중상중지), 제4조(파괴·전복행위금지)등은 『平和共存原則』에 土臺를 두고 있음. - 앞으로 協議·解決할 條項別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 상대방의 政治·經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공동위원회 안에 實務協議會를 구성·운영 - 『板門店 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 · 赤十字連絡事務所를 代替하여 政黨·團體 個別的 人士들의 전반적 連絡業務를 수행 <p>○ 南側이 『和解分野 履行을 위한 附屬合意書』등을 준비하지 않은것은 政治分科委員會 會議에 대해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非難</p>

우 리 側	北 側
<p>社會·文化制度와 이것의 바탕이 되는 法秩序 尊重方法과 『통일을 지향하는 特殊關係』의 설정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 상호 不干涉 대상의 설정 문제 · 제3조 : 誹謗·中傷의 概念定義 및 구체적 履行方案과 상대방 國家元首 및 特定人士·體制에대한 誹謗優先中止 問題 · 제4조 : 모든 폭력행위 拋棄·排擊에 필요한 措置와 일체의 顛覆 政策·行爲의 근원적 근절 조치 강구 <p>* 이상의 問題들이 法律的·制度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문제해결의 환경조성을 위해 『南北法律共同委員會』발족을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남북간 평화상태로의 轉換)는 條文上 별도의 附屬合意書 作成이 필요함. · 제6조(국제무대에서의 協力)는 履行對策을 협의하여 事業別로 별도의 附屬合意書 마련이 필요함.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南北連絡事務所 설치)는 시급히 協議·解決되어야 할 課題로서 이에 대한 우리측 合意書(案)을 제시함. * 남북연락사무소 設置·運營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委員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 ○ 北側의 核査察 문제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核武器 개발 여부에 대한 국제적 疑懼心이 증폭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 核査察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南北和解·協力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南北對話가 영향을 받을 것임을 強調하면서 - 북측이 핵없는 韓半島를 실현하기 위한 誠意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促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이 북측의 核問題 해결노력을 促求한데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話相對方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內政干涉的인 오만무례한 發言"이라고 抗辯하고 - 우리측에 대해 "美國의 恣정策, 日本의 核武裝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主張에 놀아나는 民族主體性이 없는 事大主義的 태도를 버리라"고 主張

《 第2次 會議 : 1992. 3.27,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懸案問題들에 관한 北側立場의 不當性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立場 表明 - 북측의 包括的 單一 附屬合意書 採擇 主張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該當部門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협의한 결과를 담도록 規定하고 있는 『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 前文 및 제2條 ①, ②項에 대한 위반이며 · 南北基本合意書 협상과정에서 撤回했거나 거론된 적이 없는 事項들을 附屬合意書에 포함 하는 것은 不當함. - 包括的 單一共同委員會 主張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 和解分野에서 그같은 合意事項이 없으며 · 화해분야에서 實踐機構로서의 共同委員會 構成與否는 화해 분야 각 條項의 구체적 履行· 遵守對策 협의결과 필요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이행 및 分科委員會 運營에 있어 堅持해야 할 원칙적 立場 表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主的 立場 : 外勢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同族끼리 손을 잡고 통일문제 해결 - 統一指向的 立場 : 남북관계를 共存·共榮 관계로 규정하거나, 南北基本合意書 條項들이 평화공존 5原則 및 유엔憲章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歪曲 - 民族大團結 圖謀 立場 : 남북和解와 民族大團結은 當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各界各層 人민들이 제한없이 서로 接觸·往來하고 對話함으로써 가능하며 민족적 화해와 團合을 해치는 法的·制度的 장치 제거 - 合意書의 요구에 충실 : 7차 本會談에서 附屬合意書 및 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를 채택·발효

우 리 측	北 측
<p>인정되면 쌍방이 합의하여 구성하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 合意書 채택을 부속합의서 채택에 連繫시키는 主張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 제2조 ②항 및 ③항에 違反 이며 · 附屬合意書 先 採擇을 전제조건화 하는 것은 부당함. ○ 南北政治分科委員會가 『기본합의서』 해당부문의 履行·遵守를 위해 구체적으로 協議·解決해야 할 과제들을 條項別로 북측에 提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條(상호체제 인정·존중), · 第2條(상호내부문제 불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相對方 政府 대표성 인정 ② 상대방 政治, 經濟, 社會, 文化制度 인정·존중 ③ 상대방 法秩序 존중 ④ 『暫定的 特殊關係』로서 南北 相互關係의 구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會議(3.9)시 제시한 附屬合意書(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 附屬合意書を 채택해야 함. * 共同委 구성·운영합의서 및 板門店 連絡事務所 설치·운영합의서는 단일 附屬合意書의 附錄 문건으로 제시 - 先 附屬合意書, 後 共同委員會 構成·運營合意書, 마지막으로 連絡事務所 設置·運營合意書의 순서로 討議進行해야 함. - 政治共同委와 관련, 實務問題는 共同委 테두리안에 설치된 實務協議會에서 협의해결하며, 高位級會談 外的機構로 되어야 함. - 관문점 연락사무소와 관련, 連絡事務所는 자기측 지역에 두고 細部化된 기구는 불필요하며, 赤十字 連絡事務所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

우 리 側	北 側
<p>設定</p> <p>⑤ 상대방 外交政策과 제3國과의 관계 불간섭</p> <p>⑥ 南北法律共同委員會 구성·운영</p> <p>· 第3條(상호비방·중상행위중지)</p> <p>① 상대방 最高當局者에 대한 指名 人身攻擊 중지</p> <p>② 상대방에 대한 誹謗·中傷 行爲 실태조사 및 是正方案 강구</p> <p>③ 軍事分界線 一帶 확성기 방송과 視覺媒介物에 의한 선전활동에 대한 實態조사 및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문제</p> <p>· 第4條(파괴·전복행위 금지)</p> <p>① 相對方에 대한 一切 破壞·顛覆활동의 원천적 禁止 措置 강구</p> <p>② 상대방 지역의 反政府團體 또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海外集團을 이용, 相對方體制 顛覆 活動을 하지 않는 문제</p> <p>③ 상대방 體制와 법질서의 破壞·顛覆 目的의 非合法 組織을 상대방 지역에 結成</p>	

우 리 側	北 側
<p>助長・支援・庇護하지 않는 문제</p> <p>④ 국제 테러행위 加擔・支援 등 일체 행위를 하지 않으며 『테러리즘』에 관한 國際協約 履行・遵守</p> <p>・第5條(남북간 평화상태로의 전환)</p> <p>① 현 停戰狀態를 남북간 공고한 平和狀態로의 轉換</p> <p>② 鞏固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의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문제(軍停委・中監委의 정상화 및 비무장 지대의 비무장화)</p> <p>・第6條(국제무대에서의 협력)</p> <p>① 國際機構・國際會議등 국제무대에서의 相互誹謗・中傷 중지</p> <p>② 남북 海外公館 常駐地域에서의 협의창구 개설</p> <p>③ 國際聯合의 기구가 所在한 지역에서의 南北代表間 協議 定例化</p> <p>④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 亞・太 경제사회이사회</p>	

우 리 側	北 側
<p>(ESCAP),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등 國際機構를 통한 共同事業 추진</p> <p>○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問題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락사무소는 南北間 화해·협력시대의 象徴的 조치로, 군사적 대결상태 解消에 기여하기 위해 相對方 지역에 交換·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함. - 向後 많은 人的·物的 往來와 郵便通信의 활성화 및 各種會議와 접촉의 增加를 고려, 각종 機構가 필요함. - 赤十字連絡事務所는 쌍방 적십자간의 合意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그 存續與否도 쌍방 적십자의 所管事項임. 	

《 第3次會議：1992. 4. 23,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측	北 측
<p>○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에 별도의 條項 (7조)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設置時限(5.19)이 明示되어 있음을 想起 - 북측이 부속합의서 優先討議를 고집함으로써 時限內에 남북연락사무소가 開設되지 못할경우 南北最高當局者가 승인한 南北基本合意書 效力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 - 쌍방이 1次會議時 제시한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 合意書』의 重要 差異點이 ① 設置場所, ② 南北往來·接觸 案内室 등 機構設置 문제, ③ 赤十字 連絡事務所와의 관계 등 몇가지 뿐이므로, 이 문제를 優先的으로 集中論議하여 제7차 本會談에서 합의서를 發效시킬 것을 촉구 <p>○ 附屬合意書 採擇問題</p>	<p>○ 두차례 진행된 政治分科委員會 會議 결과와 관련, 우리측에 대한 立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7.4共同聲明 統一3原則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主의 原則：駐韓美軍은 分열의 장본인으로 이를 合理化하려는 것은 外勢依存的 사고방식 · 平和統一：『先 信賴構築』을 구실로 평화문제의 근본문제인 군축을 회피 · 民族大團結：민족대단결 문제를 理念問題와 결부시킴으로써 同 原則을 蹂躪 - 둘째, 分裂指向의 立場 固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의 『暫定的 特殊關係』를 實體認定論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 - 셋째, 南北基本合意書 實踐意志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連絡事務所 문제를 優先討議할 것과 附屬合意書 및 共同委를 여러개로 하자는 것은 合意事項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 和解分野의 條項別, 事案別 重要도와 緩急에 따라 優先順位를 가려 구체적 이행대책을 協議, 그 合意事項을 부속합의서로 採擇해야 한다는 우리측 基本立場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 - 協議와 合意의 토대로 附屬合意書(案)을 제시해 달라는 北側의 요구를 受容, 다음과 같은 南北基本合意書 第1條에서 第6條까지의 履行對策을 담은 5個 附屬合意書(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相互體制 認定· 尊重과 内部問題 不干涉에 관한 合意書(제1, 2조) · 南北사이의 誹謗· 中傷 中止에 관한 合의서(제3조) · 南北사이의 破壞· 顛覆行爲 금지에 관한 合意書(제4조) · 南北사이의 停戰狀態의 平和狀態 轉換에 관한 合意書(제5조) · 南北사이의 國際舞臺에서의 協力에 관한 合意書(제6조) 	<p>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誹謗· 中傷 中止와 관련, 民營放送에 대한 『完全統制 不可能論』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 一括合意, 同時實踐은 쌍방 合意事項으로 『輕重· 緩急』을 가려 選別 討議하자는 것은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넷째, 統一問題 性格, 當事者 問題에 대한 그릇된 立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性』, 『當事者原則』은 當局의 統一論議 獨占, 對話 窓口 一元化 의도 <p>○ 3次 會議에 임하는 北側立場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包括的 단일 부속합의서를 優先 採擇하고 단일 共同委 構成· 運營 문제를 협의한 후 南北連絡事務所 設置· 運營문제를 協議하도록 함. - 특히 附屬合意書 내용에는 對策的 問題들만 포함되도록 하고 細部問題들은 共同委員會가 규정해야 함. - 連絡事務所를 相對側 地域에 두는 것은 分裂指向的이므로 자기측 지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附屬合意書(案)은 論理的 合理性과 客觀的 妥當性 및 現實的 實踐性을 보장하고 있음을 설명 · 『南北基本合意書』 및 『分科 委 構成· 運營合意書』에 가장 충실하게 作成 · 『南北基本合意書』의 단순한 具體化가 아니라 구체적 履行 節次와 방법 제시 · 남북사이의 『暫定的 特殊關係』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행과 해석상의 誤解· 摩擦 해소 · 課題別 부속합의서 형태를 취해 事案의 輕重· 緩急· 難易度에 따라 順次的· 逐次的 合意土臺 마련 · 남북관계 發展에 따라 필요한 과제를 추가로 補完· 解決 가능 	<p>역에 두고 往來· 接觸 案内室 등 機構設置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p>

《 第3次 會議 委員接觸 : 1992. 4. 2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南北基本合意書 제7條에 發足時限(5.19)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合意가 용이한 남북연락 사무소 문제를 優先 討議한 후 附屬合意書, 共同委員會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강조</p>	<p>○ 討議進行과 관련, 먼저 附屬合意書를 토의하되, 종합적인 單一附屬合意書로 하는데 쌍방이 合意한 후 條項順序에 따라 共通點·差異點을 타진하는 방법으로 進行하고 다음으로 共同委員會 문제를 협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南北連絡事務所 問題를 협의해야 한다고 主張</p>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南北連絡事務所設置·運營問題	<p>○ 南北基本合意書 該當條項(제7조)에 따라 『판문점』 明示는 불필요</p>	<p>○ 『판문점』 明示 필요</p>
	<p>○ 『남측』·『북측』으로 수정 가능</p>	<p>○ 『서울』·『平壤』은 地理的 개념상 부적합</p>
	<p>○ 판문점 相對側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緊張緩和와 和解를 상징</p>	<p>○ 상대측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運營·管理上 불편하며 分斷固着化 및 2個 朝鮮 인상</p>

區 分		우 리 側	北 側
	機能	○ 북측안의 『政黨·團體· 個別人士間 連絡』은 명시 불필요	○ 共同委 委任事項 등 高 位級會談 테두리내에 국 한하기 보다는 폭넓게 범위 설정
	機構	○ 向後 확대될 기능에 대비 하여 설치필요	○ 現段階에서는 불필요하 며, 장치 필요한 경우 쌍방이 協議하여 設置 可能
附屬合意書 問題		○ 상대방의 合意書(案)을 『分裂指向的』이라고 罵 倒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 가 아님. ○ 쌍방이 제시한 附屬合意書 의 내용을 먼저 討論한 後 附屬合意書의 수를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 함.	○ 남측 附屬合意書(案)은 分裂指向的이며 대화의 당국 獨占 意圖가 드러 나 있음.
共同委員會 問題		○ 기본합의서에 『單一共同 委員會 構成』이라는 규정 이 없는 만큼 쌍방의 협의 결과에 따라 委員會 數를 조정	○ 종합적인 單一共同委員 會 構成

《 第4次會議：1992. 5.19, 板門店『統一閣』 》

우 리 측	北 측
<p>○ 3차례의 政治分科委 會議와 1차례의 委員接觸에서 나타난 쌍방간 견해차이와 會談不進의 원인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共同聲明의 統一3原則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와 관련, 對話相對方에게 『分裂主義』나 『外勢依存』이니 하는 일방적인 非難을 함으로써 회담분위기를 惡化시키는 일은 지양되어야 함. - 쌍방간의 合意事項을 철저히 履行·遵守해야 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歪曲시켜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討議는 南北和解分野 履行對策 협의·해결 ⇒ 附屬合意書 작성 ⇒ 共同委員會 구성·운영의 순으로 진행 · 『一括合意·同時實踐』을 앞세워 合意事項의 실천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合意된 것은 實踐에 옮기는 『件別合意, 卽刻實踐』원칙 준수 	<p>○ 제4차會議에서 協議·解決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附屬合意書의 작성이라고 하면서 그 形式과 內容에 대해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形式은 포괄적인 單一 附屬合意書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事項에도 맞고 합의하기도 쉬우며 實踐하기에도 합리적 - 內容構成은 『基本合意書』와 민족단합의 정신에 맞게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共同聲明의 祖國統一 3大原則에 부합 · 외세의존, 분열지향적 요소를 배제 · 共同委에서 『細部合意書』를 작성할 것을 고려, 實務的·細末的 문제까지 담는 것은 불필요 <p>○ 제3차 會議時 제시한 우리측 附屬合意書(案)의 일부내용을 受容한 부속합의서 修正案을 제시</p>

우 리 側	北 側
<p>○ 제3차 會議에서 제시했던 5개 附屬合意書(案)들을 하나의 『章』 編制로 통합·재구성한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에 관한 合意書』(안)을 제시하고 그 주요 특징을 설명</p> <p>- 여러개의 相異한 附屬合意書를 하나의 單一合意書에 『章』으로 構成해 보자는 북측 주장을 고려, 合意를 容易케 하는 方面으로 單一 附屬合意書(案)으로 수정·제의한 것임.</p> <p>· 내용중 일부라도 合意가 이루어진다면 別途 附屬合意書로 작성, 이를 實踐</p> <p>- 北側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特殊關係』등과 같은 重要事項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담고 있음.</p> <p>· 내부적으로 相互 實體를 인정·존중하고, 對外的으로 유엔會員國간의 관계인 二重的 관계이며, 平和統一 실현시까지 민족의 繁榮과 統一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관계</p>	<p>〈 主要 修正 內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法秩序 존중』(1조②항) : 新設 · 『상대방 대외관계 不干涉』(2조②항) : 新設 · 『사실에 대한 客觀的 보도는 誹謗·中傷의 대상에서 제외』(3조④항) : 新設 ·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 造作·流布 금지』(3조③항) : 추가보완 · 『상대방을 破壞·顛覆하려는 外部勢力이나 집단의 행위에 不加擔』(4조③항) : 新設 · 『現 停戰狀態를 공고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해 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을 성실히 이행·준수』(5조②항) : 新設 ·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서 상호 誹謗·中傷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尊嚴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6조①항) : 新設 · 『民族共同利益 도모를 위해 해외공관이 함께있는 지역에서 公館長間 협의』(6조 ④항) : 新設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처럼 『具體化』라는 명분하에 基本合意書를 『細項化』하거나 선언적·원칙적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基本合意書 화해분야 各 條項들 履行·遵守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 基本合意書 『和解分野』 각 조항들을 合意事項대로 충실히 이행·준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음. ○ 『南北和解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합의서(안)』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委員長 1명(차관급이상) 副委員長 1명, 委員 7명 * 필요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機能 : 和解分野 해당부문의 附屬合意書 이행 - 合意事項 發效 : 쌍방總理 署名 交換으로 發效, 重要文件은 쌍방총리 署名後 필요한 節次를 거쳐 발효 	

《 第5次 會議：1992. 6. 9,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측	北 측
<p>○ 제4차會議時 우리측이 提示한 附屬合意書(案)의 基本趣旨와 正當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의 形式(체제와구조) : 기본합의서 和解分野의 구체적 履行對策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 - 제1장(總則) : 基本合意書 序文의 『特殊關係』를 『국제관계가 아닌 民族内部關係 이면서 한편으로 국제적으로는 國際聯合 會員國간에 형성되는 2중의 관계』로 규정 - 제2장(體制認定·尊重, 内部問題 不干涉) : 기본합의서 제1, 2조는 정치적 측면을 규율하는 條項들로 여타 조항과는 구별되므로 하나의 章으로 묶는 것은 당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政府의 管轄權 존중, 정치, 經濟體制 및 法秩序 존중·불간섭, 제3國과의 關係 존중·불간섭 	<p>○ 우리측 附屬合意書(案)에 대해 다음과 같이 問題点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내용이 現狀 固着과 分裂을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殊關係를 2중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實體 認定論에서 출발한 것으로 반통일적 立場의 집중적 표현 - 反目과 對決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國家保安法』등 和解에 저촉되는 법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도 露呈 · 誹謗·中傷 中止의 행위 주체에서 民營言論機關을 배제한 것은 부당 · 民間級 對話 차단 및 통일애국 團體·人士의 탄압·처형을 내부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 - 外勢依存的 立場과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停戰狀態의 平和狀態 전환 문제에서 『當事者 解決原則』을 들고 나와 美軍의 계속駐屯을 기도

우 리 側	北 側
<p>* 쌍방 法 實態 調査 및 문제 점 협의 위해 和解共同委안에 法律實務協議會 설치·운영 제의</p> <p>- 제3장(誹謗·中傷中止): 비방·중상의 適用對象, 行爲主體, 手段方法 등에 관해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設定해야 實踐性이 보장</p> <p>· 適用對象은 상대방 特定人·體制·政策, 行爲主體는 國家機關·執權政黨·公營言論機關 등 공공단체</p> <p>* 和解共同委안에 비방·중상중지 實務協議會 구성·운영제의</p> <p>- 제4장(破壞·顛覆行爲금지): 쓰라린 과거의 민족적 經驗을 염두에 두고 相互禁止되어야 할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천성 보장과 相互信賴의 基盤構築에 중점</p> <p>· 반드시 禁止해야 할 破壞·顛覆行爲의 기본적 類型 구체화, 자기측·상대측·제3국을 막론 破壞·顛覆을 위한 단체組織·結成·支援·助長등 금지</p>	<p>* 停戰協定の 평화협정 전환의 主體는 北과 美國이라고 언급</p> <p>· 軍停委 機能正常化는 남과 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며, 남측의 將星을 首席代表로 내세운 한 不可</p> <p>· 제3국과의 관계 존중은 民族團結과 利益에 배치되는 條約·協定을 계속 尊屬시키려는 의도</p> <p>- 信義를 저버리는 태도</p> <p>· 基本合意書 작성 단계에서 철회한 『實體認定』, 『제3국과의 관계』 문제를 다시 附屬合意書에서 제기</p> <p>· 高位級會談에서 합의한 『一括合意, 同時實踐』을 합의한 바 없다면서 『件別合意·即刻實踐』을 주장</p> <p>· 『思想·制度를 부정, 敵對視하는 法律·制度的 裝置 제거』 및 『他條約과의 관계』를 북측이 철회한 것이라는 주장은 무근거</p> <p>○ 4차會議時에 제시한 附屬合意書에 『章』제목을 달고 條項配列을 조정한 修正(案)을 提示</p>

우 리 측	北 측
<p>-제5장(停戰狀態의 平和狀態轉換): 盧泰愚 大統領이 제46차 유엔 總會 연설에서 밝힌 平和 3原則이 담긴 南北基本合意書와 핵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非核化共同宣言을 성실히 履行·遵守함으로써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 실현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停戰協定の 代替方案 강구, 現 停戰狀態의 평화상태 전환시까지 軍事停戰協定 遵守위한 3개항 조치 제안 <p>- 제6장(國際舞臺에서의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대에서 相互 誹謗·中傷中止, 南北公館간 협의장구 개설, 국제회의 및 國際機構 활동에서의 협력방안, 海外 同胞 권익보호등 규정 <p>○ 우리측이 提示한 附屬合意書(案)이 합리적이고 合目的的이며 기본합의서의 요구에도 符合됨을 강조하면서 이를 土臺로 逐條討議에 들어갈 것을 提議</p> <p>○ 非武裝地帶 북측 武裝兵力 浸透 事件(5.22)에 대한 진상규명, 責</p>	<p>○ 남측이 『核問題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進展을 기대할 수 없다』고 公言하고, 『누구에 대한 制裁니 팀스피리트訓練再開』니 하는 騷動을 벌이고 있다고 시비하면서</p> <p>- 북에 대한 國際核査察 結果를 稀釋시키고, 北의 對美·日 관계개선에 制動을 걸며, 불안한 국내정세를 수습해 보려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서</p> <p>- 南北和解·協力에 人爲的 難關을 조성하고 모처럼 마련된 老父母 訪問團 교환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p>

우 리 側	北 側
任者 처벌, 재발방지 조치 강구 및 軍事停戰委 회의소집 呼應을 촉구	

< 雙方 意見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1장 : 總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를 마련함에 있어서 目的을 분명히 밝히는 것과 함께 義務와 責任의 主體가 명백해야 基本合意書의 실천이 명백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의 구체적 履行對策이 아닌 一般論的인 내용으로 다른 分科委 附屬合意書에 없는 것을 화해분야 總則에 담는 것은 불필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大韓民國의 관계를 明記하자는 것은 양측의 實體를 國家로 인정하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南側의 分裂固着化 底意를 드러낸 것임.
제2장 : 體制 (制度) 認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제1조와 제2조는 다같이 정치적 측면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 제1장 화해의 『章』에 규정되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尊重과 内部 問題 不干涉</p>	<p>規律하는 條項들로 이 두 條文을 하나의 『章』으로 묶는 것이 條項의 특성에 비추어 당연하며, 北側(案)은 基本合意書의 조항에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맞추어 編成되어 있음.</p>	<p>어있는 모든 條項은 정치문제이며, 각 條項間에 輕重과 拘束力을 다르게 하는 것은 기본합의서 정신에 符合되지 않음.</p>

《 第6次會議：1992. 7. 2, 板門店『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p>○ 基調發言을 통해 北側立場중 會談의 進전을 가로막는 問題點을 지적</p> <p>- 남북 쌍방간에 基本合意書 협상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이미 合意한 事項들에 대해 『論議되었던 바는 있지만 撤回한 바는 없다』고 強辯한 사실은 合意事項을 스스로 위배하는 행위임.</p> <p>- 우리측 附屬合意書(案)에 대해 『현상고착과 分열지향』, 『反目과 對決의 지속』, 『외세의존적 입장』, 『信義를 저버리는 것』 운운하면서 비난한 사실은 賊反荷杖격임.</p> <p>- 『特殊關係 問題를 附屬合意書 제1장으로 설정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相互體制 인정·존중』을 회피하려는 데에 기인한 것임.</p> <p>* 基本合意書 제1조를 管掌하는 政治分科委가 序文을 다루는 것은 당연함을 지적</p>	<p>○ 북측 附屬合意書(案)은 평화·통일 지향적, 공명정대한(안)이며 남측이 제시한 附屬合意書는 다음과 같은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p> <p>- 特殊關係를 규정한 총칙『章』은 百害無益하며 반통일적·분열지향적임.</p> <p>- 基本合意書 제1,2조를 묶어 1개 『章』으로 構成한 것은 부당함.</p> <p>- 상대방 法秩序 존중의 구실밑에 對話일방을 『敵』으로 규정한 法까지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은 온당치 못함.</p> <p>- 민족의 團合과 利益에 배치되는 제3국과 맺은 條約·協定の 개정 또는 폐기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p> <p>- 誹謗·中傷의 行爲主體를 공공단체로만 한정하는 것은 불철저한 것임.</p>

우 리 측	北 側
<p>- 우리측이 『여러개의 附屬合意書 작성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一括合意, 同時實踐』원칙과 包括的 單一 附屬合意書 작성에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음.</p> <p>* 새로운 附屬合意書를 生産·補充할 수 있으며 『件別合意·即時實踐』원칙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p> <p>○ 既存(案)제2장에 함께 포함되었던 『體制認定·尊重』, 『內部問題 불간섭』을 별도의 『章』으로 분리하고 『履行機構』를 獨立 『章』으로 신설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을 제시하면서 우리측(안)을 토대로 逐條討議에 들어갈 것을 제의</p> <p>* 제8장(이행기구)에 『法律實務 協議會』, 『誹謗·中傷中止 實務協議會』의 구성을 명시</p>	<p>- 停戰狀態의 평화상태 轉換에 있어 南北當事者 解決原則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측은 停戰協定 締結 當事者가 아니며 이행의 책임있는 실제적 당사자도 아님.</p> <p>○ 남측 附屬合意書에는 基本合意書 정신에도 배치되고 객관적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基本合意書를 外勢依存的이며 分裂指向的인 정략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p> <p>○ 최근 남측이 『南北核 同時査察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모든 南北交流를 留保하겠다』, 『核問題가 해결됨이 없이는 9월까지 附屬合意書 작성 문제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등 『제2의 核騷動』을 일으키고, 『팀스피리트』訓練 재개를 檢討 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對決騷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p> <p>○ 제8차 高位級會談 이전에 『附屬合意書를 작성할 것인가』, 『和解共同委를 발족시킬 것인가』의 여부</p>

우 리 側	北 側
	<p>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교환 사업을 실현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남측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3가지 문제에 대한 남측의 명백한 態度表明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基本合意書를 성실히 이행할 意思가 있는가, 없는가 - 둘째, 相互核査察을 전제조건으로 合意書 履行을 유보하려는 그릇된 입장을 계속 취하겠는가, 철회하겠는가 - 셋째, 事大主義·外勢依存的 立場에서 벗어나 自主的 立場에서 合意事項들을 協議·解決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 雙方 意見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核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問題의 해결없이는 南北關係의 실질적 進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의 臨時査察 결과로 북측의 평화적인 核政策 推進이 立證되었고, 남

구 분	우 리 側	北 側
	<p>리측 政府當局의 일관된 입장임.</p> <p>○ IAEA 제1차 臨時査察을 통해 核再處理 施設의 건설, 플루토늄의 추출등 북측의 核武器 開發 계획 추진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국제사회의 疑感이 오히려 증폭 되었으므로 核統制共同委에서 조속히 査察規程을 채택하여 特別査察을 포함하는 南北相互査察을 실현 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야 함.</p>	<p>은 문제는 美軍 核武器·核基地에 대한 全面査察의 실시이며, 美國의 지시에 따라 『反北核騷動』을 벌이는 南側에 南北相互査察 遲延의 책임이 있음.</p>

< 合意事項 >

○ 附屬合意書 題目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1장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 前文 :

南과 北은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의 『제1장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 제2장 題目 : 體制(制度) 認定·尊重

《 第6次 會議 委員長接觸 : 1992. 7. 10,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附屬合意書(案) 제4장 (誹謗·中傷中止)중 『適用對象』(제9조)은 削除하고 『規制對象』(제13조)과 『例外條項』(제14조)의 순서를 바꾼 附屬合意書 修正(案)을 提示하고 逐條討議에 들어갈 것을 제의 ○ 核問題가 南北合意書 履行의 前提條件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7.7 對北書翰에 대해서는 연형묵 總理의 공식적인 回信을 통해 북측의 입장을 밝혀야 함을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案) 討議에 앞서 核問題 및 7. 7 對北書翰(* 정원식 總理 名義)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問題와 南北合意書 履行의 連繫 問題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명백히 해 줄 것을 재차 요구 - 7. 7 對北書翰은 『合意書 履行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이인모 送還에 걸림돌을 만들기 위한 政治的 謀略』이라고 비난 - 이인모가 送還되지 않을경우 老父 母訪問團 交換事業이 流産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인모의 送還方法 節次에 대한 남측의 答辯을 요구

〈 雙方 意見 差異点〉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3장 : 内部 問題 不干涉	○ 불간섭 대상의 핵심은 유효한 統治權을 행사하는	○ 合意書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不干涉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政府當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구체적 履行 對策을 담는 附屬合意書에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이나 用語는 적합치 않음.</p> <p>- 北側案 제7조는 『内部 問題 不干涉』 조항을 백지화하려는 意圖</p>	<p>條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南側(案)은 지나치게 제한적임.</p> <p>- 南側(案) 제8조(제3국과의 관계)는 분열지향적·외세의존적 條約을 존속시키려는 의도.</p> <p>- 北側(案) 제7조(예외조항), 제8조(외세의 내정 간섭에 불가담)는 7.4 共同聲明 統一3原則과 基本合意書 정신에 부합</p>
<p>제4장 : 誹謗·中傷中 止</p>	<p>○ 第4章의 體制는 행위주체, 대상, 수단·방법, 예외조항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手段·方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음.</p> <p>- 북측이 合意書에 『정부』라는 표현의 명기를 반대하는 것은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모순</p>	<p>○ 北側(案)이 誹謗·中傷의 행위 주체·수단·방법을 綜合的으로 망라했으며 合意事項 위반시 책임을 규명할 수 있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음.</p> <p>- 南側(案)이 行爲主體를 공공단체로 局限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p>

區 分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案) 제11조(상대방 정부 비방·중상중지)는 불필요 - 南側(案) 제14조(예외조항)중 5항(외국언론 인용보도)은 부당 - 南側(案) 제13조 ⑥항(군사분계선 일대 방송 등)은 獨立條項이 되어야 하며 『따라살포』배제는 부당
제5장 : 破壞·顛覆行爲 禁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爲內容의 구체적 類型을 명시하고 해석상 차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規定, 執行하여야 함. - 北側案 제16조중 『相對方』, 제17조중 『外部의 세력』, 제18조중 『제3국 또는 그외 團體』의 意味가 모호함을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이 파괴·전복행위의 類型을 적절히 구분하고 있는 반면, 南側案은 共同委에서 다룰 구체적 『行爲類型』을 나열하면서도 『偵探』은 빠져있음. - 南側案 제17조중 『反體制』의 기준이 모호 - 南側案 제15조 ⑥항(파괴·전복 목적의 선전·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선동행위)은 獨立條項으로 설정하는 것이 정당</p> <p>- 南側案 제19조(국제테러 방지협약 준수)는 당연하므로 불필요</p>
<p>제6장 : 停戰狀態의 平和狀態에로 의 轉換</p>	<p>○ 남과 북이 平和協定締結의 當事者이며 『남북사이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고 停戰協定 遵守의 구체적인 방법·내용이 제시되어야 함.</p>	<p>○ 남북간 平和協定 締結主張은 제30차 유엔총회 결의와 停戰協定에 어긋나며, 政治分科委員會에서는 현 휴전협정의 代替方案을 강구할 수 없음</p> <p>- 南側案 제22조(군사정전 협정 준수 위한 3개항)는 停戰協定 締結當事者 사이에 할 일</p>
<p>제7장 : 國際舞臺에서 의 協力</p>	<p>○ 『相對方의 이익』, 『全民族的 이익』 등의 概念이 모호하며 國際機構 單一議席 가입등 문제는 政治分科委員會에서 다룰 사항이 아님.</p>	<p>○ 南側(案)은 共同委에서 할 세부사항까지 밝히고 있으며 분열상태를 지속시키고 2개 國家를 확인 하자는 의도로, 모든 條約은 검토후 改正·廢棄 조치를 취해야 함.</p>

구 분	우 리 측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 제26조(해외공관 간 협조)중 『海外公館의 책임자』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 - 北側(案) 제29조(민족적 단합·이익에 배치되는 조약·협정의 개정·폐기)는 基本合意書 논의과정에서 북측이 철회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案) 제29조(해외 동포권익옹호)의 『和解와 團합을 고취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海外同胞가 스스로 할일 - 南側(案) 제26조 ③항 (국호영문표기)은 불필요 - 南側(案) 제28조(공동 협력사업 추진)는 交流·協力分科委員會의 소관 사항
제8장 : 履行機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비방·중상중지 實務協議會의 구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和解共同委가 성사될 수 없으며, 分科委員會가 필요한 實務協議會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協議會의 종류와 수는 共同委에서 다루어야 함.

< 合意事項 >

- 1章 『總則』을 제외한 각 『章』의 題目(2장 - 9장)
- 제4章(비방·중상중지) 제10條 :
남과 북은 상대방의 特定人에 대한 指名攻擊을 하지 아니한다
- 제9章(수정·발효) 제32條와 제33條 :
이 附屬合意書는 쌍방의 合意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다 (제32조)
이 附屬合意書는 雙方이 署名하여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제33조)

《 第6次 會議 第1次 委員接觸 : 1992. 7. 1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1장 : 總則(특수관 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적 機能을 갖는 政治 分科委에서 『特殊關係』를 다루어야 하며, 分斷現實의 克服을 위해 過渡期間 동안의 남북 기본관계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殊關係』는 이미 基本合意書 서문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附屬合意書에 또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며 내용도 분열지향적임.
제2장 : 體制 認定·尊重 제3조 : 管割權 尊重 제4조 (북측안 제1조) : 相互 體制 認定·尊重 제5조 : 國際的 地位 認定·尊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의 核心條項으로 管割權 인정·존중 없이는 체제를 認定·尊重할 수 없음. ○ 우리측은 思想의 『多元主義』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北側은 『唯一思想』인 여건하에서 相互性이 없음 ○ 유엔의 主權平等 原則은 남북간의 관계에서도 遵守되어야 하며 북측도 유엔에 加入한만큼 이 條項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개의 國家를 전제로 한 것이며 政府의 統一 論議 獨점 등 저의가 있음. ○ 『思想』은 『制度』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南側이 北側의 制度를 인정하는 조건에서는 『思想』도 인정해야 할 것임. ○ 두개의 國家를 상정한 것이므로 削除해야 함.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北側(案)제2조 : 法律的·制度的 裝置 除去</p> <p>北側(案)제3조 : 相對方을 紹介·讚揚 하는 言論· 出版·思想 의 자유</p> <p>제3장: 内部 問題 不干涉</p> <p>제6조(북측안 제4조): 相對方 法秩序 및 政府施策 不干涉</p> <p>제7조(북측안 제5조): 外交政策 不干涉</p>	<p>○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쌍방의 法律·制度問題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法律實務協議會에서 다룰 문제임.</p> <p>○ 言論·出版·思想의 자유가 쌍방에 모두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서는 성립될 수 없음.</p> <p>○ 상대방 『政府의』文句가 반드시 明記되어야 함.</p> <p>○ 『外交政策과 외교행위』로 구체화 하여야 함.</p>	<p>○ 상대방에 대한 體制認定·尊重과 이를 부정하는 法律的·制度的 장치는 相剋關係이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p> <p>○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가장 실질적 조치로서 『讚揚』까지 보장되어야 함.</p> <p>○ 『정부』표현은 분열주의적 임.</p> <p>○ 『對外關係』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며 북측(안) 제5조는 남측(안) 제7조, 제8조(제3국과의 관계) 중 分裂的 要素를 삭제한 포괄적 내용임.</p>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제3장: 内部 問題 不干涉</p> <p>北側(案)제6조 : 内部問題 不干涉의 例外</p> <p>北側(案)제7조 : 外勢의 内 政干涉에 不加擔</p> <p>제8조 : 第3國과의 關 係 不干涉</p>	<p>○ 恣意的으로 해석될 수 있 는 『和解精神』·『祖國 統一』등 애매한 개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内 部問題 不干涉』 해당조항 전체가 무실화될 우려</p> <p>○ 『外勢』, 『온갖 内政干 渉』의 意味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内部問題 不干涉』 章에 포함될 이 유가 없으며 北側(案)제17 조, 제27조와도 重複</p> <p>○ 和解의 實現은 현실인정· 존중의 바탕위에서 가능하 며, 제3國과의 관계 간섭 시 쌍방이 40여년간 外國 과 맺은 수많은 條約의 改 正·廢棄등 복잡한 문제 발생</p>	<p>○ 큰 基準은 7.4 共同聲明 의 統一3原則으로 統一 에 저해되는 것은 간섭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範圍와 內容은 共同委員會에서 추후 결 정</p> <p>○ 『外勢』는 『民族主體 세력에 배치되는 外部勢 力』이며 外勢의 『内政 干涉』에 가담하는 것도 상대방의 内部問題에 대 한 간섭이므로 이 章에 포함된 것은 당연</p> <p>○ 南北關係가 진정한 和解 의 관계로 발전하자면 對決과 反目時代의 遺物 제거가 필요</p>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4장 : 誹謗·中傷 中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互體制의 차이와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誹謗·中傷 행위의 主體·對象·手段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民主主義體制에서는 民營言論에 대한 규제는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營言論을 배제할 경우 誹謗·中傷 중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民族의 法』인 基本合意書에 배치되는 國內法은 당연히 개정 필요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4장: 誹謗·中傷 中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爲主體, 對象, 手段·方法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北側(案)중 『자극』, 『不信과 敵對感 고취』 (제10조), 『對決 鼓吹』 (제13조)등의 표현은 客觀性이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誹謗·中傷 中止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官·民營을 막론하고 모든 言論機關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수단·방법등 세부 實踐事項은 共同委에서 추후 규정
제5장: 破壞·顛覆 行爲 禁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破壞·顛覆行爲가 남북대결의 원천이므로 행위의 主體·手段·內容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 필요 - 北側案 제14조(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금지)의 『모든形態』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罪刑法定主義에 배치 - 北側案 제16조(외부세력의 행위불가담), 제17조(외부의 제재나 압력에 합세 금지)는 상대방의 外交行爲까지 規制하는 조항으로 우리측(안) 제20조(국제협약 이행·준수로써 對替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을 否定·敵對視하는 법을 두고 상대방에 대한 破壞顛覆行爲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具體化해서는 안되며 包括적으로 규정해야 함.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6장: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轉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協定』 締結當事者와 관련한 북측 주장은 南北和解推進의 主體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남북간에는 不可侵만하고 平和狀態로의 전환 문제는 論議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대한 결과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停戰協定의 준수는 締約當事者間의 문제로써 『平和協定』 또한 朝·美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南側은 단지 理解當事者로서 공동노력
제7장 : 國際舞臺에서의 協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에는 구체적 履行對策 포함 필요 - 北側(案) 제23조(대외활동 공동대처)중 『對外活動』의 개념이 불명확 - 北側(案) 제24조(국제기구에 단일의석 가입) :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유엔憲章이나 국제관례상 불가능 - 北側(案) 제27조(국제무대에서 상대방 이익침해 불가담), 제28조(조약·협정의 개정·폐기)는 絶對受容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共同委에서 추후 협의·결정 - 南側(案) 제26조(남북공관간 협의), 제27조(국제회의에서 상호협력), 제28조(국제기구가입 등 상호협력)는 共同委에서 다룰 내용 - 南側案 제29조(국제행사 공동참가)는 국제행사를 『非政治的 分野』로만 한정했으므로 부당 - 北側(案) 제28조(민족단합·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 개정·폐기)를 남측이 반대하면서 『朝·蘇條約』廢棄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

《 第6次 會議 第4次 委員接觸 : 1992. 8. 1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總 則	○ 必須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基本立場	○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니라고 규정한 基本合意書에 정면 위배
제 7조 : 外交政策·行爲 不干涉 (북측안 7조)	○ 『각기』는 삭제가능	○ 『對外關係(시책과 행위)』는 수용 가능
제 9조 : 誹謗·中傷 中止의 行爲 主體 (북측안 8조)	○ 『民營』을 포함시켰을 경우 실현이 어려우며, 『民營에 勸告한다』는 수용가능	○ 南側 憲法 제37조에 『국민의 權利에 대한 制限』이 규정
제14조 : 軍事分界線 일대 誹謗·中傷 中止	○ 既存施設은 화해도모 등에 활용하면서 誹謗·中傷 中止 방안 강구 필요	○ 誹謗·中傷이 아니더라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모든 行爲를 중지
제15조 : 誹謗·中傷 中止의 例外 條項(북측안 11조)	○ 『學問的 研究』는 규제가 곤란하며, 報道도 主觀이 개입	○ 『學問的 研究』는 거론 範圍가 넓고 깊으며 主觀的이므로 삭제필요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22조 : 停戰協定 代 替方案(북측 안18조)	○ 남측을 當事者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附屬合意書에 평 화협정문제 포함 無意味	○ 남측을 停戰協定の 當事 者로 인정할 수 없으므 로 『當事者解決 原則』 포기 필요
제32조 : 實務協議會 構成·運營 (북측안31조)	○ 法律實務協議會, 誹謗· 中傷中止 實務協議會 설치 는 總理간 合意事項이므로 명시 필요	○ 『법률』, 『비방·중상』 2개 實務協議會를 둔다 는 것을 記錄으로 남기 되, 附屬合意書에 明記 하는 것은 불필요

< 合意事項 >

○ 제21條 (북측 제19조) :

남과 북은 現 停戰狀態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성실히 履行·遵守한다

○ 제24條 (북측 제22조) :

남과 북은 國際機構와 國際會議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誹謗·中傷
을 하지 아니하며, 民族의 尊嚴을 지키기 위하여 緊密하게 協調한다

○ 제25條 (북측 제25조) :

남과 북은 民族共同의 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在外公館(재외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在外公館(재외대표부)사이에 필요한 協議를 진행한다

○ 제30條 (북측 제29조) :

남과 북은 海外同胞들의 민족적 權利와 利益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에 和解와 團合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努力한다

《 第7次 會議 : 1992. 8. 28,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p>○ 政治分科委員會 附屬合意書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基本性格을 북측이 恣意的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基本合意書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남북관계의 基本性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基本合意書는 분단된 남과 북의 두 政治實體間에 합의된 公式文書임. - 둘째, 基本合意書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南北關係는 두 政治實體間에 형성되는 『特殊關係』임. - 셋째, 『特殊關係』는 『特殊關係』가 지속되는 동안 두 政治實體가 平和的으로 공존하는 관계임. <p>○ 附屬合意書 작성에 임하는 북측의 會談態度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p>	<p>○ 제8차 高位級會談 이전에 附屬合意書 작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遵守하여야 할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후 附屬合意書 修正(案)과 『和解共同委 구성·운영에 관한 合意書 (草案)』을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제8차 高位級會談 이전에 반드시 附屬合意書를 작성하고 和解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함. - 둘째, 기본합의서 精神에 저촉되는 反統一的이며 分裂指向的인 주장을 철회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體認定論』에 기초하여 분열상태를 고착시키는 總則 철회 · 和解와 統一에 저촉되는 法的·制度的 裝置의 폐기를 附屬合意書 안에 명기 · 誹謗·中傷行爲의 규제대상에 民營 言論機關 포함 - 셋째, 附屬合意書 작성에서 事大主義的이며 外勢依存的인 내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존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會談外的인 문제들을 끌어들이므로써 會議의 효율적 진전을 妨害하지 말아야 함. - 附屬合意書는 반드시 『具體的 履行對策』이 담겨야 하는 만큼 『包括的』, 『宣言的』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됨. ○ 우리측은 정해진 期限內에 未合意 조항을 타결하고 和解共同委員會를 발족시키기 위한 對策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委員長接觸과 委員接觸을 토대로 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을 새로이 제시 - 둘째, 쌍방 附屬合意書(案)중 基本合意書 토의시 서로 철회했던 내용은 동시에 削除하거나 撤回할 것을 提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 7개항, 우리측(안) 1개항 - 셋째, 쌍방이 제시한 (案)을 토대로 금일 會議에서 和解共同委員會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해결할 것을 提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과 和解를 막는 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協定 當事者는 북한과 美國으로 南北當事者 해결원칙 철회 · 외세의존 정책의 產物인 『포커스텐즈』軍事演習 中止 - 넷째, 基本合意書를 최고의 지위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服從시켜야 함.

우 리 측	北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의 基本性格에 대해 쌍방간에 見解差異가 있는만큼 이를 調和시켜야 附屬合意書 採擇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3개분야 附屬合意書를 一括妥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측도 같은 입장이나 分科委別로 일단 合意된 내용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研究·解決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 ○ 附屬合意書 조항중 雙方이 근본적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한 解決方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則 : 아래와 같은 우리측 4개 조가 관철되고 북측 6개조가 削除되면 철회 검토 · 우리측 第3條(관할권 인정·존중), 第4條(체제인정·존중), 第6條(법질서 및 정부시책 불간섭), 第7條(대외관계 불간섭) · 북측 第1條(체제인정·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殊關係』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分裂固着的이라고 비난하고 남측 附屬合意書(案)의 『毒素條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측의 基本立場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分科委에서 附屬合意書를 채택하지 못하면 軍事, 交流·協力 分科委의 附屬合意書도 채택할 수 없음. - 政治分科委에서 附屬合意書가 타결되지 않으면 和解共同委의 발족은 無意味함. ○ 우리측 折衷(案)에 대해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 第2條(법적·제도적 장치철폐), 第8條(비방·증상중지 행위주체), 第17條(평화협정으로 전환 공동대책 강구), 第20條(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체)와 관련된 南側 折衷案과 第1條중 『思想』을 削除하는 문제를 檢討해 보겠음.

우 리 측	北 측
<p>중『思想』, 第6條(내부문제 불간섭 예외조항), 第17條(평화협정으로 전환 공동대책기구), 第20條(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주체), 第23條(국제기구 단일의석 가입), 제27條(타국과의 조약 개정·폐기)</p> <p>- 法的·制度的 장치철폐 : 折衷(案)제시(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南北和解共同委員會의 法律實務協議會에서 상대방의 法制를 상호비교·연구하여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합의내용에 저촉되는 法令과 制度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整備·改善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p>- 誹謗·中傷中止 행위주체 : 折衷(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언론 및 그밖의 다른 手段과 方法을 통하여 상대방을 誹謗·中傷하지 아니한다』 * 우리측(案) 제9조(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와 	<p>- 第6條는 뺄 경우 『内部問題 不干涉』에 대한 합의가 無意味해지며, 第23條는 『單一議席으로 加入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고, 第27條는 반드시 필요함.</p> <p>- 2개 國家를 의미하는 『政府』, 『管轄權』, 『政策』, 『外交』, 『領域』등은 남측이 이전에 철회한 것으로서 受容할 수 없음.</p>

우 리 側	北 側
<p>제13조 (비방·중상수단·방법)을 통합</p> <p>- 停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전환 : 折衷(案) 제시</p> <p>· 『남과 북은 現 停戰狀態를 남북사이의 公高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方案을 講究한다』</p> <p>* 北側(案) 제17조와 제20조를 통합하여 우리측 절충(안) 수용 촉구</p>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主要爭點과 관련하여 지난 委員長接觸(9.4)시 제시했던 折衷(案) 내용을 상기시킨 후 나머지 未合意 조항들에 대해 折衷案(9개조항)제시 ○ 우리측(안) 第16條(비방·증상증지 예외조항), 第19條(파괴·전복목적 단체 결성등 금지), 第23條(군사정전협정 준수위한 조치)는 반드시 固守할 것이며, 北側案 第7條(외세 내정간섭 불가담), 第16條(파괴·전복 외부세력에 불가담), 제26條(상대방 이익침해 행위 불가담)는 同語反復으로서 삭제되어야 함을 강조 ○ 『總則』章의 철회가 前提되어야만 여타 조항의 實質討議가 가능하다는 북측 主張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案) 4個條項(3조, 4조, 6조, 7조)이 관철되고, 北側(案) 6個條項(1조, 6조, 17조, 20조, 23조, 27조)이 削除될 경우 『總則』章의 철회를 고려할 수 있음을 거듭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則』章의 철회가 前提되지 않는 한 더이상의 討議는 無意味하다고 주장하면서 『總則』章의 철회를 전제로 주요 條項別로 북측의 提示 * 북측은 非本質的인 一部條項의 문안을 조정한 折衷(案)을 제시한 채 우리측 『總則』이 철회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討議가 무의미하며 附屬合意書 채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實質 討議를 거부

우 리 側	北 側
<p>* 북측이 『總則』章의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討議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主張함에 따라 제8차 高位級會談時 附屬合意書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함.</p>	

3. 南北軍事分科委員會

南北軍事分科委員會

- 제1차會議(1992. 3.13, 板門店 『統一閣』)
- 제2차會議(1992. 3.31, 板門店 『平和의 집』)
- 제3차會議(1992. 4.30, 板門店 『統一閣』)
- 제4차會議(1992. 5.25, 板門店 『平和의 집』)
- 제5차會議(1992. 6.19, 板門店 『統一閣』)
- 제6차會議(1992. 7.16, 板門店 『平和의 집』)
 - △ 제6차會議 委員長接觸(1992. 7.23, 板門店 『統一閣』)
 - △ 제6차會議 제1차 委員接觸(1992. 8. 3,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제6차會議 제2차 委員接觸(1992. 8.1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제6차會議 제3차 委員接觸(1992. 8.2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7차會議(1992. 8.26, 板門店 『平和의 집』)
- 제8차會議(1992. 9. 5, 板門店 『統一閣』)

《 第1次會議：1992. 3. 13, 板門店『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調發言을 통해 먼저 協議過程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3가지 원칙을 提示 - 當事者 解決의 原則： 남북간 모든 문제는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南北當事者가 해결 - 均衡推進의 原則：特定分野를 우선시 하거나 『一括合意 同時實踐』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배제 - 實踐性 保障의 原則：宣言的·抽象的 내용 나열방식은 지양하고 實踐方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明示 ○ 軍事分科委에서 協議·解決해야 할 『基本合意書』남북불가침분야의 구체적 對策에 관한 우리측 입장 표명 - 不可侵 分野(제9조-제14조)의 구체적 履行對策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작성하도록 되어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발언을 통해 南北軍事分科委員會會議에 임하는 쌍방 代表들이 지켜야 할 姿勢와 입장표명 - 나라의 平和와 자주적 統一을 위하여 外勢依存을 배격하고 민족의 意思와 利益에 맞게 자주적 입장을 堅持해야 함. - 남북사이에 相互不可侵을 합의한 조건에서 남은 對決觀念에서 脫피해야 함. - 軍事的 對峙狀態를 해소하려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함. ○ 『基本合意書』제2장 南北不可侵의 履行과 관련하여 軍事分科委員會가 해결해야 할 課題로 2개의 合意書(案)을 提示 < 北南不可侵의 履行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案) >

우 리 側	北 側
<p>는 附屬合意書는 討議結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宣言的合意書나 個別合意 또는 즉각 실천을 가로막는 前提條件이 되어서는 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的 對峙狀態를 고려, 쌍방 接境地域에서 우발적인 武力衝突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緊急事態가 發生할 경우 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對策들을 講究해야 함. - 軍事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軍事的 信賴構築을 실천하기 위한 合意文件들을 만들어 실천에 옮김과 동시에 大量殺傷武器와 攻擊能力 제거문제, 단계적 軍備縮小問題, 檢證問題 등을 협의·실천함으로써 不可侵의 遵守와 履行을 보장토록 해야 함. - 交流·協力分科委員會 등 다른 分科委員會에서의 합의사항 실천에 따르는 軍事的인 조치사항이 있을경우 이를 協議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제3조 : 『基本合意書』 제9조-제11조와 동일 - 제4조 : 軍事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 관련 - 제5조 : 軍事當局者 直通電話 설치운영(부속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설치, 國防部長官과 人民武力部長사이에 설치, 쌍방 軍事當局者들이 電話文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운영) <p>< 北南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長 1명, 副委員長 1명, 委員 5명으로 구성 - 委員長은 總參謀長(부부장)급 - 軍事共同委員會 운영은 연 3회 정도로 定例化 - 軍事共同委員會안에 實務協議會를 구성·운영

우 리 측	北 側
<p>○ 『南北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과 『南北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에 관한 合意書(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p> <p>〈 南北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委員長·副委員長 포함 7명, 隨行員 15명 - 機能 : 『기본합의서』제12조의 細部事項 협의·추진 - 運營: 월1회 개최(판문점, 서울·평양 등) - 發效 : 쌍방 總理가 합의문건에 署名한 날부터 發效 <p>〈 南北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目的 : 『基本合意書』제13조에 따라 우발적인 武力衝突 및 擴大防止 - 設置 : 國防部長官과 人民武力部長 사이에 전신타자기 2회선, 모사전송기 2회선, 전화기 2회선 	<p>○ 우리측이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문제를 우선 협의·해결할 것을 要求한데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에 設置時限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合意書 精神과 順理에 위배되며 - 우리측이 제시한 『均衡原則』과도 맞지 않는 自家撞着的인 주장이라고 언급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運營 : 24시간 운용, 매 6시간 마다 通信網 점검 - 實務協議 : 합의서 發效後 2주 일 이내 각기 5명 의 通信實務者間 회의개최 - 經費 : 자기측 지역 裝備·設 備 및 所要經費 각기 부담 - 通話開始 : 合意書 발효후 50 일 이내 <p>○ 한편 북측이 조속히 核査察實施 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南北基 本合意書』 및 『非核化共同宣 言』에 대한 實踐意志를 보여 줄 것을 촉구</p>	<p>○ 우리측이 基調發言에서 韓半島의 核問題 해결 노력을 促求한데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内部를 교란시키고 『제2의 南侵威脅』을 조장하여 美軍이 남조선을 계속 強占케 하려는 것 으로 - 좋게 발전되고 있는 南北關係의 진전을 妨害하려는 意圖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비난

《 第2次會議：1992. 3. 31,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p>○ 제1차 會議에서 쌍방이 意見을 달리한 부분에 대한 견해 提示</p> <p>- 附屬合意書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性格：원칙적, 指針的이기 보다는 구체적, 실천적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합의하여 發效시키는 대로 실천 · 作成方法：履行對策의 협의 결과 合意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각각 필요한 附屬合意書를 작성,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緩急을 가려 順次的, 逐次的으로 합의 · 作成時限：附屬合意書 작성에 時限性부여는 불필요 <p>- 南北軍事共同委員會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공동위원회는 協議機構인 동시에 實踐機構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南北高位級會談 	<p>○ 不可侵에 관한 合意事項 이행과 軍事分科委 會議運營 과정에서 雙方이 지켜야 할 원칙적 입장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민족의 念願에 맞게 南北合意書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올바른 姿勢와 입장을 가져야 함. - 둘째, 平和意志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화문제를 解決하기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셋째, 낡은 對決觀念에서 탈피해야 함. <p>○ 基本問題 토의와 相關한 북측의 見解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不可侵에 관한 부속합의서 草案부터 條項別로 토의하여야 함. - 둘째, 1차 會議時 雙方意見이 접근되어 있는 『軍事共同委 構成·運營合意書』를 토의해야 함. - 셋째, 軍事當局者간 直通電話 설

우 리 側	北 側
<p>테두리내의 機構임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分科委員會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일들의 優先順位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표명 - 첫째, 南北基本合意書 發效후 3개월 이내에 構成·運營하기로 合意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期限内에 발족 - 둘째, 우발적 武力衝突 방지를 위한 시급한 실천조치로서 南北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 - 셋째, 不可侵分野의 여타 合意事項은 조속한 時日內에 逐次的으로 부속합의서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 不可侵分野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과제(7가지)를 제시 ○ 우리측은 基本合意書에 時限이 명시되어 있는 軍事共同委와 實現이 용이한 直通電話문제를 우 	<p>치문제는 불가침부문의 條項順序에 따라 直通電話 設置運營 條項토의시 협의·해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基調發言에 대해 『軍事分科委員會와 7차 高位級會談의 前途를 생각하지 않은』내용이라고 비난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 - 『附屬合意書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은 『遲延戰術』임. - 不可侵履行을 보장하는 合意書의 채택이 중요하므로 『附屬合意書의 數』는 관계가 없음. - 『附屬合意書 作成時限』은 군사공동위의 發足時限이 5.19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附屬合意書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함. ○ 1차회의시 會議運營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제시했던 세가지 原則에 대해 北側의 의견표명

우 리 측	北 側
<p>선 토의한 후 課題別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合理的임을 강조하고, 북측이 附屬合意書 채택을 토의진행의 前提條件化한데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이 제시한 附屬合意書는 구체적인 對策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장해온 내용들을 條項別로 묶어 놓은데 불과한 것으로 - 不可侵分野의 討議는 『武力使用』, 『武力衝突』등에 대한 用語定義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短期間內에 타결될수 없음을 지적 <p>○ 또한 우리측은 7차 高位級會談이 1개월정도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문제만으로 회의를 空轉시킬것이 아니라 쌍방 總理가 서명하고 최고당국자가 裁可한 사항인 『軍事共同委 構成·運營』문제와 『直通電話 設置·運營』문제 등 실질토의를 위해 委員接觸을 가질것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當事者 解決原則 : 이 原則이 朝鮮半島 統一問題 해결에 있어 책임이 있는 美·日에게 할 말을 못하게 하거나 民衆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됨. - 均衡推進의 原則 : 中核的 문제를 회피하거나 制動을 거는 것이라면 반대함. - 實踐性 保障原則: 『先 信賴構築』이나 示範事業등 부차적문제 우선 해결에 적용한다면 受諾할 수 없음. <p>○ 實質討議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은 남측이 附屬合意書를 준비하지 않고, 北側案을 中心으로 토의하자는 데에도 호응하지 않는데 있다고 비난하고,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委員接觸이 가능하다고 언급</p>

《 第3次 會議 : 1992. 4. 30,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分科委가 不可侵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對策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原則과 관련하여 우리측 입장을 제1차 會議時 제시한 세가지 原則을 中心으로 언급 - 當事者 解決原則 : 남북간 軍事問題는 남과 북이 직접 當事者가 되고 當局間에 해결 - 均衡推進 原則 : 정치적 和解와 交流·協力을 통한 相互信賴의 축적없이 군사문제의 實質的 해결은 곤란 - 實踐性 保障原則: 『實踐意志』의 宣言이 아닌 行動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 ○ 軍事分科委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課題에 대한 우리측 입장제시 - 軍事共同委 構成·運營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작성을 구실로 軍事共同委 구성문제 협의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分科委 會議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서 提起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提示 - 첫째, 北南合意書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意志를 가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討議의 기초가 되는 附屬合意書를 제시하지 않은것은 不可侵履行에 관심이 없으며 그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意圖的 행동 - 둘째, 平和問題를 실제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의지를 가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運營 合意書나, 『協議課題』제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신한 大規模 軍事演習 실시등은 不可侵의 이행과 軍縮을 미루려는 입장 - 셋째, 外勢依存的인 자세와 입장을 버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勢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不可侵 이행불가, 戰爭不可避

우 리 側	北 側
<p>遲延시키는 행위는 남북간 合意에 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공동위에 附屬合意書를 통한 추가적 任務를 부여하는 문제는 별도의 검토와 협의필요 <p>- 附屬合意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합의서 性格에 대한 근본적인 異見이 존재 <p>우리측 : 不可侵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對策을 협의한 결과에 따라 附屬合意書로 작성</p> <p>북측 : 不可侵分野의 매개 條項別 실천대책을 옮겨 담는 원칙하에 附屬合意書를 작성</p> <p>○ 『남북사이의 不可侵 履行과 遵守를 위한 武力不使用 및 우발적 武力衝突防止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p> <p>〈 合意書(案) 內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武力使用』, 『侵略』, 『偶 	<p>○ 우리측 附屬合意書(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侵略』을 막기 위한 豫防措置보다는 事後處理로 일관되어 있음. - 실천적 사항이 너무 細分化되어 있으면서, 基本合意書 제11조(불가침의 경계)의 내용이 누락되어 일관성이 없음. - 불가침을 근본적으로 保障하지 못하고 副次的인 문제만 保障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었음.

우 리 側	北 側
<p>發的 武力衝突』, 『偶發的 侵犯』등 용어의 정의(제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武力不使用, 不可侵, 偶發的 武力衝突 및 偶發的 侵犯發生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제2조) · 우발적 武力衝突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제3조) · 어느 일방의 野砲, 미사일 또는 로케트가 過失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相對方 首都圈으로 발사되어 쌍방간 전면적인 武力衝突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조치(제4조) · 偶發的 侵犯發生時 무력충돌이 發生·擴大되지 않도록 필요조치(제5조) · 일방의 航空機, 船舶, 人員의 緊急待避 허용과 구조를 위한 필요조치(제6조) · 우발적 侵犯이나 우발적 무력충돌발생시 이의 擴大防止 및 조속한 해결조치(제7조) · 本 合意書 위반사건 관련 조 사실시 및 處罰責任(제8조, 9조) · 本 합의서는 자기측 管割區域을 침범한 상대방 인원과 車輛, 船舶, 艦艇, 航空機에 대 	

우 리 側	北 側
<p>한 臨檢, 拘引, 拿捕의 권리와 국제법상 인정된 관할구역 밖으로의 繼續追跡權 제한금지(제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合意書는 國際聯合憲章의 규정과 남북이 각기 체결한 條約, 또는 國際協定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제11조) · 不可侵에 관한 合意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對決狀態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는 軍事分科委에서 구체적 대책 協議·解決(제12조) 	

* 쌍방은 『先 共同委問題 討議, 後 附屬合意書 討議』에 合意하고 각기 제시한 『軍事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내용에 대해 條項別로 토의를 진행

《 第4次 會議 : 1992. 5. 25,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측	北 측
<p>○ 제7차 高位級會談에서의 合意에 따라 9.1까지 작성하기로 한 附屬合意書와 관련하여 우리측 입장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를 履行·遵守하는데 구체적 대책을 담아야 하는 附屬合意書의 屬性上,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에 있어 별도로 副次的인 규정이나 우선적인 措置가 요망되는 事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쌍방이 직면하고 있는 軍事的 現實狀況을 토대로 公平성과 시행의 容易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行動指針을 담도록 해야함. 	<p>○ 제3차 會議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附屬合意書(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形式과 内容面에서 南北基本合意書 불가침 분야의 條文을 무시하고 있음. - 不可侵 이행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輕視하고, 남북사이의 衝突을 전제로 하여 分열을 合法化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음. <p>○ 附屬合意書 作成問題와 관련, 다음과 같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形式面에서는 기본합의서 『제2장 南北不可侵』의 모든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單一하게 만들어야 하며 - 内容面에서는 불가침 이행·준수를 위해 내용을 명백히 규정해야 하되, 앞으로 共同委가 작성하게 될 施行細則이나 細部合意書와도 구별되어야 함.

우 리 측	北 側
<p>○ 제1차 會議에서 北側에 제시한 『南北軍事當局者 사이의 直通電話 設置·運營 合意書(案)』을 제3차 회의시의 『남북사이의 不可侵 履行과 遵守를 위한 武力不 使用 및 偶發的 武力衝突 방지에 관한 合意書(案)』에 포함시켜 單一化한 수정(안)을 北側에 提示</p> <p>- 제1장(총칙) : 불가침 관련 用語를 명확하게 定義, 그 정의된 내용을 준수토록 규정</p> <p>- 제2장(우발적 무력충돌의방지): 우발적 武力衝突의 사전 예방 조치 규정</p> <p>- 제3장(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 방지): 偶發的 침범발생시 무력충돌이 發生·擴大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규정</p> <p>- 제4장(긴급 및 사후조치) :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이의 擴大防止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급히 조치할 共同危機 管理事項과 事後措置 사항 규정</p>	<p>○ 附屬合意書 修正(案) 제시</p> <p>- 제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측 지역으로 드나드는 제 3국의 인원, 船舶, 艦船, 飛行機를 공격하거나 그 進路를 방해하는 행위금지』를 ⑤항에 삽입 <p>-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然災害나 航路迷失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할구역 침범시 상대측에 緊急確認後 귀환조치』條項을 신설(②항) · 『雙方 합의위반시 調查進行 및 再發防止 대책강구』條項을 신설(④항) <p>-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통전화 設置, 運營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合意書 發效後 쌍방 通信實務者 接觸에서 협의·해결』條項을 신설(④항) <p>○ 우리측의 單一附屬合意書(案)에 대해서는 진전된 것이라고 評價하는 한편 名稱, 構成體系, 內容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와 입장</p>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장(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 南北基本合意書 제13조에 따른 원칙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設置·運營에 관한 세부사항을 提示 - 제6장(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 :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와 관련, 불가침의 履行·遵守 및 軍事的 대결상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追加的인 문제들에 대해 軍事分科委가 계속 협의·해결할 것을 명시 - 제7장(수정 및 발효) : 雙方合意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으며, 署名後 발효절차를 거쳐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 ○ 지난 5.22 북측 武裝兵力이 우리 측 지역에 浸透하여 敵對行爲를 한 사건과 관련, - 南北基本合意書 제5조(군사정전협정준수)와 제9조(무력불사용 및 불가침)에 근본적으로 違背되는 행위임을 지적, 遺憾을 표명하고 	<p>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名稱 : 不可侵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어느 한 분야만을 취급 - 構成體系 : 불가침 部分의 條項別로 구체적으로 條文化 되어있지 않고 뒤섞여 복잡하게 구성 - 內容 : 분쟁의 평화적 해결, 境界線 준수등 불가침 基本條項의 이행대책을 소홀시하고 불필요하며 意味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合意書가 國際條約보다 우위에 놓여야 하나 關係設定이 잘못되어 주체성 결여 ○ 『5.22 북측 武裝兵力浸透』와 관련, 『자기측 무장세력이 政府와 黨의 統一政策에 위배되는 이런 행동을 할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 事件은 軍事分科委員會 會談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일 南北軍事分科委에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하였음.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함께 北側이 事件再發 防止를 위한 적절한 措置를 취할 것과 軍事停戰委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 우리측 附屬合意書에 대한 북측의 견해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附屬合意書의 核心的 특징이 相互主義와 普遍性에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不可侵 分野의 구체적 이행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 상호불신, 軍事的 對峙狀態, 武力衝突 가능성 등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중 武力衝突을 방지하기 위한 對策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 우리측(안)이 武力使用 방지, 平和保障이란 附屬合意書의 목적에 부합될 뿐 아니라 북측의 主張을 받아들여 修正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주체성이 결여되었다』고 是非하는 것은 南北關係가 국제사회의 테두리내에서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는 前提를 무시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 第5次會議：1992. 6.19, 板門店『統一閣』 》

우 리 측	北 側
<p>○ 우리측은 먼저 軍事分科委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協議를 진행하기 위해 武裝兵力浸透挑發事件(5.22)의 진상규명을 위한 軍事停戰委員會의 조속한 개최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고, 國際原子力 機構의 북측 核施設 查察結果에 따른 내외의 의혹을 해소시키는데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p> <p>- 武裝浸透事件을 否認·默殺하지 말고 그 真相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現實的이고 올바른 자세임.</p> <p>- IAEA 查察結果 북한 核疑感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p> <p>○ 제4차 會議時 北側이 제시한 부속합의서 修正案에 대해 다음과 같은 見解를 제시</p> <p>- 名稱：포괄적인 單一附屬合意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名稱에</p>	<p>○ 우리측이 基調發言 서두에서 북측의 무장침투 사건과 核問題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p> <p>- 武裝浸透事件은 북측의 政策的 要求와 관계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停戰當事者인 美國으로부터 停戰委 소집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p> <p>- 우리측이 美國의 核騷動에 외세 의존적·사대적 추종을 하지 말아야 하며, 核統制共同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履行合意書 採擇에 성의가 없고 查察對象에 미국의 核武器·核基地를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p> <p>○ 제4차 회의시 우리측이 제시한 修正(案)에 대하여, 하나의 包括的인 附屬合意書를 제시한 것은 일보 진전한 것이라고 評價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p>

우 리 側	北 側
<p>불과하고 基本合意書의 구체적 대책을 담아야 하는 附屬合意書의 基本性格에 맞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體系 : 기본합의서 매 條項을 반복하여 기술하고 몇개의 세항만을 첨가함으로써 기본합의서의 適用範圍를 구속 - 條項別 內容 : 宣言的·原則的인 내용을 각 조항별로 敷衍하고 있는 수준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實踐意志가 의심됨. <p>○ 附屬合意書(案)의 名稱·構成體系·주요내용 취지 등에 관해 우리측의 입장표명</p> <p>< 名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의 精神과 부속합의서의 성격에 맞게 『南北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라는 내용과 불가침 이행·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武力不使用과 偶發的 武力衝突防止』대책을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시키 	<p>고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不可侵 履行에 대한 본질적 대책을 회피하거나 명백하게 담지 못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用語定義』와 偶發的 武力衝突 방지와 관련한 대책들만 나열 - 둘째, 불가침의 履行對策을 민족주체성의 견지에서 세워나가려는 意志가 결여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法과 제3국과의 관계를 絶對化하는 것과 같은 외세의존적이며 事大主義的인 입장고수 - 셋째, 構成體系와 內容展開가 매우 복잡하고 산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제2장 南北不可侵部門의 본래 條項들과는 관계없이 모두 형클어져 있으며 지나치게 一般化·細部化 <p>○ 지난 제4차 會議時 제시한 附屬合意書에 『章』제목을 달고 條項配列을 조정한 修正(案) 제시</p>

우 리 측	北 측
<p>는 것이 바람직함.</p> <p>< 構成體系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 條文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술하지 않으면서도 각 條文別 및 條文間 불가침정신도 충실히 具現할 수 있도록 總 7개장 22개조로 구성 <p>< 主要内容 趣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用語定義(제1장 제1조) : 不可侵 관련 제반 조치사항들의 協議·推進에 필요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위해서 필요함 - 관련 國際法 및 國際協約과의 관계(제1장 제3조)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강조하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武力使用 및 侵略行爲를 억제하는 국제적 保障裝置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긴급대피 및 구조업무의 소관(제3장 제7조) 	<p>< 修正案 構成體系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무력불사용) : 제1조-제6조 - 제2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조-제11조 - 제3장(불가침 경계선) : 제12조- 제15조 - 제4장(북남군사공동위원회): 제16조 - 제5장(군사직통전화의설치·운영) : 제17조-제20조 - 제6장(수정및 발효): 제21조-제22조

우 리 側	北 側
<p>: 赤十字社는 구조를 위한 實踐機 構이기는 하나 긴급대피나 구 조의 허용은 쌍방 當局의 권 한과 책임에 속함.</p> <p>- 繼續追跡權(제3장 제8조) : 국제법에 따른 雙方의 管割區 域 밖에서의 계속추적권을 의 미하며, 고의적인 不法活動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p> <p>- 南北軍事直通電話 設置·運營 (제5장) : 우발적 武力衝突의 예방과그 확대를 防止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p> <p>- 追加的인 不可侵의 履行·遵守 事項(제6장 제20조) :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불가침 履行·遵守 관련 사항 에 대해서는 軍事分科委를 통 해 구체적인 對策을 협의·해 결</p> <p>○ 북측의 主張에 대해</p>	<p>○ 우리측의 附屬合意書(案)과 관련하여</p>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可侵 문제의 論議를 위해서는 우발적 武力衝突防止 문제에 대한 검토가 前提되어야 하며, 상호 信賴構築이 선행된다면 軍縮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고 - 附屬合意書는 基本合意書에 제시된 문제를 履行·解決하는 구체적 대책을 담아야 하며, 基本合意書의 조항별 解說書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軍事的 對峙現實을 인정하면서도 不可侵問題를 輕重緩急에 따라 順次的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현실도피적인 자세이며, - 『實踐性』이란 直通電話設置 같은 合意가 용이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對策을 樹立·實踐하는 것을 뜻하며 - 不可侵의 이행대책을 軍事共同委·停戰委·分科委 등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恣意的 해석으로, 기본합의서에 충실하게 不可侵 履行·遵守·擔保는 軍事共同委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 第6次會議 : 1992. 7. 16,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측	北 측
<p>○ 附屬合意書 작성과 관련, 쌍방의 입장과 見解差異를 좁히기 위해서는 南北基本合意書 不可侵分野에 명시된 대로 戰爭을 하려는 政治的 意志의 포기(제9조, 제10조, 제12조), 軍事力의 규제(제12조), 우발적인 전쟁의 可能性除去(제9조, 제10조, 제13조)등 세가지 側面의 戰爭豫防 措置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p> <p>○ 제5차 會議時 북측이 제시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에 대한 우리측의 견해를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무력불사용) : 기본합의서의 指針에 위배되거나 戰爭豫防의 근본취지에 어긋남. - 제2장(분쟁의 평화적해결) : 紛爭의 예방적 조치와 분쟁발생시 事後措置인 평화적 해결 문제가 區分되지않아 形式的· 宣言的 수준의 내용에 불과함 	<p>○ 첫 발언을 통해 남측은 附屬合意書 (案)작성에 있어 不誠實한 입장을 보여왔을 뿐 아니라 會議場 밖에서 남북관계를 격화시킴으로써 부속합의서 討議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不可侵部門의 조항들을 恣意的으로 해석하고 일부 조항들의 履行對策을 외면하려는 불순한 태도를 보여왔음. - 외세의존적 입장에서 미국측의 요구에 순응하여 韓·美聯合『포커스렌즈』訓練과『제2의 核騷動』등을 벌리며 附屬合意書 작성을 의도적으로 遲延시켜 왔음. - 軍事問題, 不可侵 問題를 풀어가는데 『유엔憲章』이나 다른나라와 맺은 條約과 協定을 끌어다 붙일 하등의 필요가 없음. <p>○ 불가침에 관한 附屬合意書 作成에 대한 원칙적 견해 제시</p>

우 리 측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불가침 경계선) : 軍事共同委가 불가침경계선 보장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保障』의 개념부터가 막연함. - 제4장(군사공동위원회) : 이미 별도의 合意書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附屬合意書에 또다시 규정할 이 유가 없음. - 제5장(군사직통전화설치·운영) : 현재 南北間에 사용되고 있는 『電話通知文』 교환방식이 아니라 신속·正確性이 보장된 通信手段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附屬合意書의 명칭·前文·『章』 제목 등 구성체계와 내용을 새로이 조정한 修正案(6개장 24개조)을 提示 - 名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不可侵에 관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합의서는 不可侵 부분의 모든 조항의 履行對策을 담은 包括的인 單一合意書로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案)은 『附隨的 규정』이 나 『우선적 措置事項』을 담은 것에 불과 - 附屬合意書는 불가침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對策들로 일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案)은 偶發的 武力衝突 防止를 위한 合의서 - 附屬合意書는 合意하기 쉽게 공정하게 만들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案)은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분 條項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細部化·具體化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과 北은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제2장에 규정한 不可侵에 관한 合意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 제1장(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제1조-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武力衝突을 야기시킬 위험한 軍事行爲 금지와 우발적 침범 시 武力衝突의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로 구분 - 제2장(분쟁의 평화적해결) : 제9조 -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 제10조의 基本精神에 입각, 쌍방간에 취해야 할 緊急 및 사후조치 規定 - 제3장(불가침 경계선및 구역) : 제12조 -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제11조만으로 충분하나 地上不可侵 境界線과 海上不可侵 區域을 구분하여 조문화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 제14조-제21조 · 偶發的 무력충돌의 발생이나 이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通信手段을 보장 - 제5장(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 : 제22조 · 추가적인 不可侵 履行·遵守 문제 뿐 아니라 軍事的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해 軍事分科委가 필요한 대책을 講究하도록 규정 - 제6장(수정 및 발효) : 제23조 - 제24조 	

< 合意事項 >

○ 名稱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前文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2장 南北不可侵』의 履行과 遵守 및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 『章』 題目

- 제2장 : 紛爭의 平和的 解決
- 제3장 : 不可侵 境界線 및 區域
- 제4장 : 軍事直通電話의 設置·運營
- 제6장 : 修正 및 發效

《 第6次 會議 委員長 接觸 : 1992. 7.23,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발언을 통해 쌍방의 附屬合意書(案)이 形式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으나 附屬合意書의 내용에 있어서는 見解差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 合意事項의 實踐意志를 서로 의심하고 있는 南北關係의 현실에 대해 북측의 認識이 미흡함. - 북측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規律하고 있는 政府當局의 權限責任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음. - 相互不信과 군사적 對決狀態가 유지된 상태에서 不可侵을 약속한 만큼 쌍방은 그 實踐意志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발언 形式을 통해 附屬合意書(案) 내용 討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堅持해야 할 원칙을 제시 - 基本合意書등 이미 이룩한 合意事項에 충실 - 不可侵 이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모두 附屬合意書에 포함 - 南北關係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 민족공동의 利益에 맞게 부속합의서를 작성 - 附屬合意書 문제토의에 있어 서로 讓步하는 원칙준수

〈 雙方 主要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제1장: 武力不使	○ 不可侵을 確固히 하기 위해	○ 基本合意書 제9조의

區 分	우 리 側	北 側
用 및 偶發的 武力衝突防止의 章 제목	서는 意圖的 침략행위 뿐 아니라 우발적 武力衝突에 관해서도 明記할것을 주장 단, 『偶發的 武力衝突防止』부분을 별도의 『章』으로 분리가능 示唆	내용을 함축하여 『武力不使用』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偶發的 武力衝突防止』의 해당 내용은 제2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제2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	○ 北側(案)의 제10조(분쟁 문제의 군사공동위 협의·해결)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별도의 機構에서 논의할 경우도 있어 이의 修正을 요구	○ 北側(案)의 제7조-제11조에 관하여 그 내용이 우리측안의 제1장·제2장에 걸쳐 있으며, 文案整理時 절충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
제3장: 不可侵 境界線 및 區域	○ 北側案 제15조(불가침 경계선 담보대책 군사공동위 협의·추진)관련 不可侵 境界線 문제는 40년동안 유지되어온 관행이 중요하며, 軍事共同委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 표명	○ 북측안 제15조는 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인 軍事共同委의 기능상 반드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주장
제4장: 南北軍事 共同委	○ 軍事共同委는 基本合意書 제12조의 이행 및 保障機構로서, 이를 불가침 전반에 관한 包括的인 履行機構라	○ 남북간에 合意된 불가침 이행·준수 문제를 軍事共同委 이외의 機構에서 다루는 것은 合意書 위

區 分	우 리 側	北 側
	고 주장하는 것은 基本合 意書 제5조, 제12조, 제14 조에 위배됨을 지적	반이라고 주장하면서 軍 事共同委의 별도 『章』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
제5장: 追加的인 不可侵의 履行· 遵守	○ 쌍방이 附屬合意書 채택이 후에도 협의할 문제가 생 기면 추가적인 附屬合意書 를 작성하는데에 合意한 바 있음을 지적	○ 제5장을 별도로 設定하 는데 반대하지는 않으나 分科委 構成·運營합의 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 용을 다시 규정할 필요 가 없으며, 履行機構 문 제를 논의할 때 協議 가 능할 것이라고 언급

《 第6次 會議 第1次 委員接觸 : 1992. 8. 3,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북측이 軍事分科委 委員接觸에서 까지 또다시 『核問題』나 『포커스렌즈』訓練問題 등을 거론한 데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선 절충가능한 부분부터 協議·解決해 나갈 것을 주장</p>	<p>○ 접촉 序頭에 附屬合意書 내용중 토의진행과 관련한 북측입장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에 不可侵 履行을 위한 대책을 모두 포함시킬 것 - 어느 일방도 對話雰圍氣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핵문제와 포커스렌즈 훈련문제 지적)

* 이에 따라 쌍방은 별다른 論爭없이 附屬合意書(제1장-제2장)의 條項別 내용토의를 진행

〈 雙方 主要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第1章(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 『章』題目</p>	<p>○ 『偶發的 武力衝突防止』부분을 현재와 같이 제1장 또는 별도의 『章』으로 분리하거나 제2장(분쟁의</p>	<p>○ 『偶發的 武力衝突防止』부분을 제1장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反對하고 그 내용을 제2장에</p>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평화적 해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立場表明</p>	<p>포함시키자고 하였으며, 제2장의 題目을 『紛爭의 平和的 解決 및 偶發的 武力衝突防止』로 하는데 대해서는 檢討하겠 다며 이의 대답을 留保</p>
<p>北側案 第1條 (군사분계선 일 대 무력증강 금지)</p>	<p>○ 宣言的·原則的인 문제를 附屬合意書 작성에 포함 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추후 軍事共同委에서 軍縮 問題 논의시 다루어야 할 사항</p>	<p>○ 軍事共同委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도 그 기본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속합의서에 포함</p>
<p>우리側(案) 第1條, 北側(案) 第2條(무력불사용)</p>	<p>○ 北側(案) 1조 철회시 우리 측(안) 1조에 북측(안) 제 2조중 『軍事分界線 一帶』 표현을 수용가능</p>	<p>○ 우리측(안) 내용을 일부 반영한 修正(案)을 제시 - 북과 남은 軍事分界線 일대와 상대방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相對方에 대한 銃砲射擊과 砲彈投下, 襲擊, 破壞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武力使用 행위를 금지 하며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艦艇, 비행기 등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거나 위협하는</p>

구 분	우 리 側	北 側
		일체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側(案) 第2條, 北側(案) 第3條(불침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은 기본합의서 해당 條項의 重複·羅列에 불과하며 우리측(안) 제2조의 5개호중 1호(상대방 관할구역 침입, 공격, 점령) 내용에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안) 內容을 일부 반영한 修正(案)을 제시 - 북과 남은 武力으로 상대방이 관할하는 땅, 바다, 하늘을 위협하거나 侵攻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 管轄區域에 正規武力이나 非正規武力을 침입시키지 않으며,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強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우리側(案) 第3-5條, 北側(案) 第5條 및 第7-8條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적 武力衝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사항의 明示 필요 - 北側(案) 제5조의 『봉쇄』는 戰時를 假想한 것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안) 內容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제시 (제5조) - 북과 남은 상대방의 領海와 領空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敵對行爲를 하지 않으며 상대측지역으로 드나드는 제3국의 인원, 船舶, 艦船,

구 분	우 리 측	北 側
		<p>飛行機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북남사이를 오가는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을 攻撃하거나 그 進路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p>- 『封鎖』금지는 武力衝突 防止의 필수적요소</p> <p>(제7조)</p> <p>- 북과 남은 상대방의 계획적인 武力침공 징후나 偶發的인 무력충돌, 우발적인 侵攻가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상대측에 즉시경고하며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事前對策을 세운다.</p>
<p>第2章(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리側(案) 第9條, 北側(案) 第9 -10條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확대방</p>	<p>○ 不可侵관련 분쟁 문제들은 軍事共同委 뿐만 아니라 별도의 機構에서도 논의</p> <p>- 우리측(안) 제9조(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확대방지 및 해결조치) 4개항을</p>	<p>○ 不可侵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은 軍事共同委에서 協議·處理하는 것이 타당하며, 南側이 停戰協定締結 當事者가 아니므로 軍事停戰委와 軍事共同委의 운영은 구분</p>

구 분	우 리 측	北 側
지 및 해결조치)	2개항으로 調整한 修正(案) 제시	
우리側(案) 第 10 - 11條, 北側(案) 第11條 (합의서 위반시 조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안은 책임자 處罰, 原狀復舊, 재발방지조치 등을 具體的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안) 내용을 일부 반영한 修正(案)을 제시 - 북과 남은 어느 일방이 不可侵의 履行 및 遵守와 관련한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건에 대한 責任을 추궁하며 再發防止 對策을 강구한다.

《 第6次 會議 第2次 委員接觸 : 1992. 8.1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발언을 통해 쌍방간에 附屬合意書 작성에 대한 共通認識이 마련되고 있다고 評價하고 우리 측 견해 제시 - 9.1까지 附屬合意書를 작성·假署名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基本合意書 등 쌍방이 合意한 사항에 충실할 것 - 남북간 특수한 現實狀況을 고려할 것 ○ 北側 의견을 대폭 수용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全體條項에 대한 대체토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個章 24個條 25個項을 6個章 20個條 13個項으로 조정 - 第1章(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무력불사용) : 『軍事分界線 일대』,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발언을 통해 附屬合意書 討議進行과 관련한 北側 立場 제시 - 쌍방이 合意한 時日內에 부속합의서 토의를 완료할 것 - 附屬合意書 내용토의에 관한 쌍방간 약속을 遵守할 것(7.16 위원장 접촉 내용) - 對話雰圍氣에 障礙를 조성하지 말것 ○ 접촉말미에 우리측 修正(案)에 대해 일단 肯定的으로 評價한다고 하면서도 쌍방입장이 근본적으로 對峙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종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쌍방 委員長이 合意한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討議進行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

우 리 側	北 側
<p>량, 船舶, 艦艇, 비행기』, 『습격, 파괴』등 挿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불침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5개호중 2호(총격, 포격, 폭격행위) 내용을 1조로 이동, 4개호로 조정 · 제3조(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③項을 수정하고 ④항(신호규정에 의한 사전경고)을 新設 · 제5조(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 발생·확대금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存(案) ①항을 제3조 ④항으로 이동, 3개항으로 조정 · 제7조(계속추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存(案)에서 『管割區域 밖으로의 계속』부분을 삭제 <p>- 제2章(분쟁의 평화적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 : 既存(案) 제10조(긴급협약)와 제11조(사후조치)를 묶어서 한 個條로 구성 <p>- 제3章(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지상불가침 경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 제12조중 『쌍방이 관할하여 온 區域』을 수용 · 제13조(공중불가침 경계선) 	

우 리 側	北 側
<p>：『남과 북은 상대방 管割區域 上空을 존중한다』조항을 신설</p> <p>- 제4章(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8개조 9개항에서 4개조로 조정 <p>- 제6章(수정 및 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발효) ：북측(안) 제22조 文案을 그대로 수용 <p>○ 文案整理를 위한 금일 委員接觸에 아무런 修正(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북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p>	

< 合意事項 >

○ 第6章(수정 및 발효)

- 제23조 이 합의서는 雙方의 합의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다
- 제24조 이 合意書는 雙方이 署名한 후 각기 필요한 節次를 거쳐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 第6次 會議 第3次 委員接觸 : 1992. 8. 2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측	北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간에 『附屬合意書 작성시한 (9.1)遵守』, 『기본합의서 및 委員長 接觸(7.23)시의 合意事項 충실』, 『남북간 特殊한 현실 고려』등 共通認識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附屬合意書 討議와 관련하여 우리측 입장 제시 - 의견이 접근된 條項들은 文案整理를 함. - 절충가능한 조항들은 修正(案)을 제시하여 意見을 접근시킴. - 근본적인 立場差異가 있는 조항들은 논쟁을 지양하고 差異點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分科委員會 會議에 대비할 것 ○ 一部條項(10개조항)에 대한 부속 합의서 修正(案)을 제시하고 조항별로 對比시켜 가면서 토의를 진행한 후 終結發言을 통해 根本問題에 있어서의 한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데 대하여 遺憾을 표시하고 북측의 毒素條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토의가 不振한 이유는 남측이 『核問題』를 이에 連繫시키고 전쟁연습으로 對話靄圍氣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附屬合意書 討議에 대한 입장 제시 - 不可侵 이행을 위해 필요한 根本對策을 포함시킬 것 - 쌍방은 委員長 接觸時의 합의대로 討議를 진행 할 것 - 명백하고 숨궴된 표현으로 定立할 것 ○ 제2차 委員接觸時에 제시한 우리측의 修正(案)을 다소 수용한 附屬合意書 수정(안)을 제시, 토의를 진행했으나 主要爭點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非妥協的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北側(案)대로 부속합의서를 妥結하려는 입장 견지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금지) : 軍縮問題는 기본합의서 제12조에 軍事共同委 所管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부속합의서에 포함은 불필요 - 제4조(정찰활동금지) : 현대적 軍事概念이나 南北和解 정신에 따라 철회 - 제6조(외국무력사용 불가담) : 남북간의 合意書라는 觀點에서도 불필요하며, 국제사회의 一員으로서의 義務등을 고려하여 철회 - 제10조(분쟁문제 공동위 협의·해결), 제15조(불가침 경계선 공동위 협의·추진) : 共同委員會에 새로운 任務·機能을 부여하려는 것은 기본합의서에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案)中 제1조(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금지), 제4조(정찰활동 금지), 제6조(외국무력사용 불가담) 등은 不可侵 이행에 있어 근본대책으로서 附屬合意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合意事項 >

- 第3章(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 제11조(북측 제12조)

남과 북의 地上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軍事停戰에 관한 協定에

규정한 軍事分界線과 지금까지 쌍방이 管割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

- 제4장(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 제14조(북측 제17조)

남과 북은 偶發的 武力衝突과 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남측의 國防部

長官과 북측의 人民武力部長 사이에 直通電話를 設置·運營한다.

· 제16조(북측 제19조)

軍事直通電話 設置와 運用規程 등에 관한 技術的, 實務的 사항들은

이 合意書 발효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通信

實務者 接觸에서 협의·해결한다.

· 제17조(북측 제20조)

남과 북은 이 合意書 發效後 50일 이내에 軍事直通電話를 開通한다.

《 第7次 會議 : 1992. 8. 26,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p>○ 附屬合意書 작성과 관련, 章제목 을 포함한 構成體系와 條文內容 에 있어 合意에 이르지 못한 雙方제안의 差異點을 재확인하고 해결방안을 提示한 후, 이를 타 결하기 위해 북측이 제안한 내용 을 최대한 수용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을 提示</p> <p>* 기존 22개條項중 9개조항 조정</p> <p>○ 北側(案)중 다음 條項들에 대해 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우리측 입 장의 正當性을 재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 강 금지) - 제4조(相對方에 대한 正當性을 재설명) - 제5조 前半部(봉쇄금지) - 제6조(외국 무력사용·침략행위 	<p>○ 附屬合意書에 대한 討議 不振의 원 인이 實務的 차이나 討議方法上의 차이가 아닌 不可侵 이행에 관한 근본 立場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경우에도 附屬合意書를 작성 키로 한 約束을 어겨서는 안됨. - 實踐性과 具體性을 들어 부속합의 서 토의에 複雜性과 難關을 조성 하지 말아야 함. - 『核騷動』과 『포커스렌즈 훈련』 등 對話에 背馳되는 일을 하지 않 아야 됨. <p>○ 北側이 우리측(안)중 受容不可를 표명한 條項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제5조(수도권 안전보장 조치) - 제7조(긴급대피 및 구조) - 제8조(추적권) - 제9조(국제연합헌장·국제협정 불 영향)

우 리 側	北 側
불가담) - 제10조(분쟁문제 공동위 협의·해결) - 제13조 後半部(해상불가침 경계선 중 서해경계선 구획) - 제14조(공중불가침 경계선) - 제15조(불가침 경계선 대책 공동위 협의·추진)	

※ 7차 회의 종료후 쌍방 委員長間 單獨接觸을 갖고 의견 교환

< 合意事項 >

- 第1章 題目 : 『武力不使用』
- 第2章 題目 : 『紛爭의 平和的 解決 및 偶發的 武力衝突 防止』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우리側(案) 第5條(수도권 안전 보장조치), 第8條	○ 軍事共同委에서 協議·解決가능	○ 軍事共同委에서 협의하 겠다는 것을 附屬合意書에 明文化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추적권) 및 北側(案) 第1條 (무력증강 금지), 第4條(정찰 활동금지), 第5條(봉쇄금지)		
우리側(案) 第9條(국제연합헌장·국제협정불영향) 및 北側(案) 第6條(외국무력 사용·침략행위 불가담)	○ 軍事共同委에서 협의할 문제가 아니며 雙方(案)을 同時受容 또는 同時削除 가능	○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겠다는 것을 부속합의서에 명문화
北側(案) 第13條(해상불가침 경계선), 第14條(공중불가침 경계선)	○ 境界線·區域은 軍事共同委만의 所管事項이 아님.	○ 高位 軍事當局者들이 참여하는 軍事共同委에서 협의
北側(案) 第10條(분쟁문제 공동위 협의·해결) 第15條(불가침 경계선 대책 공동위 협의·추진)	○ 원칙적으로 分科委 所管事項이며 共同委만이 그 機能 담당은 不可	○ 북남사이에 合意된 履行 機構인 共同委만이 분쟁 해결등 不可侵 履行·保障 문제를 담당

區 分	우 리 側	北 側
우리側(案) 第5章(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北側(案) 第4章(남북군사공동위원회)	○ 단일 『章』으로 할경우 題目을 『不可侵의 協議·履行機構』	○ 단일 『章』題目을 『不可侵에 관한 履行 및 協議機構』

《 第8次 會議 : 1992. 9. 5,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측	北 側
<p>○ 附屬合意書의 원만한 妥結을 위해 既 合意된 부속합의서 『章』 編成 體系와 『章』 題目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할 條文의 내용과 쌍방간 문제가 되는 조항의 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후, 새로운 構成體系에 맞춘 우리측의 最終 修正(案)을 제시</p> <p>〈 附屬合意書 修正(案) 〉</p> <p>- 第1章 武力不使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무력사용 금지) · 제2조(침략행위 금지) · 제3조(상대방에 대한 모의공격, 진로방해 금지) · 제4조(수도권 안전보장 조치) · 제5조(국제협정 불영향) <p>- 第2章 紛爭의 平和的 解決 및 偶發的 武力衝突 防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우발적 무력충돌, 침범 방지 대책) · 제7조(우발적 침범시 조치사항) · 제8조(긴급분쟁 발생시 적대 	<p>○ 첫 發言을 통해 우리측이 부속합의서 작성에 인위적인 障礙를 조성해 왔다고 비난</p> <p>- 형식상의 不可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불가침이 담보된 附屬合意書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함.</p> <p>- 不可侵 履行과 인연이 없는 침략과 전쟁을 誘發시키거나 對決과 緊張을 격화시킬 수 있는 주장들을 대담하게 撤回해야 함.</p> <p>* 北側은 지난 7차회의시 基本立場에서 하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修正(案)도 提示하지 않았음.</p>

우 리 側	北 側
<p>행위 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임검, 수색, 나포, 추적권 등) · 제10조(우발적 무력충돌·침범시 긴급협약) · 제11조(합의서 위반시 재발방지 조치) <p>- 第3章 不可侵 境界線 및 區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지상불가침 경계선) · 제13조(해상불가침 구역) · 제14조(공중불가침 구역) <p>- 第4章 軍事直通電話의 設置·運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 제16조(군사직통전화 통화방식) · 제17조(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의 실무적문제 처리방법) · 제18조(직통전화 개통일시) <p>- 第5章 不可侵의 協議 및 履行機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 · 제20조(군사공동위의 기능) 	

우 리 側	北 側
- 第6章 修正 및 發效 · 제21조(수정·보충) · 제22조(효력발생)	
<p>* 쌍방은 分科委 會議와 이어서 가진 委員長 單獨接觸을 통해 未合意된 『章』 제목과 附屬合意書 全體條項에 대한 詰論을 벌였으나 一部內容에만 合意를 보았을 뿐 主要爭點들에 대해서는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했음. 또한 쌍방은 委員長接觸에서 금일 討議를 마무리한 후 平壤에서 개최(9.15 - 18)되는 제8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附屬合意書 採擇問題를 계속 協議하기로 하였음.</p>	

< 合意事項 >

○ 제8조(긴급 분쟁 발생시 적대행위 중지·통보)

남과 북사이에 偶發的 侵犯이나 偶發的 武力衝突과 같은 紛爭問題가 발생하였을 경우 雙方의 軍事當局者는 各各 자기측 武裝集團의 敵對 行爲를 中止시키고, 軍事直通電話를 비롯한 빠른 手段과 方法으로 相對方 軍事當局者에게 즉시 通報한다.

○ 제5장 題目 : 『協議·履行機構』

· 제19조(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

南北軍事分科委員會는 不可侵의 履行과 遵守 및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合意하는 問題들에 대하여 協議하고 구체적인 對策을 세운다.

· 제20조(군사공동위의 기능)

南北軍事共同委員會는 『南北基本合意書』 제12조의 任務와 『南北 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제2조의 機能을 수행한다.

4.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南北交流 · 協力分科委員會

- 제1차 會議(1992. 3.18, 板門店 『平和의 집』)
 - △ 제1차 會議 제1차 委員接觸(1992. 3.2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제1차 會議 제2차 委員接觸(1992. 4. 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제1차 會議 제3차 委員接觸(1992. 4.1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2차 會議(1992. 4.18, 板門店 『統一閣』)

- 제3차 會議(1992. 4.27, 板門店 『平和의 집』)
 - △ 제3차 會議 委員接觸(1992. 4.2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4차 會議(1992. 5.30, 板門店 『統一閣』)

- 제5차 會議(1992. 6.26, 板門店 『平和의 집』)

- 제6차 會議(1992. 7.28, 板門店 『統一閣』)
 - △ 제6차 會議 제1차 委員接觸(1992. 8.1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제6차 會議 제2차 委員接觸(1992. 8.21,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제7차 會議(1992. 9. 3, 板門店 『平和의 집』)

- 제7차 會議 委員長接觸(1992. 9. 7, 板門店 『統一閣』)

《 第1次會議：1992. 3. 18,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측	北 측
<p>○ 南北基本合意書의 意義를 강조하고 交流·協力事業을 능률적으로 協議·推進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4가지 原則 제시</p> <p>(1) 互惠的 立場에서 交流·協力 실시</p> <p>(2) 統一指向的 交流와 協力 추진</p> <p>(3) 制度的 裝置를 마련한 바탕위에서 交流와 協力 實施</p> <p>(4) 시급하고 중요한 事業부터 우선 合意·實踐</p> <p>○ 南北基本合意書 제3장 南北交流·協力分野의 구체적인 履行對策을 위한 附屬合意書 작성과 관련, 우리측의 基準과 方法을 설명</p> <p>- 附屬合意書 數：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등 4개분야</p> <p>- 附屬合意書 內容構成：실천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明示</p> <p>- 共同委員會 數：분과위원회에</p>	<p>○ 남측이 核問題를 前提條件化하여 기본합의서 履行에 誠意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會議에 임하는 立場과 자세 제시</p> <p>(1) 民族自主的인 立場에 설것 * 外세의존 배격</p> <p>(2) 民族共同의 利益과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圖謀하는 立場에 설것 * 개방에로의 유도 또는 다른 목적추구는 잘못된 방식</p> <p>(3) 서로 理解하고 讓步하며 타협하는 精神을 발양할 것</p> <p>○ 分科委員會에서 해결하여야 할 基本問題에 대한 見解 提示</p> <p>- 남북교류·협력 履行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數：基本合意書에 충실해야 하며 7차 高位級會談 以前에 合意되도록 할 것</p> <p>- 南北交流·協力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 數：共同委는 經濟部門과 社會文化部門(비경제)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각 共同委 委員은</p>

우 리 側	北 側
<p>서 생산되는 附屬合意書 數와 일치(4개 공동위원회)</p> <p>○ 4개의 부문별 附屬合意書(案)과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제시</p> <p>〈남북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재회와 기타 人道的 문제 해결에 관한 附屬合意書(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생사확인, 서신거래, 자유왕래, 相逢 및 방문, 재결합, 기타 人道的 문제에 관한 구체적 事業方法 제시 <p>〈 남북사이의 通行·通信에 관한 附屬合意書(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陸路·海路·航路의 개설, 통과 지점, 왕래절차, 交通便宜 제공, 기술협력 · 郵便物·通信의 종류, 여행방법, 교환장소 및 교환대설치, 요금관계, 비밀보장 <p>〈 남북사이의 經濟分野 交流·協力에 관한 附屬合意書(案)〉</p>	<p>각기 9명으로 할 것</p> <p>○ 交流·協力 부문의 包括的 附屬合意書(案) 1개와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提示</p> <p>〈『북남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 交流에 관한 合意書』의 『제3장 北南協力, 交流』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공동개발, 民族内部交流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經濟協力과 교류 실현 ·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來往과 接觸에 저촉되는 法的·制度的 장치철폐, 왕래자의 身邊安全과 인권 보장 · 離散家族들의 서신거래, 來往과 相逢 및 방문을 실시하고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實現과 인도적 문제에 대한 對策 講究 · 鐵道와 道路를 연결하고, 海路와 航路를 개설 우선 남포항-인천항, 원산항-부산항 海路開設 · 郵便과 電氣通信교류에 필요한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資交流 : 민족내부 교류로 추진, 關稅를 부과하지 않음. · 經濟協力事業 : 공업, 광업, 농업, 어업, 관광 등 분야에서 공동개발, 투자 등 經濟協力事業과 대외 공동진출, 대외 협력사업 지원·보장 <p>〈 남북사이의 社會文化分野 交流·協力에 관한 附屬合意書(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출판·보도 부문에 있어 남북간 자료·情報交換 및 관련 인원들의 교류, 공동행사 추진 · 對外分野에서의 공동협력 추진 <p>〈 南北 部門別 交流·協力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道, 通行·通信,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4개 부문 共同委 構成에 관해 單一合意書 형식으로 提示 <p>- 委員長(장·차관급) 1명 및 副委員長 1명 포함 7명, 隨行員 15명, 實務協議會 설치</p>	<p>施設 설치·연결 및 우편과 전기 통신 交流의 비밀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舞臺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 協力과 對外共同進出 <p>〈 北南協力, 交流共同委員會 構成, 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 구성은 經濟部門과 社會文化部門(비경제)으로 구성 · 委員長(부장·부부장급) 1명, 副委員長 1명, 事務長 1명, 委員 6명으로 구성 · 會議은 1년에 3회정도 개최, 쌍방 合意에 따라 任意의 시기에 개최 可能, 非公開원칙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 주기로 서울·平壤에서 개최, 쌍방委員長이 공동으로 회의운영, 非公開 원칙 ○ 南北離散家族 문제가 안고 있는 절박성을 고려하여 示範事業으로 高齡離散家族들의 고향방문을 우선적으로 實現시킬 것을 提議 - 構成 및 規模 : 故鄉訪問團, 取材記者, 支援人員으로 구성하며 쌍방 각기 總規模 400-500명 - 訪問時期 및 期間 : 92년 단오절(6월 5일)을 전후 5박 6일 - 訪問地 : 이산가족들의 고향 - 訪問團 交換方法 : 동시교환 - 기타 : 相逢周旋 방법 및 범위, 왕래절차, 명단통보, 신변안전 보장 등 諸般問題는 1985년 제1차 『離散家族故鄉訪問 및 藝術團』 교환시의 先例 준용 	

< 合意事項 >

0 合意書 내용조정을 위한 제1차 委員接觸 개최

- 日時·場所 : 1992. 3.25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參席者 : 쌍방 각기 委員 3명, 隨行員 5명

《 第1次 會議 第1次 委員接觸 : 1992. 3.2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討議進行 방식과 관련하여 分科 委員會 제1차 會議에서 드러난 쌍방 立場의 차이를 고려, 우선 大體討論을 통해 이를 調整한 후 內容 협의에 들어갈 것을 주장 ○ 『基本合意書』의 條項이 곧 討議順序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분야의 내용은 條項順序에 관계없이 함께 토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基本合意書』 제18조(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當局間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提示할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員接觸 任務가 부속합의서 內容 토의임을 앞세워 南北基本合意書 條項順序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 ○ 委員接觸에 부여된 任務인 『基本合意書』 교류·협력 部分의 條項別 討議에 충실해야 하며, 離散家族 문제도 順次的으로 해당조항 토의 시에 다루면 될 것이라고 주장 ○ 分科委員會 제1차 會議(3. 18)시 내놓았던 『基本合意書』履行·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案) 內容을 일부 보완한 修正(案)을 제시 - 10條 29項에서 10條 39項으로 보완

《 第1次 會議 第2次 委員接觸 : 1992. 4. 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측	北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議가 實質討議 중심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북측이 1차 委員接觸(3.25)에서 附屬合意書 修正(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그 내용과 관련 우리측 見解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10개항이 추가되었지만 具體性·實踐性이 미흡 · 사회문화분야는 當局間 지원 보장, 협력분야 例示등 진전 · 經濟分野도 知的的所有權, 투자 보장 추가 등 진전 · 離散家族 문제는 1차 分科委 회의시 보다 후퇴 ○ 토의순서 등 會議進行 방식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道, 通行·通信, 經濟, 社會文化, 示範事業 순으로 토의를 진행하고 - 2차 分科委 會議 이전까지 쌍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제3장 교류·협력 분야 제15조 내용부터 條項別로 討議를 진행할 것을 주장 * 우리측은 委員接觸에서는 내용만 토의하고 附屬合意書의 數와 形式은 分科委에서 결정토록하며, 구체적 내용이 담긴 우리측 附屬合意書(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한다는 조건하에 『基本合意書』 제15조부터 討議할 것에 동의

우 리 側	北 側
<p>附屬合意書(案)에 대한 토의를 마무리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합의서의 數와 형식, 세부 문안정리는 分科委에서 처리토 록 하자고 提議 <p>○ 경제, 사회문화, 통행·통신 등 3개분야의 附屬合意書 修正(案) (인도분야는 제외)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分野 : 26개조항에서 20개 조항으로 조정 - 社會文化分野: 30개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조정 - 通行·通信分野 : 23개 조항에 서 17개 조항으로 조정 <p>* 우리측의 經濟分野 附屬合意書 修正(案)에 대해 쌍방간에 대체토론을 하였는바, 북측은 우리측 修正(案) 내용이 북측 안에 『접근한 점이 많다』고 긍정적인 反應을 보였음. (사회문화, 통행·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불언급)</p>	

《 第1次 會議 第3次 委員接觸 : 1992. 4.1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측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이 修正(案)을 제시한 것은 일단 『進展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 附屬合意書 全分野에 걸쳐 쌍방 차이점을 中心으로 實質討議를 完結한 후 - 2차 分科委員會 會議에서 부속 합의서의 형식과 기타 주요문제를 討議하고 - 7차 高位級 本會談 이전까지 附屬合意書의 내용·형식을 모두 타결하여 假署名할 것을 提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發言을 통해 2차 委員接觸까지도 쌍방의 意見이 接近되지 못한 原因은 - 附屬合意書 內容에 있어 離散家族 問題 등에 대한 쌍방의 근본적 立場이 다르며 - 南側이 『기본합의서』에 準하여 조항별 履行對策을 托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共同委員會 所管인 세말적 사항을 分科委員會에서 討議하려 한데 있다고 주장 ○ 1차 委員接觸時의 附屬合意書(案) 내용을 일부 수정한 附屬合意書(草案)을 提示

* 쌍방은 『經濟分野』부터 세부내용 討議를 進行하였으나 意見接近을 보지 못했으며, 특히 北側은 『當局의 承認問題』와 『서울·平壤 經濟事務所 設置問題』는 강력히 拒否

〈 雙方 意見 差異點 〉

구 분	우 리 側	北 側
當局의 承認	○ 책임있는 經濟活動을 위해서는 當局間의 支援과 保障 필요	○ 當局의 비위에 맞는 經濟活動만 差別 承認해 주기위한 政略的 목적
서울·平壤 經濟事務所 設置	○ 현재 미미한 南北間 經濟 交流의 活性化를 위해 設 치필요	○ 國家間 貿易代表部 성격 의 經濟事務所를 두는 것은 反統一的인 『2개 조선』發想
經濟協力 當事者	○ 法人과 個人을 포함하는 概念이므로 法人으로 한정 시키는 것은 不當	○ 北에서는 法人登錄을 못 하면 經濟事業 不可
交流對象品目 選定	○ 經濟交流의 기본은 상호 補完的이어야 하므로 製品 과 原料의 교환도 可能	○ 民族内部交流가 일방에 게만 利益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호상 對等性을 보장 (제품대 제품, 원 료대 원료를 유무상통)

《 第2次 會議：1992. 4. 18,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측	北 측
<p>○ 먼저 쌍방이 協議·解決해야 할 과제와 이에 대한 우리측 見解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附屬合意書의 내용상 차이 점을 調整하는 문제 - 附屬合意書의 형식문제 - 공동위원회의 構成·運營문제 - 『南北高齡離散家族 故鄉訪問團』 교환 示範事業 실시문제 <p>〈 附屬合意書 內容調整 문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分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류·협력 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政府當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去來의 신뢰성을 높이고 善意의 교류·협력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 『製品對 製品, 原料對 原料』 교환 원칙은 현 남북물자교류 構造에 비추어 不適切 · 서울·平壤 經濟事務所 설치 는 北側의 반대입장을 고려하 	<p>○ 南側이 제시한 附屬合意書(案)들이 『基本合意書』의 條項을 뒤섞어 놓았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세부화하고 문제해결을 人爲的으로 지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문제 토의에 難關을 조성하였다고 주장</p> <p>○ 쌍방이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見解差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에 대한 當局의 승인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이 개입할 경우 경제교류·협력을 일방의 政略的 목적에 이용 가능 - 서울·平壤 經濟事務所 및 板門店 經濟商談所 설치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裂指向의 색채가 농후하며 기본합의서 토의시 『배격받은』 常駐代表部 설치문제와 類似 - 法的·制度的 장치 철폐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도적 裝置들을 그대로 두고 自由來往을 실시하겠다는

우 리 側	北 側
<p>여 추후 협의키로 하되, 板門店에 『經濟商談所』만이라도 우선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文化分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안)이 교류·협력의 具體性和 實踐性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北側(案)은 宣言的이며 실천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 - 通行·通信分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물 수집·전달방법』, 『우편·전기통신의 종류·요금 결정』 문제는 북측의 主張을 受容하여 共同委에서 협의 가능 · 북측안 중 『각계각층 인원들의 往來』표현을 『民族構成員間的 왕래』로 修正할 것을 요구 · 南北人的往來와 관련, 북측의 『法的·制度的 裝置 撤廢』주장은 상대방의 체제존중과 내부분제 不干涉을 규정한 南北基本合意書 정신에 위배 · 도로와 철도연결 문제를 『軍 	<p>것은 말장난에 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赤十字團體 主管下에 해결하며 當局은 赤十字會談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 * 우리측 當局者가 "그 어떤 問題가 해결되지 않으면 合意書 履行을 留保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非難

우 리 側	北 側
<p>事的 對決狀態 해소』문제와 連繫시킨 북측(안)의 不當性을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 問題에 관한 해결대책은 쌍방 當局이 마련하고 그 履行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赤十字 團體가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의 <p>< 附屬合意書 形式問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基本合意書』 교류·협력 분야 제15조로부터 제21조까지의 해당 附屬合意書 作成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을 지닌 條項은 이에 해당되는 合意書를 채택하되, 상호연관이 있는 조항들의 사업은 묶어서 그 實踐對策을 마련 · 共同委마다 각기 독립적인 附屬合意書를 갖도록 부속합의서를 共同委 數와 맞추어 작성 <p>< 共同委員會의 構成·運營問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 機能과 관련하여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주장하는 『附屬合意書를 실천하기 위한 對策의 토의결정』에 대해 共同委는 協議機構가 아니며 실천기구임을 지적 · 또한 『附屬合意書 이외에 교류·협력 진행시 제기되는 문제협의를 實行對策 토의결정』은 分科委의 소관사항임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議運營은 1년에 4회정도 개최 - 共同委 합의사항 發效와 관련, 북측의 주장을 受容하여 쌍방 共同委員長의 署名으로 처리하되, 이를 高位級會談에 보고 <p style="text-align: center;">〈 示範事業 實施問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화해의 象徵事業 및 교류·협력의 시범사업으로 『高齡離散家族 故鄉訪問團』 교환사업 실시를 재촉구 <p>○ 附屬合意書 제2차 修正(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分野 : 17개조에서 15개조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로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文化分野 : 3개조 21개항에 서 9개조로 조정 - 通行·通信分野 : 14개조에서 13개조로 조 정 - 離散家族分野 : 1개조 18개항에 서 8개조로 조정 	

《 第3次會議：1992. 4. 27,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資交流의 경우 쌍방의 의견이 접근해 가고 있는 清算決濟方式에 의해 추진할 때 政府 當局의 승인이 불가피하며 - 經濟協力事業의 경우에도 양측은 經濟體制가 서로 相異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政府當局의 참여와 지원이 必需的이라고 강조 ○ 『板門店 經濟商談所 設置』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이를 共同委에서 토론하는 견해를 分科委員會 2차 會議에서 표시함에 따라, 設置時期·方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共同委 協議課題로 넘길수 있다고 언급 ○ 人的往來를 위한 『法的·制度的 장치 철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分科委에서 『南北法律共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에서 異見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는 하나로 되어야 하며, 남측의 주장을 受容하여 몇개의 『章』을 설정 - 『교류·협력 當事者 當局承認』은 남북사이의 자유로운 交流·協力에 逆行되며, 굳이 필요하다면 남측 内部的으로 처리 - 板門店 『經濟商談所』·『資料交換室』 설치 문제는 共同委에서 討議 解決 - 『法的·制度的 장치철폐』 문제와 관련, 상대방을 『적』으로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만나는 것을 犯罪視하는 法을 철폐하는 것은 당연 - 『離散家族 문제』는 원칙적인 대책만 當局이 토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赤十字에서 토의

우 리 側	北 側
<p>『 委 』를 구성하여 쌍방의 法規定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論議될 수 있다고 설명</p> <p>○ 『 離散家族 』 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덜어줄 의지만 있다면 南北基本合意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北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우리측(안)을 중심으로 妥結 지을 것을 요구 <p>○ 『 附屬合意書의 數와 體制 』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附屬合意書로 하되 몇개의 『 章 』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北側의 견해에 유의하여 쌍방이 協議를 통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 <p>○ 『 共同委의 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사업들이 갖는 特殊性을 감안하고 北側의 입장도 고려하여 經濟, 社會文化, 通行·通信의 3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海路를 먼저 개설한 후 軍事的 對決狀態 해소에 따라 道路와 鐵道를 연결·운영 <p>○ 공동위 수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3개 공동위(經濟, 社會文化, 通行·通信) 構成·運營을 주장한데 반해 2개 공동위(經濟, 社會文化)로 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行·通信 부문에서의 交通, 郵便·電氣通信 문제는 經濟共同委에 포함 - 통행부문에서의 自由來往 문제는 社會文化共同委에 포함

〈 附屬合意書(案) 主要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當局承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清算決濟 方式의 거래에서 는 필수적이며 善意의 거래 당사자 보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의 성격 상 맞지않고 政略的 目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國際慣例에도 맞지 않으므로 철회함이 마땅
法的·制度的 裝置 撤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분야에만 限定 되지 않는 전반적인 문제 이므로 政治分科委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래왕에 障礙가 되므로 당연히 撤廢해야 하며 政治分科委로 미루는 것은 無責任한 자세
軍事的 對決 狀態 解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的 對決狀態가 해소되지 않으면 通行·通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不合理한 주장으로 前提條件이 없는 基本合意書 조항에 충실할 것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鐵道·道路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軍事的 對決狀態가 해소되어야 하므로 軍事分科委에 課題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라도 合意書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離散家族問題 解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가 원칙적 문제에 책임지고 赤十字는 具體的 履行을 담당하는 것이 國際赤十字의 원칙에도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赤十字의 『獨自性』 원칙에 비추어 볼때 赤十字 활동에 當局이 간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面會所 설치, 故鄉 訪問團 交換 등은 원칙

구 분	우 리 側	北 側
		<p>적 문제가 아닌 具體的 事項에 해당</p> <p>* 『高齡 離散家族 故鄉 訪問團 교환』에 對해 서는 『이인모 송환』 을 거론함으로써 實質 討議를 회피</p>
<p>經濟商談所 設置</p>	<p>○ 共同委에서 托의</p>	<p>○ 『必要性이 인정되면』 이라는 條件을 제시</p>

《 第3次 會議 委員接觸 : 1992. 4. 2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科委員會 제3차 회의시 쌍방 委員長間의 合意대로 먼저 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 내용조정을 위한 討議에 들어갈 것을 提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 附屬合意書 토의, 後 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 문안정리』 입장을 표명
<p>* 쌍방은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는 事項들에 대해서는 제7차 高位級會談에서 分科委員長間에 協議하기로 하였음.</p>	

〈 雙方 意見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共同委 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 社會文化, 通行·通信 등 3개공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 社會文化 2개공동위원회
離散家族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제18조에 해당하는 履行機構가 마련 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감안, 同 條項의 이행문제를 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에 명기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제18조에 해당되는 共同委가 없으므로 포함 불가

區 分	우 리 側	北 側
	* 『人道』部門의 履行은 赤十字에 위임	
協議結果 報告	○ 『委員長은 共同委에서의 협의 結果를 南北高位級會 談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	○ 『細末的』인 사항을 總理에게 報告하는 것은 불필요
發 效	○ 『경우에 따라 쌍방이 승 意하는 重要文件은 쌍방 總理가 署名』한다는 내용 을 포함	○ 共同委는 高位級會談이 나 分科委와는 달리 對 策的 問題를 이행하는 기구이므로 共同委員長 署名만으로 충분

< 合意事項 >

○ 共同委員會 構成

- 委員長 1명, 副委員長 1명, 委員 7명
- 委員長은 長官(부장)級 또는 次官(부부장)級, 副委員長과 委員의 級은 各기 편리한 대로
- 隨行員은 各기 15명
- 필요에 따라 實務協議會 구성·운영

○ 共同委員會 機能

- 南北交流·協力分科委에서 작성한 附屬合意書의 이행
- 부속합의서 이행에 따른 細部合意書 作成, 세부사항 협의실천
- 實務協議會들의 활동을 綜合·調整

○ 共同委員會 會議運營

- 分期 1회 개최원칙, 필요한 경우 隨時 개최
- 場所는 板門店, 서울·平壤 또는 쌍방이 合意하는 다른 장소
- 쌍방 위원장이 共同運營
- 非公開 원칙, 합의에 따라 公開 가능
- 合意에 따라 교류·협력 當事者, 該當專門家 참가
- 身邊安全 保障, 편의제공, 회의기록 등 實務節次는 慣例대로

《 第4次會議：1992. 5. 30, 板門店『統一閣』 》

우 리 측	北 側
<p>○ 附屬合意書 內容調整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에 대한 當局 承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류·협력에 참여하려는 事業者의 자금동원능력, 관련 사업 경험 및 수행능력 등을 綜合的으로 판단, 適正事業者 를 선정함으로써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의 責任性和 信賴 性을 제고시키려는 것이 기본 취지 - 法的·制度的 裝置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體 制 및 法秩序를 존중하고 이 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 이 南北基本合意書 정신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的往來와 相關한 法的 문 제가 제기된다면 상호주의 원칙 아래 南北政治分科委 에서 협의·해결 - 軍事的 對決狀態 해소 	<p>○ 附屬合意書 討議에서 미결로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한 立場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當事者 當局承認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去來 당사자를 當局의 承認 을 받은 者로 규제하는 것은 기 본합의서 정신에 배치되며, 경 우에 따라서는 經濟交流·協力 이 다른 目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 - 法的·制度的 障礙 撤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來往· 接觸問題 해결은 交流·協力分 科委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법 的·制度的 장애철폐』 문제를 附屬合意書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分科委에서 토론하자는 주장은 부당 - 軍事的 對決狀態 해소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陸路連結·空路開設을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連繫시키는 것은 交流·協力の 기본인 交通路의 連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誤解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 * 海路 뿐만 아니라 陸路·空路도 함께 連結·開設함으로써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촉진 - 離散家族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 문제는 當局間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쌍방 赤十字 團體가 實踐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基本合意書와 國際赤十字 原則에 부합 *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교환 문제가 쌍방 當局에 의해 제기되고 妥結되어 그 履行을 赤十字 團體에 위임한 선례 고려 ○ 『附屬合意書의 構成體系』와 관련, 附屬合意書(案) 내용일부를 조정한 修正案(4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分界線에 있는 콘크리트 장벽 등 군사적 構造物과 爆發物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道路나 기차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 - 離散家族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道的 問題를 當局間에 세부적 대책을 합의하고 赤十字에서는 實務的으로 이행케 하자는 것은 附屬合意書 討議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赤十字의 普遍的 理念과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赤十字 團體들의 權能까지 침해 ○ 附屬合意書 修正案(4차) 제시

《 第5次會議：1992. 6. 26, 板門店『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의 『構成體系문제』와 관련하여 북측 주장을 수용, 별도의 『章』으로 되어있던 『通行·通信』을 經濟, 社會文化 『章』으로 재분류한 부속합의서 修正(案) (5차) 제시 - 交通·通信관련사항은 經濟分野, 인적왕래·접촉사항은 社會文化分野로 재분류 - 經濟分野에 포함되었던 保健 관련사항은 社會文化 분야로 재분류 ○ 附屬合意書 『內容調整문제』와 관련, 주요 爭點別로 우리측 의견 제시 -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남북교류·협력의 信賴性과 責任性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상호간에 合意·運營해야 할 制度的 裝置 - 法的·制度的 裝置撤廢：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作成問題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核問題와 관련한 남측 입장, 日本의 歷史捏造문제, 이인모 送還문제 만을 집중거론 ○ 相互核査察 문제는 『北南合意書 履行에 制動機를 마련하기 위한 제2의 核騷動』으로 - 남북관계를 基本合意書 發效以前 대결의 原點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며 - 北韓의 對美·日 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각계각층 인민들의 불평 불만을 誤導하며, 韓半島 情勢를 격화시켜 美軍撤収를 막고, 북한을 고립시켜 보려는 外勢의 戰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老父母訪問團 交換問題에 대해서는 - 남측이 南北合意事項 履行을 차단시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실현될 수 없으며

우 리 側	北 側
<p>협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法的 문제는 南北和解共同委員會에서 협의·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문제 : 쌍방 當局이 구 체적 解決對策을 마련한 후 赤 十字 團體가 이행 - 交通路 開設과 軍事的 對決狀態 해소와의 連繫問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段階 : 문산 - 개성간 道路 와 京義線 鐵道연결, 인천- 남포항과 포항-원산항 사이 海路 연결, 김포-순안飛行場 간 航路개설 · 2段階 : 교류·협력의 增大에 따라 陸路·海路·航路를 추가 연결·개설 - 各계각층 人員의 자유로운 往來· 接觸 : 內容面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民族構成員들의 왕 래는 남북사이에 開設된 陸路, 海路, 航路를 편리한대로 이용』 으로 수정 필요 <p>○ 赤十字 제3차 實務代表接觸 (6.22)에서 북측이 『核問題 해 결과 남북관계 진전 連繫與否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略的 目的으로부터 訪問團交換 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히 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 급 ○ 日本이 歪曲捏造한 『죄악에 찬 朝鮮侵略史』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를 緊急議題로 토의하자고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이 역사 歪曲問題를 總理書 翰을 통해 交流·協力分科委에서 토론토록 위임했다고 주장 ○ 『이인모 送還問題』와 관련, 남측 이 老父母訪問團 교환사업 이전에 돌려보낼데 대한 意思를 이미 표시 했다고 既定事實化 하면서 送還方 法和 節次를 결정하자고 주장

우 리 側	北 側
<p>대한 명백한 입장 표시』를 요구하면서 對話 否定的 態度를 취한 데 대해 우리측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合意 事項은 어떠한 경우에도 履行·준수되어야 하며, 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도 반드시 이행·준수 - 現段階에서 쌍방이 중점적으로 할 일은 附屬合意書의 작성과 남북상호사찰의 실시 - 北側의 核問題 해결이 없는한 남북관계의 實質的 進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核問題 進展이 남북관계의 進전을 促進 - 離散家族 訪問團 교환과 같은 人道的 事業은 핵문제 등 다른 문제와 連繫시키지 말고 無條件 추진 <p>○ 北側이 『日帝의 乙巳條約·丁未 7條約 偽造』에 共同對處할 것을 제의해온 것과 관련,</p>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日基本條約 제2조에서 韓日合邦條約 등의 無效를 이미 확인한 바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交流·協力分科委에서 토의하여 共同決議文 같은 것을 채택할 필요는 없고 - 단, 새로 발굴된 資料交換과 關係學者·專門家들의 공동조사·연구를 위해 學術會議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 社會文化共同委가 남북학술교류 차원에서 이를 주선할 수 있도록 交流·協力 附屬合意書 작성을 서둘러 7월중에 끝냄으로써 共同委員會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 第6次 會議 : 1992. 7. 28,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p>○ 금일 會議에서 附屬合意書 논의에만 집중함으로써 合意點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強調하면서 北側 입장과 他 分科委 합의내용을 고려, 附屬合意書 名稱, 前文, 『章』題目 및 이행기구에 대한 折衷(案)을 제시</p> <p>○ 부속합의서 『內容調整』 문제와 관련하여 主要爭點別로 다음과 같이 우리측 의견 제시</p>	<p>○ 交流·協力分科委員會 事業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問題』의 해결없이는 南北關係의 進展을 기대할 수 없다는 南側의 立場과 이와 관련한 二重的 態度는 會談進展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 - 『이인모送還』은 절박한 人道主義 問題로서 最優先的 과제인데도 남측이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려는 意圖를 노정 - 『老父母訪問團 교환』의 實務討議를 의도적으로 遲延시키고 『포커스텐즈』 訓練을 訪問團 交換時期에 실시함으로써 이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남측의 政略에 이용 <p>○ 부속합의서 內容討議에 있어 쌍방이 異見을 보이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北側 見解 제시</p>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의 當局承認문제 : 남북간의 經濟體制가 다르고 상대측 經濟事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쌍방 책임있는 當局의 承認·支援 필요 - 法的·制度的 裝置의 철폐문제: 相互主義原則下에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함 - 人道的 문제 : 基本合意書 제18조에 따라 쌍방 當局이 구체적 해결대책을 마련한 후 赤十字團體가 이행 - 交通路 개설과 軍事的 對決狀態 해소와의 連繫문제 : 1,2 단계로 나누어 通行路 및 臨時交通路 개설 ○ 한편 『南北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예술단』교환사업이 북측의 前提條件으로 인해 合意된 날짜에 실시되기 어렵게 된 것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 당사자의 當局承認 문제 : 남측이 교류·협력 당사자를 制限하는 것은 政略的 目的에 이용하려는 의도 - 法的·制度的裝置 철폐문제 : 자유래왕 문제를 다루는 交流·協力分科委에서 이와 관련된 法的·制度的 裝置撤廢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 - 人道的 문제 : 當局이 主管하며,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附屬合意書에 넣자는 남측 주장은 부속합의서의 性格에 맞지 않으며 赤十字의 權能까지 침해 - 交通路開設과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의 연계문제 : 軍事的 對決상태 해소이전에 非武裝地帶 등에 정상적인 交通路를 開設하는 것은 기술실무적으로 불가능 ○ 한편 부속합의서 修正案(5차)을 제시하고 5차會議에 이어 日帝의 역사왜곡에 대한 공동대처 決議案

우 리 側	北 側
<p>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교환과 같은 人道的 事業은 정치적 목적의 犠牲物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 북측이 前提條件을 철회함으로써 合意된 날짜에 訪問團交換 事業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p>채택, 『從軍慰安婦』문제 共同步調 등을 주장</p>

< 合意事項 >

- 附屬合意書 名稱 :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3장 南北交流·協力』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 附屬合意書 前文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제3장 南北交流·協力』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 附屬合意書 1章, 2章의 題目
 - 제1장 經濟交流·協力
 - 제2장 社會文化交流·協力

《 第6次 會議 第1次 委員接觸 : 1992. 8. 1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北側이 부당한 前提條件을 들고 나옴으로써 『離散家族 老父母訪 問團 및 예술단』 교환사업이 사 실상 霧散危機에 처해 있는데 대 해 유감을 표시하고, 北側이 전 제조건을 撤回하여 이 人道的· 象徴的인 사업을 하루속히 실현 시킬 것을 강조</p> <p>○ 北側의 附屬合意書案을 대폭 수 용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을 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 수정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章』題目을 복측안 受容 · 제1조-제5조, 제10조를 基本 合意書에 일치 · 25개조항 修正 · 3개조항 新設 · 1개조항 削除(제15조) 	<p>○ 『核問題』, 『포커스렌즈』 訓練문 제, 『이인모문제』 등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 지 않았던 7차 高位級會談 당시와 같은 상황이 造成되어야 老父母訪 問團 交換事業이 合意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p>

〈 合意事項 〉

- 쌍방은 附屬合意書(案)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분야중 相互意見이
접근된 條項들에 대한 文案整理와 함께 討論을 진행하여 6個條와 10個項
에 대하여 合意

《 第6次 會議 第2次 委員接觸 : 1992. 8. 21,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작성 時限(9. 5)이 임박한 시점에서 討議進展을 위해 상호 讓步·折衷이 필요함을 강조 - 쌍방 附屬合意書(案) 제2장부터 공통조항을 중심으로 文案整理 - 필요시 다시 제1章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토의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通條項에 대한 文案整理마저 표현의 문제로 쉽게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附屬合意書を 期限内에 채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하면서 부속합의서 採擇與否는 토의에 임하는 根本立場과 姿勢에 달려있다고 언급

< 合意事項 >

- 쌍방은 附屬合意書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4장 (수정·발효)중 內容이 共通되거나 類似한 條項들에 대한 文案整理를 진행하여 7個條 및 3個項에 합의

《 第7次 會議 : 1992. 9. 3, 板門店 『平和의 집』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未解決 條項을 타결 하기 위해 - 의견접근 條項에 대해서는 표현이나 條項配列에 집착하지 말고 伸縮性을 발휘할 것 - 일방만이 제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內容을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삭제할 것 - 근본적인 立場差異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基本合意書와 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具現하려는 입장에서 解決策을 찾을 것 등 방향 제시 ○ 意見接近 조항과 일방만이 제시한 條項에 대해 먼저 協議한 후 주요 爭點事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작성이 지연된 것은 쌍방 根本立場의 差異와 외적 장애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측이 - 남북교류·협력을 當局의 統制下에 넣고 당국의 政略에 따라 진행시키려 하고 있으며 · 去來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은 경제교류·협력에 장애 · 法的·制度的 裝置철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유래왕 실현 불가능 · 人道的 문제와 관련한 남측주장은 赤十字 團體의 使命과 權能을 침해 - 『核問題』를 부당하게 前提條件으로 내세워 附屬合意書 討議를 지연시켜 왔다고 비난 ○ 우리측(안)을 대폭 受容한 附屬合意書 修正案(6차)을 제시

* 會議終了後 쌍방은 委員長 單獨接觸을 갖고 主要爭點 事項에 대한 妥結 方案을 논의

〈 委員長 單獨接觸 〉

우 리 側	北 側
<p>○ 3개 分科委 附屬合意書를 같이 채택하자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交流·協力分科委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p> <p>- 去來 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 조항을 철회할 수는 없으나 『交流·協力 當事者는 當局承認을 받은자로 하며』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고</p> <p>- 人道的 分野에서는 面會所設置와 書信去來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p>	<p>○ 7차 會談時 3개分科委 부속합의서를 같이 發效시키기로 한만큼 교류·협력 분과위 附屬合意書만을 合意·採擇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p> <p>- 去來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을 남측이 철회해야 하며</p> <p>- 人道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讓步할 것이 없고</p> <p>- 法的·制度的 裝置撤廢 문제는 政治分科委 회의 進行을 두고 보자고 언급</p>

〈 合意事項 〉

- 쌍방은 附屬合意書 未合意 條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우리측(안)을 기준으로 總 17個條 53個項 중 既 合意(13개조 13개항) 內容外 3個條, 32個項에 대해 合意

《 第7次 會議 委員長接觸 : 1992. 9. 7, 板門店 『統一閣』 》

우 리 側	北 側
<p>○ 『法的·制度的 장치문제』는 政治分科委員會의 合意에 따라 추후 삭제 결정</p>	<p>○ 『法的·制度的 장치철폐』문제는 政治分科委員會의 附屬合意書에 동 문제가 규정될 경우 削除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附屬合意書 타결이 불가능</p>

< 合意事項 >

- 쌍방은 附屬合意書 未合意 사항인 8個條項에 대해 折衷을 벌인 결과, 題目과 前文, 총 4개 章 題目 및 70개 全條項(20개조, 50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8차 고위급회담에서 署名·發效시키기로 合意

* 단,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에 대한 내부절차문제』의 一部 表現 문제와 『인적왕래에 저촉되는 法的·制度的 裝置 撤廢』의 삭제 여부만 未解決